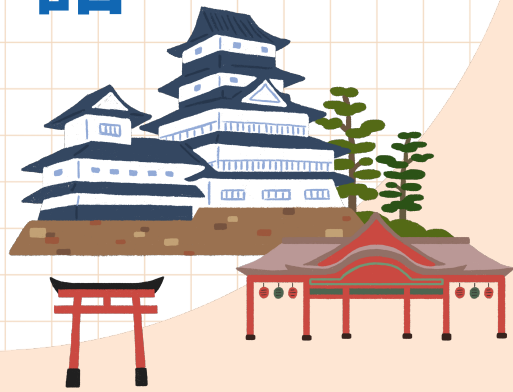


민원서식 해석본

일본어 日本語



딱! 살기 좋은 도시
부산광역시 서구

목 차

1. 家族關係登録創設届出書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서)	1
2. 婚姻届 (혼인신고서)	3
3. 協議書 (혼인신고서 자녀의 성과본에 대한 협의서)	8
4. 出生届 (출생신고서)	9
5. 認知(親権者指定)届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13
6. 離婚(親権者指定)届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	17
7. 死亡届 (사망신고서)	21
8. 創姓届 (창성신고서)	25
9. 改名届 (개명신고서)	27
10. 姓・本貫変更届 (성·본 변경신고서)	29
11. 養子縁組届 (입양신고서)	31
12. 特別養子縁組届 (친양자 입양신고서)	35
13. 養子離縁届 (파양신고서)	38
14. 特別養子離縁届 (친양자 파양신고서)	42
15. 登録簿訂正申請書 (등록부 정정신청서)	45

목 차

16. 家族関係登録事項別証明書の交付等の申請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48
17. 基本証明書 (기본증명서)	53
18. 婚姻関係証明書 (혼인관계증명서)	54
19. 養子縁組関係証明書 (입양관계증명서)	55
20. 特別養子縁組関係証明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56
21. 家族関係に関する英文証明書 発給申請書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신청서)	57
22. 訂正・抹消・居所不明 登録届 (정정·말소·거주불명 등록신고서)	61
23. 住民登録届 (주민등록 신고서)	63
24. 住民登録証 発給申請書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65
25. 住民登録証 再発給申請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68
26. 住民登録証 紛失届, 紛失届撤回申請書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철회신청서)	71
27. 住民登録表閲覧又は謄・抄本交付申請書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교부 신청서)	72
28. 印鑑保護申請, 印鑑保護解除申請 (인감보호신청, 인감보호해제 신청)	75
29. 印鑑(変更)届(書面申告用) (인감(변경) 신고서 [서면신고용])	77
30. 印鑑証明委任状又は法定代理人同意書 (인감증명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79

목 차

31. 事實證明發給・閱覽申請書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출입국)	81
32. 通合申請書(申告書) (통합신청서(신고서)-출입국)	83
33. 社會保障給與申請(變更)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84
34. 金融情報等(金融・信用・保險情報)提供同意書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90
35. 所得・財産申告書 (소득·재산 신고서)	93
36. 二輪自動車使用届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95
37. 二輪自動車使用廢止届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신고서)	96
38. 二輪自動車 届出事項變更届 (이륜자동차신고사항 변경 신청서)	98
39. 自動車讓渡證明書(讓渡人・讓受人直接取引用) (자동차 양도 증명서)	100
40. 二輪自動車使用届済証再交付申請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재교부 신청서)	102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서 家族關係登録創設届出書

(년 월 일)
(年 月 日)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届出書は裏面の作成方法を参考に記入し、選択項目には「○」印をつけてください。

① 가족관계등록 창설자 家族關係登録 創設者	본인 성명 本人氏名		한글 ハングル	(성) / (명) (氏) / (名)	본 (한자) 本貫 (漢字)	성 별 性 別	①남(男) ②여(女)			
			한자 漢字			(성) / (명) (氏) / (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출 생 연 월 일 生 年 月 日			
	등록기준지 登録基準地									
	주 소 住 所									
	부모 父母	부(父)	성명 氏名	(성) / (명) (氏) / (名)	등 록 기 준 지 登 録 基 準 地					
					주 민 등 록 번 호 住 民 登 録 番 号		-			
모(母)		성명 氏名	(성) / (명) (氏) / (名)	등 록 기 준 지 登 録 基 準 地						
				주 민 등 록 번 호 住 民 登 録 番 号		-				
②신분에 관한 사항 身分に関する事項										
③허가 또는 재판확정일자 許可又は 裁判確定日			년	월	일	법원명 法院名				
④기타사항 その他の事項										
⑤ 신고인 届出人	성 명 氏 名					① 또는 서명 ②または署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자 격 資 格	①본인) 本人) ②배우자 配偶者 ③직계혈족 直系血族 ④기타(자격 : その他(資格:								
	주 소 住 所				전 화 電 話		이 메 일 Eメー ル			
⑥제출인 提出人	성 명 氏 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작성 방법 作成方法

※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결정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家族關係登録創設許可決定謄本を受け取った日から1か月以内に提出してください。

①란 :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는 원칙적으로 사건본인 각자가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와 함께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①欄 : 家族關係登録創設届出書は原則的に事件本人各自が家族關係登録創設許可と一緒に家族關係登録創設届出書を出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法第25条第2項により住民登録番号欄に住民登録番号を記入する場合は、生年月日の記入を省略することができます。

②란 : 이 신고서에서 정한 이외의 신분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별지로 첨부한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결정서(신분표)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②欄 : この届出書で定めたもの以外の身分に関するすべての事項を記載し、別紙で添付した家族關係登録創設許可決定書(身分表)に代えることができます。

④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④欄 : 家族關係登録簿への記録を明確にするために特に必要な事項を記入します。

⑥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⑥欄 : 提出人(届出人が作成した届出書を届出人でない人が提出する場合のみ記入)の氏名及び住民登録番号を記入します。[受付担当公務員は身分証で本人確認]

첨부 서류 添付書類

1.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결정 등본 1부(확정판결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를 할 경우에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1. 家族關係登録創設許可決定 謄本1部(確定判決により家族關係登録創設の届出をする場合は、判決謄本及び確定証明書)

2.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2. 身分確認[家族關係登録例規第443号による]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届出人が出席した場合 : 身分証明書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提出人が出席した場合 : 提出人の身分証明書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郵送提出の場合 : 届出人の身分証明書の写し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2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届出人が成年後見人の場合は、第2項の書類のほかに成年後見人の資格を証明する書面も添付してください。

혼 인 신 고 서 婚姻届 (년 월 일) (年 月 日)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 Please refer to the instructions found on the back of this form and mark 'circle(○)' where applicable.			
구 분 区 分		남 편(부) 夫		아 내(처) 妻			
① 혼인당사자(신고인) ① 婚姻当事者(届出人)	성명 氏名	한글 ハングル 한자 漢字	* (성) / (명) *(氏) / (名) (성) / (명) (氏) / (名)	② 또는 서명 (印)又は署名	* (성) / (명) *(氏) / (名) (성) / (명) (氏) / (名)	② 또는 서명 (印)又は署名	
	본(한자) 本貫(漢字)		전화 電話		본(한자) 本貫(漢字)	전화 電話	
	출생연월일 生年月日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			
	*등록기준지 *登録基準地						
*주소 *住所							
② 부 모(양부모) ② 父 母(養父母)	부 성명 父の氏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			
	등록기준지 登録基準地						
	모 성명 母の氏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			
등록기준지 登録基準地							
③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 ③ 外国方式による婚姻成立日付		년 월 일 年 月 日					
④ 성·본의 협의 ④ 姓・本貫の協議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하였습니까? 예 ☐ 아니요 ☐ 子の姓・本貫を母の姓・本貫とする協議はしましたか。 はい ☐ いいえ ☐					
⑤ 근친혼 여부 ⑤ 近親婚の有無		혼인당사자들이 8촌이내의 혈족사이에 해당됩니까? 예 ☐ 아니요 ☐ 婚姻当事者が8親等以内の血族に該当しますが。 はい ☐ いいえ ☐					
⑥ 기타사항 ⑥ その他の事項							
⑦ 증인 ⑦ 証人	성명 氏名	② 또는 서명 (印)又は署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주소 住所						
	성명 氏名	② 또는 서명 (印)又は署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주 소 住所						
⑧동의자 ⑧同意者	남편 夫	부 父	성명 氏名	㉑ 또는 서명 (印)又は署名	후견인 後見人	성명 氏名	㉑ 또는 서명 (印)又は署名
		모 母	성명 氏名	㉑ 또는 서명 (印)又は署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아내 妻	부 父	성명 氏名	㉑ 또는 서명 (印)又は署名		성명 氏名	㉑ 또는 서명 (印)又は署名
		모 母	성명 氏名	㉑ 또는 서명 (印)又は署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⑨신고인 출석여부 ⑨届出人出席有無			① 남편(부) ② 아내(처) ① 夫 ② 妻				
⑩제출인 ⑩提出人		성명 氏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他人の署名又は印章を盗用して虚偽の届出書を提出したり、虚偽の届出を行い、家族関係登録簿に事実と異なる内容が記載されるようになった場合は、**刑法に基づき処罰**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アステリスク(*)がつけられた資料は国家統計作成のために統計庁でも収集している資料です。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下記の事項は「統計法」第24条の2に基づき統計庁で実施する人口動向調査です。「統計法」第32条及び第33条によって誠実に答える義務があり、個人の秘密は固く守られますので、事実通りに記入してください。

※ 첨부서류 및 혼인당사자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添付書類及び婚姻当事者の国籍は、国家統計作成のために統計庁でも収集している資料です。

인 구 동 향 조 사 人口動向調査					
㉗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 ㉗ 実際の結婚生活開始日		년 월 일부터 동거 年 月 日から同居			
㉑ 혼인종류 ㉑ 婚姻種類	남편 夫	①초혼 ②사별 후 재혼 ③이혼 후 재혼 ①初婚 ②死別後再婚 ③離婚後再婚		아내 妻	①초혼 ②사별 후 재혼 ③이혼 후 재혼 ①初婚 ②死別後再婚 ③離婚後再婚
㉒ 최종 졸업학교 ㉒ 最終學歷	남편 (부) 夫	①학력 없음 ②초등학교 ③중학교 ①學歷なし ②小学校 ③中学校 ④고등학교 ⑤대학(교) ⑥대학원 이상 ④高等学校 ⑤大学(校) ⑥大学院以上		아내 (처) 妻	①학력 없음 ②초등학교 ③중학교 ①學歷なし ②小学校 ③中学校 ④고등학교 ⑤대학(교) ⑥대학원 이상 ④高等学校 ⑤大学(校) ⑥大学院以上
㉓ 직업 ㉓ 職業	남편 (부) 夫	①관리직 ②전문직 ①管理職 ②専門職 ③사무직 ④서비스직 ③事務職 ④サービス職 ⑤판매직 ⑥농림어업 ⑤販売職 ⑥農林漁業 ⑦기능직 ⑧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⑦技能職 ⑧装置・機械操作及び組立 ⑨단순노무직 ⑩군인 ⑨単純労務職 ⑩軍人 ㉔학생·가사·무직 ㉔学生・家事・無職		아내 (처) 妻	①관리직 ②전문직 ①管理職 ②専門職 ③사무직 ④서비스직 ③事務職 ④サービス職 ⑤판매직 ⑥농림어업 ⑤販売職 ⑥農林漁業 ⑦기능직 ⑧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⑦技能職 ⑧装置・機械操作及び組立 ⑨단순노무직 ⑩군인 ⑨単純労務職 ⑩軍人 ㉔학생·가사·무직 ㉔学生・家事・無職

작성 방법

- ※ 등록기준지: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 登録基準地: 各欄の該当者が外国人の場合はその国籍を記載します。
- ※ 주민등록번호: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 住民登録番号: 各欄の該当者が外国人の場合は外国人登録番号(国内居所申告番号又は生年月日)を記載します。
- ※ ①, ②란 및 ⑤, ⑦란은 신고인 모두가 기재하며, 나머지 란(③, ④, ⑥, ⑧)은 해당되는 사람만 기재합니다.
- ※ ①, ②欄及び⑤, ⑦欄は全ての届出人が記載し、その他の欄(③, ④, ⑥, ⑧)は該当する人のみ記載します。
- ※ 주민등록전입신고는 본 가족관계등록신고와는 따로 하여야 합니다.
- ※ 住民登録転入届は家族関係登録届とは別に出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 ②란: 혼인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②欄: 婚姻当事者が養子である場合、養父母の人的事項を記載します。
- ③란: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증서등본제출의 경우 혼인성립일을 기재합니다.
- ③欄: 外国方式による婚姻証書謄本の提出の場合には婚姻成立日を記載します。
- ④란: 「민법」제781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을 표시합니다.
- ④欄: 「民法」第781条第1項の但書により子の姓・本貫を母の姓・本貫とする協議がある場合にはそのような事実を表示します。
- ⑤란: 혼인당사자들이 「민법」 제809조 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8촌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을 표시합니다.
- ⑤欄: 婚姻当事者らが「民法」第809条第1項による近親婚に該当しないという事実[8親等以内の血族(特別養子の養子縁組前の血族を含む)]を表示します。
- ⑥란: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⑥欄: 下記の事項及び家族関係登録簿の記録を明確にするために特に必要な事項を記載します。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에 의한 혼인신고(양 당사자가 생존한 경우에 소재기지만 신고 가능)의 경우에는 재판법원 및 확정일자
 - 事実上婚姻関係存在確認の裁判による婚姻届出(両当事者が生存している場合に訴訟提起者のみ届出可能)の場合は裁判法院及び確定日付
 - 부모의 혼인으로 인하여 혼인중의 자의 신분을 취득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의 성명, 등록기준지
 - 父母の婚姻によって婚姻中の子の身分を取得した子がいる場合は、その子の氏名、登録基準地
- ⑦란: 증인은 성년자이어야 합니다.
- ⑦欄: 証人は成人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
- ⑧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혼인하는 경우에 동의내용을 기재합니다.
- ⑧欄: 未成年者又は被成年後見人(2018.6.30.までは禁治産者含む)が婚姻する場合には同意内容を記載します。
- ⑩란: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⑩欄: 提出人(届出人が作成した届出書を届出人でない人が提出する場合のみ記載)の氏名及び住民登録番号を記載します。[受付担当公務員は身分証で本人確認]
-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 ※ 下記の事項は「統計法」第24条の2に基づき統計庁で実施する人口動向調査です。
- ㉑란: 결혼일자와 관계없이 실제 부부가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입합니다.
- ㉑欄: 結婚日付と関係なく 実際夫婦が結婚(同居)生活を始めた日を記入します。
- ㉒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㉒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 ㉒欄: 教育部長官が認めるすべての正規教育機関を基準にして記載し、各学校の在学者又は中退者は最終卒業した学校の該当番号に「○」印をつけます。<例示>大学3年生在学(中退)→ ㉒ 高等学校に「○」印をつける。
- ㉓란: 결혼할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 ㉓欄: 結婚する当時の主な職業を基準に記載します。

- ① 관리자: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공공 및 기업고위직 등)
- ① 管理者: 政府、企業、団体又はその内部部署の政策と活動を企画、指揮及び調整(公共及び企業の管理職など)
-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술적 업무(과학, 의료, 복지, 교육, 종교, 법률, 금융, 예술, 스포츠 등)
- ② 専門家及び関連従事者: 専門知識を活用した技術的業務(科学、医療、福祉、教育、宗教、法律、金融、芸術、スポーツなど)
- ③ 사무종사자: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업무 추진(행정, 경영, 보험, 감사, 상담, 안내, 통계 등)
- ③ 事務従事者: 管理者、専門家及び関連従事者を補助する業務(行政、経営、保険、監査、相談・案内・統計など)
- ④ 서비스종사자: 공공안전, 신변보호, 돌봄, 의료보조, 미용, 혼례 및 장례, 운송, 여가, 조리와 관련된 업무
- ④ サービス従事者: 公共安全、身辺保護、ケア、医療補助、美容、婚嫁及び葬儀、運送、余暇、調理に関する業務
- ⑤ 판매종사자: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판매(인터넷, 상점, 공공장소 등), 상품의 광고·홍보, 계산·정산 등
- ⑤ 販売従事者: 営業活動による商品又はサービスの販売(インターネット、店、公共場所など)、商品の広告・広報、計算・精算など
-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작물의 재배·수확, 동물의 번식·사육, 산림의 경작·개발, 수생 동·식물 번식 및 양식 등
- ⑥ 農林・漁業熟練従事者: 作物の栽培・収穫、動物の繁殖・飼育、森林の耕作・開発、水生動・植物の繁殖及び養殖など
-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에서 손과 수공구를 사용하여 기계 설치 및 정비, 제품 가공
- ⑦ 技能員及び関連技能従事者: 鉱業、製造業、建設業で手と手工具を使用して行う機械の設置及び整備、製品加工
-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 생산·조립, 산업용 기계·장비 조작, 운송장비의 운전 등
- ⑧ 装置・機械操作及び組立従事者: 機械操作による製品の生産・組立、産業用機械・装備の操作、運送装備の運転など
- ⑨ 단순노무 종사자: 주로 간단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업무
- ⑨ 単純労務従事者: 主に簡単な手工具の使用と単純かつ日常的・肉体的労力を要する業務
- ⑩ 군인: 의무복무를 포함하여, 현재 군인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국방분야에 고용된 민간인과 예비군은 제외)
- ⑩ 軍人: 義務服務を含め、現在軍人の身分を維持している場合(国防分野に雇用されている民間人と予備軍は除く)
- ⑪ 학생·가사·무직: 교육기관에 재학하며 학습에만 전념하거나, 전업주부이거나, 특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
- ⑪ 学生・家事・無職: 教育機関に在学して学習だけに専念する場合、専業主婦の場合、特定の職業がない場合

첨 부 서 류

添付書類

-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 下記の第1項は、家族関係登録官署にて電算でその内容が確認できる場合は添付を省略します。
1. 혼인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1. 婚姻当事者の家族関係登録簿の基本証明書、婚姻関係証明書、家族関係証明書各1通
 2. 혼인동의서[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혼인하는 경우, 단 신고서 동의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는 예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피성년후견인의 혼인에 성년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만)
 2. 婚姻同意書[未成年者又は被成年後見人(2018.6.30.までは禁治産者含む)が婚姻する場合、但し、届出書の同意欄に記載して署名又は捺印した場合は例外]及び成年後見人の資格を証明する書面(被成年後見人の婚姻に成年後見人が同意する場合のみ)
 3.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의 재판이 확정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그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 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 및 송달증명서 각 1부].
 3. 事実上婚姻関係存在確認の裁判が確定し婚姻届を出す場合、その裁判書の謄本と確定証明書各1部[調停、和解成立の場合、調停(和解)調書及び送達証明書各1部]
 4. 혼인신고특별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1부.
 4. 婚姻届出特別法による婚姻の場合、審判書の謄本及び確定証明書1部
 4. 婚姻届出特別法による婚姻の場合、審判書の謄本及び確定証明書1部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5. 事件本人が外国人である場合
 - 한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경우: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구비증명서(중국인인 경우 미혼증명서) 원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 韓国方式による婚姻である場合: 外国人の婚姻成立要件に適合する証明書(中国人である場合には未婚証明書)の原本及び国籍を証明する書面(パスポート又は外国人登録証)の写し各1部
 - 외국 방식에 의해 혼인한 경우: 혼인증서등본 1부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外国方式による婚姻である場合: 婚姻証書1部及び国籍を証明する書面(パスポート又は外国人登録証)の写し1部
 6. 「민법」제781조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사실을 증명하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4호 별지1 양식) 1부.
 6. 「民法」第781条第1項の但書により、子の姓・本貫を母の姓・本貫とする協議をした場合には協議事実を証明する婚姻当事者の協議書(家族関係登録例規第414号別紙1様式)1部
 7.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7. 身分確認[家族関係登録例規第443号による]
 - ① 일반적인 혼인신고
 - ① 一般的な婚姻届出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届出人が出席した場合: 届出人全ての身分証明書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届出人欠席、提出人出席の場合:提出人の身分証明書及び届出人全ての身分証明書又は署名公証又は印鑑証明書(届出人が本人の身分証明書なしで婚姻届に署名した場合は署名公証、婚姻届に印鑑を捺印した場合は印鑑証明書)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 郵便提出の場合:届出人全ての署名公証又は印鑑証明書(婚姻届に署名した場合は署名公証、印鑑を捺印した場合は印鑑証明書)

② 보고적인 혼인신고(증서등본에 의한 혼인신고)

② 報告的な婚姻届出(証書謄本による婚姻届出)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届出人が出席した場合:身分証明書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提出人が出席した場合:提出人の身分証明書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郵便提出の場合:届出人の身分証明書の写し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②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届出人が成年後見人の場合は、第7項の②書類以外に成年後見人の資格を証明する書面も一緒に添付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어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신고인(소제기자)의 신분확인으로 불출석한 신고인의 신분확인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事実上婚姻関係存在確認の裁判が確定し婚姻届を出す場合は、出席した届出人(訴訟提起者)の本人確認で欠席した届出人の本人確認をしたとみなします。

[別紙 1]

協 議 書

父の 姓名

登録基準地

住 所

住民登録番号

母の 姓名

登録基準地

住 所

住民登録番号

上の父と母の間に生まれるすべての子供の姓と本貫を母親の姓と本貫に定めることに合意します。

20

父 ⑩ (署名)

母 ⑩ (署名)

添付 : 1.提出人の身分を確認できる住民登録証(運転免許書、パスポート、公務員証など)の写し1部.

2.出向かなかった婚姻当事者の一方または、双方の印鑑証明書、署名に対する公証書 1部. 以上.

※留意事項

- 1.婚姻当事者のうち一方または、双方が出向かなかった場合、欠席した当事者の印鑑証明書または、署名に対する公証書を必ず添付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 2.他人の署名または、印章の盗用などで虚偽の協議書を作成して提出する場合には「刑法」第231条から第237条の2までの規定により5年以下の懲役または、1千万ウォン以下の罰金刑に処されます。

※ 他人の署名又は印章を盗用して虚偽の届出書を提出したり、虚偽の届出を行い、家族関係登録簿に事実と異なる内容が記載されるようになった場合は、**刑法に基づき処罰**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アステリスク(*)がつけられた資料**は国家統計作成のために統計庁でも収集している資料です。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下記の事項は「統計法」第24条の2に基づき統計庁で実施する人口動向調査です。「統計法」第32条及び第33条に基づき誠実に答える義務があり、個人の秘密は固く守られますので、事実通りに記入してください。

※ 첨부서류 및 출생자 부모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添付書類及び出生者の父母の国籍は国家統計作成のために統計庁でも収集している資料です。

인구동향조사 人口動向調査		
㉑ 최종 졸업학교 ㉓最終学歴	부 父	① 학력 없음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① 学歴なし ② 小学校 ③ 中学校 ④ 高等学校 ⑤ 大学(校) ⑥ 大学院以上
	모 母	① 학력 없음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① 学歴なし ② 小学校 ③ 中学校 ④ 高等学校 ⑤ 大学(校) ⑥ 大学院以上

※ 아래 사항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下記の事項は届出人は記載しません。

읍면동접수 役所受付	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 家族関係登録官署への送付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및 처리 家族関係登録官署にて受付及び処理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년 월 일(인) 年 月 日(印)	

작성 방법 作成方法

- ※ 등록기준지: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登録基準地: 各欄の該当者が外国人の場合はその国籍を記載します。
 ※ 주민등록번호: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住民登録番号: 各欄の該当者が外国人の場合は外国人登録番号(国内居所申告番号又は生年月日)を記載します。
- ①란: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의 것(인명용 한자)으로, 이름자는 5자(성은 포함 안 됨)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사용가능한 인명용한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①欄: 出生者の名前に使用する漢字は大法院規則において定められている範囲内のもの(人名用漢字)とし、名前は5文字(姓は除く)を超えてはなりません。使用可能な人名用漢字は大韓民國法院電子民願センターで確認することができます。
- : 출생일시는 24시간제로 기재합니다. (예: 오후 2시 30분 → 14시 30분)
 : 出生日時は24時間制で記載します(例: 午後2時30分→14時30分)。
-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현지 출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재하되, 서머타임 실시 기간 중 출생하였다면 그 출생지 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합니다.
 : 韓国の国民が外国で生まれた場合にはその出生した国の時間を西暦及び太陽暦で記載し、サマータイムが実施されている時に生まれたらその出生地の時間の横に「(サマータイム適用)」と表示します。
- :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을 기재합니다.
 : 子が重国籍者である場合、その事実及び取得した国籍を記載します。
- : 출생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시·구의 ‘동’, 읍·면의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기재하여도 됩니다.
 : 出生場所は最小行政区画の名称(市・区の「洞」、邑・面の「里」)又は道路名住所の「道路名」まで記載してかまいません。
- ②란: 부(父)에 관한 사항 - 혼인의 출생자를 모(母)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으며, 전혼 해소 후 100일 이내에 재혼한 여자가 재혼성립 후 200일 이후, 직전 혼인의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하여 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의 성명란에 “부미정”으로 기재합니다.
- ②欄: 父に関する事項-婚外の出生者を母が届出の場合は記載せず、前婚解消後100日以内に再婚した女性が再婚成立後200日以後、直前婚姻の終了後300日以内に出産して母が出生届を出す場合は父の氏名欄に「父未定」と記載します。

- ③란: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친생부인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③欄: 親子関係不存在確認判決、嫡出否認判決等で家族関係登録簿を閉鎖した後、再び出生届を出す場合に限り記載します。
- ④란: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④欄: 下記の事項及び家族関係登録簿の記録を明確にするために特に必要な事項を記載します。
-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선순위자(부모)가 신고를 못하는 객관적인 이유(예: 부모 사망, 행방불명 등)
 - 後順位の届出義務者が出生届を出す場合: 先順位者(父母)が届出できない客観的な理由(例: 父母の死亡、行方不明など)
 - 출생 전에 태아인지 한 사실 및 태아인지 신고한 관서
 - 出生前に胎児認知した事実及び胎児認知を届出した官署
 -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 현지 출생시각을 한국시각으로 환산하여 정하여지는 출생일시를 기재합니다. 그 현지 출생시각이 서머타임이 적용된 시각인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실을 기재합니다.
 - 外国で出生した場合: 現地の出生時間を韓国時間に直し出生日時を記載します。その現地の出生時間がサマータイムの適用された時間である場合にはそれに関する事実を記載します
 - 외국인인 부(父)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외국의 등록관서에 등재되어 있으나 한국식 이름으로 출생신고 하는 경우: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
 - 外国人である父の姓に従い、外国式の名前で外国の登録官署に登録されているが韓国式の名前で出生届出する場合: 外国で届出した氏名
- ⑥란: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⑥欄: 提出人(届出人が作成した届出書を届出人でない人が提出する場合のみ記載)の氏名及び住民登録番号を記載します。[受付担当公務員は身分証で本人確認]
-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 ※ 下記の事項は「統計法」第24条の2に基づき統計庁で実施する**人口動向調査**です。
- ⑦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 ⑦欄: 教育部長官が認める全ての正規教育機関を基準にして記載し、各学校の在学者又は中退者は最終卒業した学校の該当番号に「○」印をつけます。
-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4]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 <例示> 大学3年生在学(中退) → [4] 高等学校に「○」印をつける。

첨 부 서 류 添付書類

1. 출생증명서 등 1통(다음 중 하나).
1. 出生証明書など1通(下記のうち、一つ)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 医者や助産者が作成した出生証明書
 - 의사나 조산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1호 별지 서식)
 - 医者や助産者でない人として分娩に直接関わった者が母の出産事実を証明する資料などを添付して作成した、出生事実を証明する書面(家族関係登録例規第501号別紙書式)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외국어의 경우 번역문 첨부)
 - 国内又は外国の権限のある機関で発行された、出生事実を証明する書面(外国語の場合は翻訳文添付)
 -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 家庭法院の確認書謄本
- ※ 아래 2항 및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 ※ 下記の第2項及び第3項は、家族関係登録官署にて電算でその内容が確認できる場合は添付を省略します。
2. 출생자의 부(父) 또는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2. 出生者の父又は母の婚姻関係証明書1通
 - 부(父)가 혼인외의 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母)의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 父が婚外の子の出生届出をする場合には必ず母の婚姻関係証明書を添付
 -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모가 유부녀(有夫女)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 보증서.
 - 出生者の母の家族関係登録簿がなかったり登録されているかどうか定かでない人の場合はその母が人妻(有夫女)

ではないことを公証する書面又は 2人以上の証人による保証書

3. 자녀의 출생 당시 모(母)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모의 기본증명서) 1통(1998. 6. 14. 이후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3. 子の出生当時、母が韓国人であることを証明する書面(例:母の基本証明書)1通(1998.6.14.以降に外国人の父と韓国人の母の間で出生した子の出生届出をする場合)
 4. 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父) 또는 모(母)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 부(父) 또는 모(母)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밝힌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1부(예: 여권,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증명서).
 4. 子の出生当時に大韓民国の国民である父又は母の家族関係登録簿がなかったり明確ではない人の場合には父又は母に関する氏名、生年月日など人的事項を記した韓国の官公署が発行した公文書写し1部(例:パスポート、住民登録謄本、その他の証明書)
 5.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부.
 5. 子が重国籍者である場合、取得した国籍を疎明する資料1部
 6.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6. 身分確認[家族関係登録例規第443号による]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届出人が出席した場合:身分証明書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提出人が出席した場合:届出人の身分証明書の写し及び提出人の身分証明書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郵便提出の場合:届出人の身分証明書の写し
-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6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 届出人が成年後見人である場合は、第6項の書類以外に成年後見人の資格を証明する書面も一緒に添付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認知(親権者指定)届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 届出書は裏面の作成方法を参考に記入し、選択項目には「○」印をつけてください。						
(년 월 일) (年 月 日)												
① 피인지자被認知者	성명氏名	한글 ハングル			본 (한자) 本貫 (漢字)		성 별 性 別	①남 男 ②여 女				
		한자 漢字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출 생 연 월 일 生年月日					
	등록기준지 登録基準地											
	주 소 住 所											
	모의성명 및 등록기준지 母の氏名 及び登録基準地		성 명 氏 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등록기준지 登録基準地									
② 인지자認知者	성명氏名	한글 ハングル				주민등록 번 호 住民登録 番 号	-					
		한자 漢字										
	등록기준지 登録基準地											
③ 인지판결확정일자 認知判決確定日 ()			년 年	월 月	일 日	법원명 法院名	법원 法院					
④ 동의자(성년후견인) 同意者(成年後見人)			㉑ 또는 서명 ㉒または署名			주 민 등 록 번 호 住 民 登 録 番 号	-					
⑤ 친권자 親権者	①부 父 ②모 母 ③부모 父母	성명氏名				주민등록 번 호 住民登録 番 号	-					
				-								
	지 정 일 자 指 定 日		년 年	월 月	일 日	지 정 원 인 指 定 原因	① 협의 協議 ② ()법원의 재판 ()法院の裁判					
⑥ 성 · 계속 사용 姓 · 本貫 継続使用	원 인 일 자 原 因 日		년 年	월 月	일 日	원 인 原 因	① 협의 協議 ② ()법원의 재판 ()法院の裁判					
⑦ 기타사항 その他の事項												
⑧ 신	성 명 氏 名		㉑ 또는 서명 ㉒または署名			주 민 등 록 번 호 住 民 登 録 番 号	-					

- 피인지자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한글·한자 병기), 출생연월일, 부모성명, 피인지자와의 관계
被認知者に配偶者や直系卑属がある場合はその人の氏名(ハングル、漢字併記)、生年月日、父母氏名、被認知者との関係
- 유언인지의 경우 그 취지 및 유언집행자의 취임연월일
遺言認知の場合はその趣旨及び遺言執行者の就任年月日
-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의 혼인과 출생자에 대하여 한국법의 방식에 의하여 인지신고할 경우 준거법소속국명, 준거법과
의 관련사유(예: 준거법-한국, 자녀의 출생 당시 모의 본국법)
韓国人の母と外国人の父の間の婚外の出生者について韓国法の方式により認知する場合、準拠法所属国名、準拠法との関連事由(例: 準拠法 - 韓国、子の出生当時の母の本国法)

⑨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⑨欄 : 提出人(届出人が作成した届出書を届出人でない人が提出する場合のみ記入)の氏名及び住民登録番号を記入します。[受付担当
公務員は身分証で本人確認]

첨 부 서 류

添 付 書 類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1통.
判決謄本及び確定証明書 1通
- 인지판결의 확정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認知判決の確定による認知届出の場合のみ添付します。
- 화해성립이나 조정성립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는 그 화해조서(조정조서)등본과 송달증명서를 첨부합니다(조정에갈음하는 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의 경우에는 결정등본 및 확정증명서).
和解成立や調停成立による認知の場合は、その和解調書(調停調書)謄本と送達証明書を添付します(調停に代わる決定又は和解勧告
決定の場合は決定謄本及び確定証明書)。
- ※ 아래 2항은 가족관계등록관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下記の第2項は、家族関係登録官署にて電算でその内容が確認できる場合は添付を省略します。
2. 피인지자의 출생당시 모(母)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피인지자 의 모의 가족
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모가 피인지자의 출 생 당시 유부녀(有夫女)가
아니었음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보증서).
被認知者の出生当時の母の家族関係登録簿の基本証明書及び婚姻関係証明書、家族関係証明書 各1通(被認知者の母の家族関係登
録簿がなかったり登録されているかどうか定かでない場合は、その母が被認知者の出生当時に人妻(有夫女)ではなかったことを公
証する書面又は2人以上の証人による保証書)。
3. 친권자지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면 1통(다음 중 그 지정원인에 따라 해당 서면 첨부).
親権者指定内容を証明する書面 1通(次の中からその指定原因によって該当する書面を添付)
: 협의에 의한 지정- 협의서 : 법원의 결정에 의한 지정-친권자지정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協議による指定-協議書 : 法院の決定による指定-親権者指定審判書謄本及び確定証明書
4. 유언서등본(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 1통.
遺言書謄本(又は遺言録音を記入した書面) 1通
5. 인지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다만 동의한 성년후견인이 “동의자”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때에는 제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認知者が被成年後見人の場合 : 成年後見人の同意書(但、同意した成年後見人が「同意者」欄に氏名と住民登録番号を記入し、署名
又は捺印した場合を除く)及び成年後見人の資格を証明する書面
※ 다만 2018. 6. 30.까지는 인지자가 금치산자인 경우 후견인의 동의서(다만 동의한 후견인이 “동의자”란에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때에는 제외)를 첨부해야 합니다.
但、2018. 6. 30.までは認知者が禁治産者である場合、後見人の同意書(但、同意した後見人が「同意者」欄に氏名と住民登録番
号を記入し、署名又は捺印した場合を除く)を添付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6. 인지자가 외국인인 경우
認知者が外国人の場合
- 한국 방식에 의한 인지: 임의인지는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韓国方式による認知: 任意認知は国籍証明書面(パスポート又は外国人登録証)の写し
: 재판인지는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裁判認知は国籍証明書面(パスポート又は外国人登録証)の写し
- 외국 방식에 의한 인지: 인지증서 등본 및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外国方式による認知: 認知証書謄本及び国籍証明書面(パスポート又は外国人登録証)の写し 各1部
7. 법원이 성·본계속사용을 허가한 경우 - 성·본계속사용허가심판서 등본 1부.
法院が姓・本貫継続使用を許可した場合 - 姓・本貫継続使用許可審判書謄本 1部
성·본계속사용을 부모가 합의한 경우 - 협의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4호 별지2 양식 참조) 1부.
姓・本貫継続使用を父母が合意した場合 - 合意書(家族関係登録例規第414号 別紙2様式参照) 1部
8.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한]
身分確認[家族関係登録例規第443号による]
- ① 임의인지의 경우
任意認知の場合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届出人が出席した場合: 身分証明書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届出人欠席、提出人出席の場合：提出人の身分証明書及び届出人の身分証明書又は署名公証又は印鑑証明書(届出人が本人の身分証明書なしで届出書に署名した場合は署名公証、届出書に印鑑を捺印した場合は印鑑証明書)

- 우편제출의 경우 :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 郵便提出の場合：署名公証又は印鑑証明書(届出書に署名した場合は署名公証、印鑑を捺印した場合は印鑑証明書)

② 재판상 인지의 경우

裁判上認知の場合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届出人が出席した場合：身分証明書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提出人が出席した場合：提出人の身分証明書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 신분증명서 사본
郵送で提出する場合：身分証明書の写し

9.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한국법의 방식에 의한 인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면을 모두 첨부하여야 합니다.

韓国人の母と外国人の父の間の婚外の出生者に対して韓国法の方式による認知の場合は、次の書面もすべて添付してください。

- 해당 인지행위의 준거법으로 선택한 법과 인지당사자와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 1통
예: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현재 자녀의 상거소지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등
該当認知行為の準拠法として選択した法と認知当事者との関連を証明する書面 1通
例：子の家族関係登録簿の基本証明書及び家族関係証明書又は現在の子の常居所地を証明する住民登録簿本 等
- 준거법 소속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인지의 성립요건구비증명서 1통
準拠法所属国の権限のある機関が発行した認知の成立要件具備証明書 1通
- 부(父)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 1통
父の国籍等、身分を証明する書面 1通

이혼(친권자 지정)신고서

離婚(親權者指定)届

(년 월 일)
(年 月 日)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 届出書は裏面の作成方法に沿って記載し、選択項目には「○」印をつけてください。

구 분 区分		남 편(부) 夫				아 내(처) 妻				
① 이혼당사자 (離婚当事者(届出人))	성 명 氏名	한글	* (성) / (명)		㉠ 또는 서명	* (성) / (명)		㉠ 또는 서명		
		한자	(성) / (명)			(성) / (명)				
	본(한자) 本貫(漢字)			전화 電話		본(한자) 本貫(漢字)			전화 電話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			
	출생연월일 生年月日									
	*등록기준지 *登録基準地									
*주 소 *住所										
② (양부)성명 父(養父)氏名 ②父母(養父母)	부(양부)성명 父(養父)氏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			
	모(양모)성명 母(養母)氏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			
③기 타 사 항 ③その他の事項										
④재판확정일자 ④裁判確定日付 ()		년 월 일 年 月 日		법원명 法院名		법원 法院				
아래 친권자란은 협의이혼 시에는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후에 기재합니다. 下記の親権者欄は協議離婚の場合は法院による協議離婚意思確認の後に記載します。										
⑤ 친 권 자 지 정 (親權者指定)	미성년자의 성명 未成年の子の氏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			
	친권자 親權者	① 부 ② 모 ③ 부모	효력발생일 効力発生日	년 월 일 年 月 日	① 부 ② 모 ③ 부모	효력발생일 効力発生日	년 월 일 年 月 日	① 부 ② 모 ③ 부모	효력발생일 効力発生日	년 월 일 年 月 日
		① 父 ② 母 ③ 父母	원인 原因	① 협의 ② 재판 ① 協議 ② 裁判	① 父 ② 母 ③ 父母	원인 原因	① 협의 ② 재판 ① 協議 ② 裁判	① 父 ② 母 ③ 父母	원인 原因	① 협의 ② 재판 ① 協議 ② 裁判
		미성년자의 성명 未成年の子の氏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			
친권자 親權者	① 부 ② 모 ③ 부모	효력발생일 効力発生日	년 월 일 年 月 日	① 부 ② 모 ③ 부모	효력발생일 効力発生日	년 월 일 年 月 日	① 부 ② 모 ③ 부모	효력발생일 効力発生日	년 월 일 年 月 日	
	① 父 ② 母 ③ 父母	원인 原因	① 협의 ② 재판 ① 協議 ② 裁判	① 父 ② 母 ③ 父母	원인 原因	① 협의 ② 재판 ① 協議 ② 裁判	① 父 ② 母 ③ 父母	원인 原因	① 협의 ② 재판 ① 協議 ② 裁判	
	⑥ 신고인 출석여부 ⑥ 届出人出席有無		① 남편(부) ① 夫		② 아내(처) ② 妻					
⑦제출인 ⑦提出人		성 명 氏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노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 他人の署名又は印章を盗用して虚偽の届出書を提出したり、虚偽の届出を行い、家族関係登録簿に事実と異なる内容が記載されるようになった場合は、**刑法に基づき処罰**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 **アステリスク(*)がつけられた資料**は国家統計作成のために統計庁でも収集している資料です。
-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下記の事項は「**統計法**」第24条の2に基づき**統計庁で実施する人口動向調査**です。「統計法」第32条及び第33条によって誠実に答える義務があり、個人の秘密は固く守られますので、事実通りに記入してください。
- ※ 첨부서류 및 이혼당사자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 ※ 添付書類及び離婚当事者の国籍は国家統計作成のために統計庁でも収集している資料です。

인구동향조사 人口動向調査						
㉗ 실제 결혼 생활 시작일 ㉗ 実際の結婚生活開始日		년 월 일부터 年 月 日から		㉘ 19세 미만 자녀 수 ㉘ 19歳未満の子の数		명 人
㉙ 실제 이혼 연월일 ㉙ 実際の離婚年月日		년 월 일부터 年 月 日から				
㉚ 최종 졸업학교 ㉚ 最終學歷	남편 (부) 夫	① 학력 없음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① 學歷なし ② 小学校 ③ 中学校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④ 高等学校 ⑤ 大学(校) ⑥ 大学院以上	아내 (처) 妻	① 학력 없음 ② 초등학교 ③ 중학교 ① 學歷なし ② 小学校 ③ 中学校 ④ 고등학교 ⑤ 대학(교) ⑥ 대학원 이상 ④ 高等学校 ⑤ 大学(校) ⑥ 大学院以上		
㉛ 직업 ㉛ 職業	남편 (부) 夫	① 관리직 ② 전문직 ① 管理職 ② 専門職 ③ 사무직 ④ 서비스직 ③ 事務職 ④ サービス職 ⑤ 판매직 ⑥ 농림어업 ⑤ 販売職 ⑥ 農林漁業 ⑦ 기능직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⑦ 技能職 ⑧ 装置・機械操作及び組立 ⑨ 단순노무직 ⑩ 군인 ⑨ 単純労務職 ⑩ 軍人 ⑪ 학생·가사·무직 ⑪ 学生・家事・無職	아내 (처) 妻	① 관리직 ② 전문직 ① 管理職 ② 専門職 ③ 사무직 ④ 서비스직 ③ 事務職 ④ サービス職 ⑤ 판매직 ⑥ 농림어업 ⑤ 販売職 ⑥ 農林漁業 ⑦ 기능직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⑦ 技能職 ⑧ 装置・機械操作及び組立 ⑨ 단순노무직 ⑩ 군인 ⑨ 単純労務職 ⑩ 軍人 ⑪ 학생·가사·무직 ⑪ 学生・家事・無職		

작성 방법 作成方法
※ 등록기준지: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 登録基準地: 各欄の該当者が外国人の場合はその国籍を記載します。 ※ 주민등록번호: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住民登録番号: 各欄の該当者が外国人の場合は外国人登録番号(国内居所申告番号又は生年月日)を記載します。 ①란: 협의이혼신고의 경우 반드시 당사자 쌍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하나, 재판상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일방이 서명(또는 기명날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①欄: 協議離婚届出の場合、必ず当事者双方が署名(又は記名捺印)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裁判上離婚届出の場合には、一方が署名(又は記名捺印)して離婚届を出すことができます。 ②란: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본적)를 기재합니다. 이혼당사자가 양자인 경우 양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며, 이혼당사자의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란에 외국인등록번호(또는 출생연월일) 및 국적을 기재합니다. ②欄: 離婚当事者の父母に住民登録番号がない場合には、登録基準地(本籍)を記載します。離婚当事者が養子の場合には、養父母の人的事項を記載し、離婚当事者の父母が外国人の場合には、住民登録番号の欄に外国人登録番号(又は生年月日)及び国籍を記載します。 ③란: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③欄: 下記の事項及び家族関係登録簿の記録を明確にするために特に必要な事項を記載します。 - 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분의 변경이 있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성명,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및 신분변경의 사유 - 届出事件により身分に変更が生じる人がいれば、その人の氏名、生年月日、登録基準地及び身分変更の事由 - 피성년후견인(2018. 6. 30.까지는 금치산자 포함)이 협의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동의자의 성명, 서명(또는 날인) 및 출생

연월일

- 被成年後見人(2018.6.30.までは禁治産者含む)が協議離婚をする場合は同意者の氏名、署名(又は捺印)及び生年月日

④란: 이혼판결(화해, 조정)의 경우에만 기재하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④欄: 離婚判決(和解、調停)の場合のみ記載し、協議離婚の場合は記載しません。

: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성립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이혼신고의 경우에는 “재판확정일자”아래의 ()안에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확정” 또는 “화해성립”, “화해권고결정”이라고 기재하고, “연월 일”란에 그 성립(확정)일을 기재합니다.

: 調停成立、調停に代わる決定、和解成立又は和解勧告決定による離婚届出の場合は、「裁判確定日付」の下の()欄に「調停成立」、「調停に代わる決定の確定」又は「和解成立」、「和解勧告決定」と記載し、「年月日」欄にその成立(確定)日を記載します。

⑤란: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시에는 기재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이혼의사확인 후에 정하여진 친권자를 기재합니다.

지정효력발생일은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이혼의 경우에는 재판 확정일을 기재합니다.

원인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지정된 때에는 “☐협의”에,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법원이 결정한 때에는 “☒재판”에 ‘영표(○)’로 표시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5명 이상인 경우 별지 기재 후 간인하여 첨부합니다. 임신 중인 자의 경우에는 출생신고 시 친권자 지정 신고를 합니다.

⑤欄: 協議離婚意思確認申立をするときには記載せず、法院の離婚意思確認後に定められた親権者を記載します。指定効力発生日は協議離婚の場合は離婚届出日、裁判上離婚の場合は裁判確定日を記載します。原因は当事者の協議により指定した場合は「☐協議」に、職権又は申立により法院が決定した場合は「☒裁判」に「○」印をつけ、その内容を証明する書面を添付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子が5人以上いる場合は、別紙に記載し、割印して添付します。妊娠中の子の場合は出生届を出すときに親権者指定届出をします。

⑥란: 출석한 신고인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⑥欄: 出席した届出人の該当番号に「○」印をつけます。

⑦란: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⑦欄: 提出人(届出人が作成した届出書を届出人でない人が提出する場合のみ記載)の氏名及び住民登録番号を記載します。

[受付担当公務員は身分証で本人確認]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 下記の事項は「統計法」第24条の2に基づき統計庁で実施する人口動向調査です。

⑩란, ⑪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신고일이나 재판확정일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결혼(동거)생활을 시작한 날과 사실상 이혼(별거)생활을 시작한 날을 기재합니다.

⑩欄, ⑪欄: 家族関係登録簿上の届出日又は裁判確定日に関係なく、実際に結婚(同居)生活を始めた日と事実上離婚(別居)生活を始めた日を記載します。

⑫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 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⑫欄: 教育部長官が認めるすべての正規教育機関を基準にして記載し、各学校の在学者又は中退者は最終卒業した学校の該当番号に「○」印をつけます。<例示>大学3年生在学(中退)→ ☒ 高等学校に「○」印をつける。

⑬란: 이혼할 당시의 주된 직업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⑬欄: 離婚当時の主な職業を基準に記載します。

① 관리자: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공공 및 기업고위직 등)

① 管理者: 政府、企業、団体又はその内部部署の政策を企画、指揮及び調整(公共及び企業の管理職など)

②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전문지식을 활용한 기술적 업무(과학, 의료, 복지, 교육, 종교, 법률, 금융, 예술, 스포츠 등)

② 専門家及び関連従事者: 専門知識を活用した技術的業務(科学、医療、福祉、教育、宗教、法律、金融、芸術、スポーツなど)

③ 사무종사자: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를 보조하여 업무 추진(행정, 경영, 보험, 감사, 상담·안내·통계 등)

③ 事務従事者: 管理者、専門家及び関連従事者を補助する業務(行政、経営、保険、監査、相談・案内・統計など)

④ 서비스종사자: 공공안전, 신변보호, 돌봄, 의료보조, 미용, 혼례 및 장례, 운송, 여가, 조리와 관련된 업무

④ サービス従事者: 公共安全、身辺保護、ケア、医療補助、美容、婚嫁及び葬儀、運送、余暇、調理に係る業務

⑤ 판매종사자: 영업활동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판매(인터넷, 상점, 공공장소 등), 상품의 광고·홍보, 계산·정산 등

⑤ 販売従事者: 営業活動による商品又はサービスの販売(インターネット、店、公共場所など)、商品の広告・広報、計算・精算など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작물의 재배·수확, 동물의 번식·사육, 산림의 경작·개발, 수생 동·식물 번식 및 양식 등

⑥ 農林・漁業熟練従事者: 作物の栽培・収穫、動物の繁殖・飼育、森林の耕作・開発、水生動・植物の繁殖及び養殖など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에서 손과 수공구를 사용하여 기계 설치 및 정비, 제품 가공

⑦ 技能員及び関連技能従事者: 鉱業、製造業、建設業で手と手工具を使用して行う機械の設置及び整備、製品加工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기계를 조작하여 제품 생산·조립, 산업용 기계·장비조작, 운송장비의 운전 등

⑧ 装置・機械操作及び組立従事者: 機械操作による製品の生産・組立、産業用機械・装備の操作、運送装備の運転など

⑨ 단순노무 종사자: 주로 간단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는 업무

⑨ 単純労務従事者: 主に簡単な手工具の使用と単純かつ日常的・肉体的労力を要する業務

⑩ 군인: 의무복무를 포함하여, 현재 군인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국방분야에 고용된 민간인과 예비군은 제외)

⑩ 軍人: 義務服務を含め、現在軍人の身分を維持している場合(国防分野に雇用されている民間人と予備軍は除く)

⑪ 학생·가사·무직: 교육기관에 재학하며 학습에만 전념하거나, 전업주부이거나, 특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

⑪ 学生・家事・無職: 教育機関に在学して学習だけに専念する場合、専業主婦の場合、特定の職業がない場合

첨 부 서 류 添付書類

1.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1. 協議離婚:協議離婚意思確認書謄本1部
2. 재판이혼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조정·화해 성립의 경우는 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2. 裁判離婚:判決謄本及び確定證明書各1部(調停・和解が成立している場合は調書謄本及び送達証明書)
3.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3. 外国裁判所の離婚判決による裁判上離婚
 -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 각 1부.
 - 離婚判決の正本又は謄本と判決確定證明書各1部
 - 패소한 피고가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에 그 피고가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의 개시에 필요한 소환 또는 명령의 송달을 받았거나 또는 이를 받지 아니하고도 응소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1부(판결에 의하여 이점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敗訴した被告が韓国の国民である場合、その被告が公示送達によらず訴訟の開始に必要な召喚又は命令の送達を受けた事実又はこれを受けずに応訴した事実を証明する書面1部(判決によりこの点が明確でない場合に限る)
 - 위 각 서류의 번역문 1부.
 - 上記各書類の翻訳文1部
- ※ 아래 4항은 가족관계등록관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을 생략합니다.
- ※ 下記の第4項は、家族関係登録官署にて電算でその内容が確認できる場合は添付を省略します。
4. 이혼 당사자 각각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4. 離婚当事者それぞれの家族関係登録簿の家族関係証明書、婚姻関係証明書各1通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5. 事件本人が外国人の場合
 - 한국 방식에 의한 이혼 : 사건본인 쌍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사본 첨부
 - 韓国方式による離婚:事件本人双方が外国人である場合は、国籍を証明する書面(パスポート又は外国人登録証)の写し添付
 - 외국 방식에 의한 이혼 : 이혼증서 등본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 外国方式による離婚:離婚証書謄本及び国籍を証明する書面(パスポート又は外国人登録証)の写し各1部
6. 친권자지정과 관련한 소명자료
6. 親権者指定に係る疎明資料
 - 협의에 의한 경우 친권자지정 협의서등본 1부.
 - 協議による場合、親権者指定協議書謄本1部
 - 법원이 결정한 경우 심판서 정본 및 확정 증명서 1부.
 - 法院が決定した場合、審判書正本及び確定證明書1部
7.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7. 身分確認[家族関係登録例規第443号による]
 - ① 재판상 이혼신고(증서등본에 의한 이혼신고 포함)
 - ① 裁判上離婚届出(証書謄本による離婚届出を含む)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届出人が出席した場合:身分証明書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提出人が出席した場合:提出人の身分証明書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郵便提出の場合:届出人の身分証明書の写し
-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①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 ※ 届出人が成年後見人の場合は、第7項の①書類以外に成年後見人の資格を証明する書面も一緒に添付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 ② 협의이혼신고
- ② 協議離婚届出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 届出人が出席した場合:届出人の一方の身分証明書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일방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届出人欠席、提出人出席の場合:提出人の身分証明書及び届出人の一方の身分証明書又は署名公証又は印鑑証明書(届出人が本人の身分証明書なしで離婚届に署名した場合は署名公証、離婚届に印鑑を捺印した場合は印鑑証明書)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일방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 郵便提出の場合:届出人の一方の署名公証又は印鑑証明書(離婚届に署名した場合は署名公証、離婚届に印鑑を捺印した場合は印鑑証明書)

(년 월 일)
(年 月 日)

※届出書は裏面の作成方法を参考に記入し、選択項目には「○」印をつけてください。

他人の署名又は印章を盗用して虚偽の届出書を提出、または、虚偽の届出を行い、家族関係登録簿に事実と異なる内容が記録される場合、**刑法に基づき処罰**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アステリスク(*)がつけられた資料**は国家統計の作成のために統計庁でも収集している資料です。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 제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 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下記の事項は「統計法」第24条の2に基づき統計庁で実施する人口動態調査です。「統計法」第32条及び第33条に基づいて誠実に答える義務があり、個人の秘密は固く守られますので、事実通りに記入してください。

※ 첨부서류 및 사망자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添付書類及び死亡者の国籍は、国家統計作成のために統計庁でも収集している資料です。

인구동향조사 人口動態調査						
㉠ 최종졸업학교 最終學歷	① 학력 없음 學歷なし	② 초등학교 小学校	③ 중학교 中学校	④ 고등학교 高等学校	⑤ 대학(교) 大学(校)	⑥ 대학원 이상 大学院以上
㉡ 혼인상태 婚姻狀態	① 미혼 未婚	② 배우자 있음 配偶者有	③ 이혼 離婚	④ 사별 死別		

※ 아래 사항은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下記の事項には記入しないでください。

읍면동접수	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및 처리
	년 월 일 (인)	

작성 방법 作成方法	※ 사망신고서는 1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死亡届は1部を作成して提出してください。
① 사 망 자 死亡者	· 등록기준지: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登録基準地: 該当者が外国人の場合はその国籍を記入します。 · 주민등록번호: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住民登録番号: 該当者が外国人の場合は外国人登録番号(国内居所申告番号又は生年月日)を記入します。 · 사망일시: <예시> 오후 2시 30분(×) → 14시 30분(○), 밤 12시 30분(×) → 다음날 0시 30분(○) 死亡日時: <例> 午後 2時30分(×) → 14時30分(○), 夜12時30分(×) → 翌日 0時30分(○) ·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현지 사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재하되, 서머타임 실시기간 중 사망하였다면 사망지 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합니다. 韓国の国民が外国で死亡した場合は現地死亡時刻を西暦及び太陽暦で記入し、サマータイム期間中に死亡した場合は、その死亡地時刻の横に「(サマータイム適用)」と表示します。 · 사망장소 구분: ㉠ 주택은 사망장소가 사망자의 집이거나 부모·친척 등의 집에서 사망한 경우를 포함 ㉡ 기타는 예시 외에 비행기, 선박, 기차 등 기타 장소에 해당되는 경우 死亡場所の区分: ㉠ 住宅は死亡場所が死亡者の家や両親・親戚等の家で死亡した場合を含む ㉡ その他は例示以外の飛行機、船舶、汽車等その他の場所に該当する場合 · 사망장소의 기재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시·구의 ‘동’, 읍·면의 ‘리’)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기재하여도 됩니다. 死亡場所の記入は最少行政区域の名称(市・区の「洞」、邑・面の「里」)又は道路名住所の「道路名」まででもかまいません。
② 기타사항 その他の事項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미첨부시 그 사유 등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히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死亡診断書(死体検案書)の未添付時はその事由等、家族関係登録簿への記録を明確にするために特に必要な事項を記入します。
③ 신 고 인 届 出 人	· 자격란에는 해당항목에 ‘영표(○)’로 표시하되 ㉣ 기타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 資格欄には該当項目に「○」印をつけ、㉣その他は死亡場所を管理する者等が含まれます。
④ 제 출 인 提 出 人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提出人(届出人が作成した届出書を届出人でない人が提出する場合のみ記入)の氏名及び住民登録番号を記入します。[受付担当公務員は身分証で本人確認]

※ 아래 사항은 「통계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 下記の事項は「統計法」第24条の2に基づき統計庁で実施する人口動態調査です。	
㉔ 최종 졸업 학교 최종 학력	· 사망자의 최종 졸업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중퇴)자는 졸업한 최종학교의 해당 번호에 '영표(○)'로 표시를 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 [4]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死亡者の最終学歴は教育部長官が認定する全ての正規教育機関を基準に記入し、各学校の在学(中退)者は最終卒業した学校の該当番号に「○」印をつけます。 <例示> 大学3年生在学(中退) → [4] 高等学校に「○」印をつける
첨 부 서 류 添 付 書 類	
1. 사망자에 대한 진단서나 검안서 1부. 死亡者についての診断書や検案書 1部 2.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을 때): 아래 중 1부. 死亡の事実を証明できる書面(診断書や検案書を添付できない場合): 下記のうち1部 ①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国内又は外国の権限のある機関で発行された死亡事実を証明する書面 - 예시 : 관공서의 사망증명서 또는 매장인허증, 진실화해위원회 진실규명결정문, 정부기록보관소 보존중인 재무부 작성의 피수용자사망자연명부, 외국 관공서 등에서 발행한 그 나라 방식에 의해 사망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例: 官公署の死亡証明書又は埋葬認許証、真実和解委員会の真実糾明決定文、政府記録保管所保存中の財務部作成の被收容者死亡者連名簿、外国官公署等で発行したその国の方式により死亡申告した事実を証明する書面 ② 군인이 전투 그 밖의 사변으로 사망한 경우에 부대장 등이 사망 사실을 확인하여 그 명의로 작성한 전사확인서 軍人が戦闘その他の事変により死亡した場合、部隊長等が死亡事実を確認しその名義で作成した戦死確認書 ③ 기타 : 증명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505호 별지 양식) その他: 証明書(家族関係登録例規第505号別紙様式) - 증명인이 동·리·통장일 경우 : 1명의 증명으로 족하고, 원칙적으로 동·리·통장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証明人が洞・里・統長の場合: 1人の証明で足り、原則的に洞・里の長であることを証明する書面を添付します。 - 증명인이 인우인일 경우 : 2명 이상의 증명이 있어야 하고,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여권사본 중 1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証明人が隣人・友人の場合: 2人以上の証明が必要で、証明人の印鑑証明書、住民登録証の写し、運転免許証の写し、パスポートの写しのうち1部を添付します。 ※ 아래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下記の第3項は、家族関係登録官署にて電算でその内容が確認できる場合は添付を省略します。 3.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1통. 死亡者の家族関係登録簿の基本証明書 1通 4.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身分確認[家族関係登録例規第443号による]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届出人が出席した場合: 身分証明書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提出人が出席した場合: 届出人の身分証明書の写し及び提出人の身分証明書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郵便提出の場合: 届出人の身分証明書の写し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届出人が成年後見人の場合は、第4項の書類のほかに成年後見人の資格を証明する書面も添付してください。 5.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死亡者が外国人の場合: 国籍を証明する書面(パスポート又は外国人登録証)の写し	

※ 재산상속의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에 대한 안내

財産相続の限定承認及び相続放棄のご案内

이 안내는 사망신고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정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 민원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この案内は死亡届とは関係ありません。

詳しい内容は家庭法院(地方法院)又は支援民願室にお問合せください。

1. 의의
意義
 -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을 승인하는 것
 - 限定承認: 相続人が相続によって受けた財産の限度で相続を承認すること
 - 상속포기: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포기하는 것
 - 相続放棄: 相続財産に属するすべての権利・義務の承継を放棄すること
2. 방식
方式
 - 한정승인: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 限定承認: 相続財産の目録を添付して家庭法院に申告します。
 - 상속포기: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합니다.
 - 相続放棄: 家庭法院に相続放棄の申告をします。
3. 신고기간
申告期間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민법 제1019조 제1항)
 - 相続開始を知った日から3か月以内(民法第109条第1項)
 - 상속인은 상속재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相続人は相続債務が相続財産を超過する事実を重大な過失なく相続開始を知った日から3か月以内に知らずに単純承認(民法第1026条第1号及び第2号により単純承認したと見なす場合を含む)した場合に、その事実を知った日から3か月以内に限定承認することができます。
4. 관할
管轄
 - 상속개시지[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관할 법원
 - 相続開始時[被相続人の(最終)住所地]管轄法院

(년 월 일)
(年 月 日)

下記の作成方法を参考に記入し、選択項目は該当番号に「○」印をつけてください。

- 25 -

작성 방법 作成方法

※ 본 신고는 외국의 성을 쓰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쓰지 않고 새로이 성과 본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서 창성허가심판을 받아 그 허가심판서등본을 첨부하여 창성허가심판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는 신고입니다.

この届出書は外国の姓を使う国籍取得者がその姓を使わないで新しく姓と本貫を定めようとする場合、管轄家庭裁判所で創姓許可審判を受けて、その許可審判書謄本を添付して創姓許可審判の告知を受けた日から1ヶ月以内に提出するものです。

④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④欄 : 家族関係登録簿に記録を明確にするために特に必要な事項を記入します。

: 창성 전의 성과 본이 한자나 한글이 아닌 경우에 원래의 문자 표기

創姓前の姓と本貫が漢字やハングルでない場合は本来の文字表記

⑤란 :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⑤欄 : 届出人が外国人の場合は 外国人登録番号(国内居所申告番号又は生年月日)を記入します。

⑥란 :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 [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⑥欄 : 提出人(届出人かどうかは不問)の氏名及び住民登録番号を記入します。

첨부 서류 添付書類

1. 창성허가심판등본 1부.

創姓許可審判 謄本1部

2.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身分確認[家族関係登録例規第23号による]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届出人が出席した場合: 身分証明書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提出人が出席した場合: 提出人の身分証明書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郵送提出の場合: 届出人の身分証明書の写し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2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届出人が成年後見人の場合は、第2項の書類のほかに成年後見人の資格を証明する書面も添付してください。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他人の署名又は印章を盗用して虚偽の届出書を提出又は虚偽の届出を行い、家族関係登録簿に不実の事実が記録される場合、刑法に基づき5年以下の懲役又は1千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せられます。

(년 월 일)
(年 月 日)

届出書は裏面の作成方法を参考に記入し、選択項目には「○」印をつけてください。

- 27 -

작성 방법 作成方法

※ 이 신고는 개명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改名届は改名許可決定謄本を受けた日から1か月以内に提出してください。

①란: 본인의 성명은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을 나누어 기재합니다.

①欄: 本人の氏名は改名前と改名後の名前に分けて記入します。

②란: 개명 후 이름(개명허가결정등본에 기재된 개명허가를 받은 이름)을 기재 하며, 한자가 없는 경우는 한글란에만 기재합니다.

②欄: 改名後の名前(改名許可決定謄本に記載された改名許可を受けた名前)を記入し、漢字がない場合はハングル欄のみ記入します。

③란: 개명허가일자(개명허가결정등본에 기재된 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③欄: 改名許可日は改名許可決定謄本に記載された年月日を記入します。

④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④欄: 家族関係登録簿に記録を明確にするために特に必要な事項を記入します

⑤란: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개명 후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⑤欄: 本人が申告する場合は改名後の名前を記入します。

⑥란: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⑥欄: 提出人(届出人が作成した届出書を届出人でない人が提出する場合のみ記入)の氏名及び住民登録番号を記入します。[受付担当公務員は身分証で本人確認]

첨부 서류 添付書類

1. 개명허가결정등본 1부.

改名許可決定謄本 1部

2.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身分確認[家族関係登録例規第443号による]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届出人が出席した場合: 身分証明書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提出人が出席した場合: 提出人の身分証明書
-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郵送提出の場合: 届出人の身分証明書の写し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2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届出人が成年後見人の場合は第2項の書類のほかに成年後見人の資格を証明する書面も添付してください。

(년 월 일)
(年 月 日)

届出書は裏面の作成方法を参考に記入し、選択項目には「○」印をつけてください。

- 29 -

작성 방법 作成方法

- ※ 본 신고는 성·본변경허가심판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この届出書は姓・本貫許可審判書謄本を受けた日から1か月以内に提出してください。
- ②란: 사건본인의 성.본은 변경 전의 성.본과 변경한 성.본을 나누어 기재합니다.
②欄: 事件本人の姓・本貫は、変更前の姓・本貫と変更後の姓・本貫に分けて記入します。
- ③란: 성.본 변경허가일자 성.본변경허가심판서 등본에 기재된 연월일을 기재합니다.
③欄: 姓・本貫変更許可日は姓・本貫変更許可審判書謄本に記載された年月日を記入します。
- ④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④欄: 家族関係登録簿に記録を明確にするために特に必要な事項を記入します。
- ⑤란: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성.본 변경 후의 성명으로 기재합니다. 신고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⑤欄: 本人が届出する場合は、姓・本貫変更後の氏名で記入します。届出人が外国人の場合は外国人登録番号(国内居所申告番号又は生年月日)を記入します。
- ⑥란: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⑥欄: 提出人(届出人が作成した届出書を届出人でない人が提出する場合のみ記入)の氏名及び住民登録番号を記入します。[受付担当公務員は身分証で本人確認]

첨부 서류 添付書類

- 성·본변경허가심판서 등본 1부.
姓・本貫変更許可審判書 謄本1部
 -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身分確認[家族関係登録例規第443号による]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届出人が出席した場合: 身分証明書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提出人が出席した場合: 提出人の身分証明書
 -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郵送提出の場合: 届出人の身分証明書の写し
-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2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届出人が成年後見人の場合は第2項の書類のほかに成年後見人の資格を証明する書面も添付してください。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他人の署名又は印章を盗用して虚偽の届出書を提出又は虚偽の届出を行い、家族関係登録簿に不実の事実が記録される場合、刑法に基づき5年以下の懲役又は1千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せられます。

입 양 신 고 서 養 子 縁 組 届 (년 월 일) (年 月 日)			
--	--	--	--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届出書は裏面の作成方法を参考に記入し、選択項目には「○」印をつけてください。

구분 区分		양 養				부 父				양 養				모 母			
①양친 養親	성명 氏名	한글 ハングル	(성) (氏)	/ (명) / (名)	본(한자) 本貫(漢字)		한글 ハングル	(성) (氏)	/ (명) / (名)	본(한자) 本貫(漢字)		한글 ハングル	(성) (氏)	/ (명) / (名)	본(한자) 本貫(漢字)		
		한자 漢字	(성) (氏)	/ (명) / (名)	출생연월일 生年月日		한자 漢字	(성) (氏)	/ (명) / (名)	출생연월일 生年月日		한자 漢字	(성) (氏)	/ (명) / (名)	출생연월일 生年月日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등록기준지 登記基準地																
	주소 住所																
②양자 養子	성명 氏名	한글 ハングル	(성) (氏)	/ (명) / (名)	본(한자) 本貫(漢字)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한자 漢字	(성) (氏)	/ (명) / (名)	성별 性別	①남 男 ②여 女	출생연월일 生年月日										
	등록기준지 登記基準地																
	주소 住所																
③양자의 친생부모 養子の 実親	부 父	성명 氏名			등록기준지 登記基準地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모 母	성명 氏名			등록기준지 登記基準地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④기타사항 その他の事項																	
⑤입양허가법원 養子縁組許可法院						허가일 許可日	년 월 일										
⑥동의자 同意者	부 父	성명 氏名	㉑ 또는 서명 ㉒または署名														
	모 母	성명 氏名	㉑ 또는 서명 ㉒または署名														
	부모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法院 父母同意に代わる審判法院						심판일자 審判日	년 월 일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유 父母の同意を得られない事由																

	양자의 배우자 養子の配偶者		① 또는 서명 ②または署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⑦ 신고인 届出人	양부 養父	① 또는 서명 ②または署名			전 화 電話		
					이메일 Eメール		
	양모 養母	① 또는 서명 ②または署名			전 화 電話		
					이메일 Eメール		
	양자 養子	① 또는 서명 ②または署名			전 화 電話		
					이메일 Eメール		
	법 정 대 리 인 法定代理人	① 부모 父母	부 父	① 또는 서명 ②または署名		전 화 電話	
						이메일 Eメール	
		모 母	① 또는 서명 ②または署名		전 화 電話		
					이메일 Eメール		
② 후견인 後見人		① 또는 서명 ②または署名		전 화 電話			
				이메일 Eメール			
⑧ 신고인 출석여부 届出人の出席有無					① 양부 ② 양모 ③ 양자 ④ 법정대리인(①부 ②모 ③후견인) 養父 養母 養子 法定代理人(①父 ②母 ③後見人)		
⑨ 제출인 提出人	성 명 氏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他人の署名又は印章を盗用して虚偽の届出書を提出又は虚偽の届出を行い、家族関係登録簿に不実の事実が記録される場合、刑法に基づき5年以下の懲役又は1千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せられます。

작성 방법 作成方法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登録基準地 : 各欄の該当者が外国人の場合はその国籍を記入します。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住民登録番号 : 各欄の該当者が外国人の場合は外国人登録番号(国内居所申告番号又は生年月日)を記入します。

①란 및 ②란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①欄及び②欄 : 法 第25条第2項により住民登録番号欄に住民登録番号を記入する場合は生年月日の記入を省略することができます。

- ④란: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④欄: 下記の事項及び家族関係登録簿に記録を明確にするために特に必要な事項を記入します。
- 양자가 될 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고 이를 신고하는 때에는 그 사유
養子になる者が13歳未満の場合、法定代理人がその者の代わりに養子縁組を承諾し、これを届出する場合はその事由
 - 민법 제869조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법정대리인의 승낙없이 입양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
民法 第869条第3項により家庭法院が法定代理人の承諾を受けずに養子縁組を許可する場合はその事由
- ⑤란: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입양허가법원 및 허가일자를 기재합니다.
- ⑤欄: 養子になる者が未成年者、もしくは、被成年後見人が養子縁組をしたり養子になる場合は、家庭法院の許可を受けなければならず、この場合養子縁組許可法院及び許可日を記入します。
- ⑥란: 동의자란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⑥欄: 同意者欄の記入要領は次の通りです。
-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은 경우 동의자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家庭法院の養子縁組許可を受ける場合は同意者欄に記入しません。
 -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養子になる者が成年の場合は父母の同意を受けなければならず、父母が正当な理由なく同意を拒否する場合は、それに代わる家庭法院の審判を受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但、父母の所在が分からない等の事由で同意を得られない場合はその事由を記入します。
 -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配偶者がいる者が養子になる場合はもう一方の同意を受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
- ⑦란: 양자란에는 양자가 될 자가 기명날인(또는 서명)하며, 다만 양자가 될 자가 13세 미만인 때에는 양자란에는 기재하지 않고 법정대리인이 법정대리인란의 해당 항목번호에 '영표○'으로 표시한 후 기명날인(또는 서명)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869조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법정대리인의 승낙없이 입양을 허가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란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 ⑦欄: 養子欄には養子になる者が記名捺印(又は署名)します。但、養子になる者が13歳未満の場合は養子欄に記入せず、法定代理人が法定代理人欄の該当項目番号に「○」印をした後、記名捺印(又は署名)します。しかし、民法第869条第3項により家庭法院が法定代理人の承諾を受けずに養子縁組を許可した場合は法廷代理人欄に記入しません。
- ⑨란: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⑨欄: 提出人(届出人が作成した届出書を届出人でない人が提出する場合のみ記入)の氏名及び住民登録番号を記入します。

[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添 付 書 類

-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을 생략합니다.
下記の第1項は家族関係登録官署にて電算でその内容が確認できる場合は添付を省略します。
1. 입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養子縁組当事者の家族関係登録簿の基本証明書、家族関係証明書及び養子縁組関係証明書 各1通
 2.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
養子縁組についての家庭法院の許可書謄本及び確定証明書 各1部(養子になる者が未成年者、もしくは被成年後見人が養子縁組をしたり養子になる場合)。
 3. 입양동의서 1부(입양에 대하여 부모 또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다만 동의한 사람이 입양신고서의 "동의자"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때에는 제외).
養子縁組同意書1部(養子縁組について父母または配偶者の同意が必要な場合、但、同意する人が養子縁組届の「同意者」欄に氏名と住民登録番号を記入し、署名又は捺印した場合を除く)
 4. 양자가 될 자가 성년자로서 부모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養子になる者が成年者で、父母の同意書を添付しない場合

- 부모의 동의에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서 또는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예시 :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등본)
父母の同意に代わる家庭法院の審判書又は父母の所在が分からない等の事由により同意を得られないことを疎明する資料(例:住民登録抹消、居住不明謄本)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事件本人が外国人である場合

- 한국 방식에 의한 입양: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韓国方式による養子縁組: 国籍を証明する書面(パスポート又は外国人登録証)の写し
- 외국 방식에 의한 입양: 입양증서 등본 1부 및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外国方式による養子縁組: 養子縁組証書謄本 1部、及び国籍を証明する書面(パスポート又は外国人登録証)の写し 1部

6. 양자가 될 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자녀의 본국법이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에 자녀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養子になる者が外国人である場合、その子の本国法が該当身分行為の成立に子又は第三者の承諾や同意などを要件とする場合はその要件を備えたことを証明する書面

7.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身分確認[家族関係登録例規第443号による]

① 일반적인 입양신고

一般的な養子縁組届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届出人が出席した場合: 届出人全員の身分証明書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
届出人欠席、提出人出席の場合: 提出人の身分証明書及び届出人全員の身分証明書又は署名公証又は印鑑証明書 (届出人が本人の身分証明書なしで届出書に署名した場合は署名公証、届出書に印鑑を捺印した場合は印鑑証明書)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郵便提出の場合: 届出人全員の署名公証又は印鑑証明書(届出書に署名した場合は署名公証、印鑑を捺印した場合は印鑑証明書)

② 보고적인 입양신고(증서등본에 의한 입양 포함)

報告的な養子縁組届(証書謄本による養子縁組を含む)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届出人が出席した場合: 身分証明書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提出人が出席した場合: 提出人の身分証明書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郵送提出の場合: 届出人の身分証明書の写し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②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届出人が成年後見人の場合は第7項の②書類のほかに成年後見人の資格を証明する書面も添付してください。

※ 양자가 13세 미만인 입양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출석 또는 신분증명서의 제시가 있거나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있으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제시 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養子が13歳未満の養子縁組において法定代理人の出席又は身分証明書の提示、もしくは印鑑証明書の添付があれば、届出人の身分証明書の提示又は印鑑証明書の添付があるものと見なすことができます。

친양자입양신고서 特別養子縁組届

(년 월 일)
(年 月 日)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届出書は裏面の作成方法を参考に記入し、選択項目には「○」印をつけてください。

구 분 区 分		양 부 養 父				양 모 養 母				
① 양친 養親	성명 氏名	한글 ハングル	(성) / (명) (氏) / (名)	본(한자) 本貫(漢字)		한글 ハングル	(성) / (명) (氏) / (名)	본(한자) 本貫(漢字)		
		한자 漢字	(성) / (명) (氏) / (名)	출생연월일 生年月日		한자 漢字	(성) / (명) (氏) / (名)	출생연월일 生年月日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등록기준지 登録基準地									
	주소 住所									
② 친양자 特別養子	성명 氏名	한글 ハングル	(성) / (명) (氏) / (名)	본(한자) 本貫(漢字)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한자 漢字	(성) / (명) (氏) / (名)	성 별 性別	①남 ②여 男 女	출 생 연 월 일 生 年 月 日				
	등록기준지 登録基準地									
	주 소 住 所									
	종전의성 (姓) 従前の姓	한글 ハングル		한자 漢字		종전의본 (本) 従前の本貫	한글 ハングル		한자 漢字	
	변경된성 (姓) 変更後の姓	한글 ハングル		한자 漢字		변경된본 (本) 変更後の本貫	한글 ハングル		한자 漢字	
③ 친양자의 親養子の 친생부모 特別養子の 実親	부 父	성명 氏名				등록기준지 登録基準地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등록기준지 登録基準地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모 母	성명 氏名				등록기준지 登録基準地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등록기준지 登録基準地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④ 기타사항 その他の事項										
⑤ 재판확정일자 裁判確定日		년 年	월 月	일 日	법원명 法院名					

⑥신고인 届出人	성명 氏名	㉑ 또는 서명 ㉒または署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자격 資格	①소제기자 ②소의 상대방 ③기타(자격 :) 起訴提起者 起訴の相手方 その他(資格 :)		
	주소 住所			
	전화 電話		이메일 Eメール	
⑦제출인 提出人	성명 氏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他人の署名又は印章を盗用して虚偽の届出書を提出又は虚偽の届出を行い、家族関係登録簿に不実の事実が記録される場合、刑法に基づき5年以下の懲役又は1千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せられます。

작성 방법 作成方法

- ※ 이 신고서는「민법」제908조의2에 따른 친양자 입양의 재판 또는 「입양특례법」 제15조에 따른 입양의 재판이 확정되어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는 경우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この届出書は「民法」第908条の2による特別養子の裁判又は「養子縁組特例法」第15条により養子縁組の裁判が確定し、特別養子縁組の申告をする場合に作成します。
- ※ 등록기준지: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登録基準地: 各欄の該当者が外国人の場合はその国籍を記入します。
- ※ 주민등록번호: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住民登録番号: 各欄の該当者が外国人の場合は外国人登録番号(国内居所申告番号又は生年月日)を記入します。
- ①란 및 ②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①欄及び②欄: 法第25条第2項により住民登録番号欄に住民登録番号を記入する場合は生年月日の記入を省略することができます。
- ④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며 혼인신고시 자녀가 모의 성·본을 따르기로 협의하였는지 여부도 기재합니다.
④欄: 家族関係登録簿に記録を明確にするために特に必要な事項を記入し、婚姻届出時に子が母の姓・本貫に従うことを協議したかどうかの有無も記入します。
- ⑥란: 친양자입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 제기자 또는 소의 상대방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항목번호에 '영표(○)'로 표시한 후 기명날인(또는 서명)합니다.
⑥欄: 特別養子縁組の裁判が確定した場合は起訴提起者又は起訴の相手方が単独で申告することができます。この場合は該当項目番号に「○」印をした後、記名捺印(又は署名)します。
- ⑦란: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⑦欄: 提出人(届出人が作成した届出書を届出人でない人が提出する場合のみ記入)の氏名及び住民登録番号を記入します。

첨부 서류 添付書類

-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 생략합니다.
下記の第1項は家族関係登録官署にて電算でその内容が確認できる場合は添付を省略します。
- 친양자입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特別養子縁組当事者の家族関係登録簿の基本証明書、家族関係証明書 各1通
 - 친양자입양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特別養子縁組裁判の謄本及び確定証明書 各1部
 -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事件本人が外国人の場合: 国籍を証明する書面(旅券又は外国人登録証)の写し
 -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身分確認[家族関係登録例規第443号による]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届出人が出席した場合: 身分証明書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提出人が出席した場合: 提出人の身分証明書
 -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郵送提出の場合: 届出人の身分証明書の写し
-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届出人が成年後見人の場合は第4項の書類のほかに成年後見人の資格を証明する書面も添付してください。

파 양 신 고 서
養 子 離 縁 届
 (년 월 일)
 (年 月 日)

※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届出書は裏面の作成方法を参考に記入し、選択項目には「○」印をつけてください。

구 분 区 分		양 부 養 父				양 모 養 母			
① 양친 養 親	성명 氏 名	한글 ハングル	(성) / (명) (氏) / (名)	본(한자) 本貫(漢字)		한글 ハングル	(성) / (명) (氏) / (名)	본(한자) 本貫(漢字)	
		한자 漢字	(성) / (명) (氏) / (名)	출생연월일 生年月日		한자 漢字	(성) / (명) (氏) / (名)	출생연월일 生年月日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등록기준지 登記基準地								
	주소 住所								
② 양자 養 子	성명 氏 名	한글 ハングル	(성) / (명) (氏) / (名)	본(한자) 本貫(漢字)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한자 漢字	(성) / (명) (氏) / (名)	출생연월일 生年月日		-			
	등록기준지 登記基準地								
	주소 住所								
③ 양자의 친생부모 養子の実親	부 父	성명 氏 名		등록기준지 登記基準地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모 母	성명 氏 名		등록기준지 登記基準地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④ 기타사항 その他の事項									
⑤ 재판확정일자 裁判確定日		년 월 일 年 月 日				법원명 法院名			
⑥ 동의자 (성년후견인) 同意者 (成年後見人)		① 또는 서명 ②または署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⑦ 신고인 届出人	양부 養父	① 또는 서명 ②または署名				전 화 電話			
						이메일 Eメール			
	양모 養母	① 또는 서명 ②または署名				전 화 電話			
						이메일 Eメール			

	양자 養子	㉑ 또는 서명 ㉒または署名		전 화 電話	
				이메일 Eメール	
	㉑ 소 제기자 起訴提起者	㉑ 또는 서명 ㉒または署名			전 화 電話
	㉒ 소의 상대방 起訴の相手方				이메일 Eメール
⑧ 신고인 출석여부 届出人の出席有無		㉑ 양부 ㉒ 양모 ㉓ 양자 ㉔ 소 제기자 ㉕ 소의 상대방 養父 養母 養子 起訴提起者 起訴の相手方			
⑨ 제출인 提出人	성 명 氏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他人の署名又は印章を盗用して虚偽の届出書を提出又は虚偽の届出を行い、家族関係登録簿に不実の事実が記録される場合、刑法に基づき5年以下の懲役又は1千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せられます。

작성 방법 作成方法

※ 등록기준지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登録基準地 : 各欄の該当者が外国人の場合はその国籍を記入します。

※ 주민등록번호 :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住民登録番号 : 各欄の該当者が外国人の場合は外国人登録番号(国内居所申告番号又は生年月日)を記入します。

①란 및 ②란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①欄及び②欄 : 法第25条第2項により住民登録番号欄に住民登録番号を記入する場合は生年月日の記入を省略することができます。

④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④欄 : 家族関係登録簿に記録を明確にするために特に必要な事項を記入します。

⑤란 : 재판상 파양의 경우 재판확정일자 및 법원명을 기재합니다.

⑤欄 : 裁判離縁の場合は、裁判確定日及び法院名を記入します。

⑥란 :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협의상 파양을 할 경우 기재합니다[단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

⑥欄 : 被成年後見人である養父母が成年後見人の同意を受けて協議の上で養子離縁する場合に記入します[但、養子が未成年者もしくは被成年後見人である場合は協議の上で養子離縁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⑦란 : 양자란은 파양을 하는 양자가 기명날인(또는 서명)하며,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 제기자 또는 소의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항목번호에 '영표(○)'로 표시한 후 기명날인(또는 서명)합니다.

⑦欄 : 養子欄には養子離縁する養子が記名捺印(又は署名)し、養子離縁の裁判が確定した場合は起訴提起者又は起訴の相手方が単独で申告することができます。この場合も該当項目番号に「○」印をつけて記名捺印(又は署名)します。

⑨란 :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⑨欄 : 提出人(届出人が作成した届出書を届出人でない人が提出する場合のみ記入)の氏名及び住民登録番号を記入します。[受付担当公務員は身分証で本人確認]

첨부 서류 添付書類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下記の第1項は家族関係登録官署にて電算でその内容が確認できる場合は添付を省略します。

1. 파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養子離縁当事者の家族関係登録簿の養子縁組関係証明書 各1通

2. 재판상 파양의 경우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裁判離縁の場合、判決謄本及び確定証明書 各1部

3. 파양의 조정(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등본 및 그 송달증명서 각 1부.

養子離縁の調停(和解)成立の場合、調停(和解)調書謄本及びその送達証明書 各1部

4.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협의상 파양을 할 경우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다만 동의한 성년후견인이 “동의자”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때에는 제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被成年後見人である養父母が成年後見人の同意を受けて協議上養子離縁する場合、成年後見人の同意書(但、同意した成年後見人が”同意者”欄に氏名と住民登録番号を記入し、署名又は捺印した場合を除く)及び成年後見人の資格を証明する書面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事件本人が外国人の場合

- 한국 방식에 의한 파양: 협의파양의 경우,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韓国方式による養子離縁: 協議離縁の場合は国籍証明書面(パスポート又は外国人登録証)の写し
재판파양의 경우,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裁判離縁の場合は国籍証明書面(パスポート又は外国人登録証)の写し
- 외국 방식에 의한 파양: 파양증서 등본 1부 및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外国方式による養子離縁: 養子離縁証書謄本 1部、及び国籍証明書面(パスポート又は外国人登録証)の写し 1部

6.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身分確認[家族関係登録例規第443号による]

① 재판상 파양(증서등본에 의한 파양 포함)

裁判離縁(証書謄本による養子離縁を含む)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届出人が出席した場合: 身分証明書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提出人が出席した場合: 提出人の身分証明書
-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郵送提出の場合: 届出人の身分証明書の写し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6항의 ①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届出人が成年後見人の場合は第6項の①書類の以外に成年後見人の資格を証明する書面も一緒に添付してください。

② 협의파양의 경우

協議離縁の場合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届出人が出席した場合: 届出人全員の身分証明書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届出人欠席、提出人出席の場合: 提出人の身分証明書及び届出人全員の身分証明書又は署名公証又は印鑑証明書(届出人が本人の身分証明書なしで届出書に署名した場合は署名公証、届出書に印鑑を捺印した場合は印鑑証明書)
-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郵便提出の場合: 届出人全員の署名公証又は印鑑証明書(届出書に署名した場合は署名公証、印鑑を捺印した場合は印鑑証明書)

친양자파양신고서 特別養子離縁届

(년 월 일)
(年 月 日)

※ 신고서 작성 시 아래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届出書は裏面の作成方法を参考に記入し、選択項目には「○」印をつけてください。

구 분 区 分		양 부 養 父				양 모 養 母					
① 양 친 양 親	성명 氏名	한글 ハングル	(성) (氏)	/ (명) / (名)	본(한자) 本貫(漢字)		한글 ハングル	(성) (氏)	/ (명) / (名)	본(한자) 本貫(漢字)	
		한자 漢字	(성) (氏)	/ (명) / (名)	출생년도 生年月日		한자 漢字	(성) (氏)	/ (명) / (名)	출생년도 生年月日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등기 登記	준지 準地									
	주소 住所										
② 친양자 特別養子	성명 氏名	한글 ハングル	(성) (氏)	/ (명) / (名)	본(한자) 本貫(漢字)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한자 漢字	(성) (氏)	/ (명) / (名)	출생연월일 生年月日		-				
	등록기준지 登録基準地										
	주 소 住所										
	종전의 성(姓) 従前の姓	한글 ハングル		한자 漢字		종전의 본(本) 従前の 本貫	한글 ハングル		한자 漢字		
	부활된 성(姓) 復活した姓	한글 ハングル		한자 漢字		부활된 본(本) 復活した 本貫	한글 ハングル		한자 漢字		
③ 부활되는 (양)부모 復活する (養)父母	(양)부 (養)父	성명 氏名	등록기준지 登録基準地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양)모 (養)母	성명 氏名	등록기준지 登録基準地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④ 기타사항 その他の事項											
⑤ 재판확정일자 裁判確定日		년 월 일 年 月 日			법원명 法院名						

⑥신고인 届出人	성명 氏名	㉑ 또는 서명 ㉒または署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자격 資格	①소 제기자 ②소의상대방 ③기타(자격 :) 起訴提起者 起訴の相手方 その他(資格 :)		
	주소 住所			
	전화 電話		이메일 Eメール	
⑦제출인 提出人	성명 氏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他人の署名又は印章を盗用して虚偽の届出書を提出又は虚偽の届出を行い、家族関係登録簿に不実の事実が記録される場合、刑法に基づき5年以下の懲役又は1千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せられます。

작성 방법 作成方法

- ※ 이 신고서는 「민법」제908조의5에 따른 친양자 파양의 재판 또는 「입양특례법」 제17조에 따른 파양의 재판이 확정되어 친양자 파양신고를 하는 경우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この届出書は「民法」第908条の5により特別養子離縁の裁判又は「養子縁組特例法」第17条による離縁の裁判が確定し、特別養子離縁を届け出る場合に作成するものです。
- ※ 등록기준지: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登録基準地: 各欄の該当者が外国人の場合はその国籍を記載します。
- ※ 주민등록번호: 각 란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住民登録番号: 各欄の該当者が外国人の場合は外国人登録番号(国内居所申告番号又は生年月日)を記載します。
- ①란 및 ②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①欄及び②欄: 法 第25条第2項により住民登録番号欄に住民登録番号を記載する場合は生年月日の記載を省略することができます。
- ③란: 친양자입양 전에 일반입양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친양자파양시에 종전 일반입양한 양부모관계가 부활합니다.
- ③欄: 特別養子縁組以前に一般養子縁組関係が形成されていた場合、特別養子離縁時に従前の一般養子縁組の養父母関係が復活します。
- ④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④欄: 家族関係登録簿に記録を明確にするために特に必要な事項を記載します
- ⑥란: 친양자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 제기자 또는 소의 상대방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당 항목번호에 '영표(○)'로 표시한 후 기명날인(또는 서명)합니다.
- ⑥欄: 特別養子離縁の裁判が確定した場合は、起訴提起者又は起訴の相手方が単独で申告することができます。その場合、該当項目番号に「○」印をした後に記名捺印(又は署名)します。
- ⑦란: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⑦欄: 提出人(届出人が作成した届出書を届出人でない人が提出する場合のみ記載)の氏名及び住民登録番号を記載します。
- [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부 서류 添付書類

-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 생략합니다.
下記の第1項は家族関係登録官署にて電算でその内容が確認できる場合は添付を省略します。
- 친양자파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特別養子離縁当事者の家族関係登録簿の基本証明書、特別養子縁組関係証明書 各1通
 - 친양자파양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통.
特別養子離縁裁判の謄本及び確定証明書 各1部
 -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事件本人が外国人の場合: 国籍を証明する書面(パスポート又は外国人登録証)の写し
 -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身分確認[家族関係登録例規第443号による]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届出人が出席した場合: 身分証明書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提出人が出席した場合: 提出人の身分証明書
 - 우편제출의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郵送提出の場合: 届出人の身分証明書の写し
-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4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届出人が成年後見人の場合は第4項の書類のほかに成年後見人の資格を証明する書面も添付してください。

(년 월 일)
(年 月 日)

届出書は裏面の作成方法を参考に記入し、選択項目には「○」印をつけてください。

- 45 -

작성 방법 作成方法

- ①란 : ③, ④, ⑤항이 모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사건본인이 수인인 경우에는 성명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후 별지에 사건본인 전부 및 정정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①欄 : ③,④,⑤項がすべて同じ事案について事件本人が複数の場合は、氏名欄に「別紙と同じ」と記入した後、別紙に事件本人の全部及び訂正事項を記入してください。
- ②란 : 정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며 허가 또는 판결에 의한 경우 ‘주문’에 나타난 가족관계등록 정정사항을 기재하되 기재할 사항이 많은 경우 “별지 첨부 허가결정 또는 판결주문과 같음”이라고 기재합니다. 사건본인이 수인인 경우 별지의 각 정정사항란에 기재합니다.
- ②欄 : 訂正しようとする事項を記入し、許可又は判決による場合は「主文」にある家族関係登録訂正事項を記入します。記入する事項が多い場合は「別紙添付の許可決定又は判決主文と同じ」と記入します。事件本人が複数の場合は別紙の各訂正事項欄に記入します。
- ④란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④欄 : 家族関係登録簿に記録を明確にするために特に必要な事項を記入します。
- ⑤란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⑤欄 : 申請人が外国人の場合は外国人登録番号(国内居所申告番号又は生年月日)を記入します。
- ⑥란 : 제출인(신청인이 작성한 신청서를 신청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 ⑥欄 : 提出人(申請人が作成した申請書を申請人でない人が提出する場合のみ記入)の氏名及び住民登録番号を記入します。

첨부 서류 添付書類

1. 등록부정정허가결정등본 1부(확정판결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할 때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登録簿訂正許可決定 謄本1部(確定判決により家族関係登録簿の訂正をする場合は判決謄本及び確定証明書 各1部)
 2.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443호에 의함]
身分確認[家族関係登録例規第443号による]
 - 신청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申請人が出席した場合 : 身分証明書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提出人が出席した場合 : 提出人の身分証明書
 - 우편제출의 경우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郵送提出の場合 : 申請人の身分証明書の写し
- ※ 신청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2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申請人が成年後見人の場合は第2項の書類のほかに成年後見人の資格を証明する書面も添付してください。

<별지 別紙>

사 건 본 인 사 건 본 인	성 氏 명 名	한글 ハ ン グ ル	(성 氏) / (명 名)	주민등록 번 호 住 民 登 録 番 号	-
		한자 漢 字	(성 氏) / (명 名)		
	등록기준지 登 録 基 準 地				
	주 소 住 所				
정정사항 訂 正 事 項					
사 건 본 인 사 건 본 인	성 氏 명 名	한글 ハ ン グ ル	(성 氏) / (명 名)	주민등록 번 호 住 民 登 録 番 号	-
		한자 漢 字	(성 氏) / (명 名)		
	등록기준지 登 録 基 準 地				
	주 소 住 所				
정정사항 訂 正 事 項					
사 건 본 인 사 건 본 인	성 氏 명 名	한글 ハ ン グ ル	(성 氏) / (명 名)	주민등록 번 호 住 民 登 録 番 号	-
		한자 漢 字	(성 氏) / (명 名)		
	등록기준지 登 録 基 準 地				
	주 소 住 所				
정정사항 訂 正 事 項					
사 건 본 인 사 건 본 인	성 氏 명 名	한글 ハ ン グ ル	(성 氏) / (명 名)	주민등록 번 호 住 民 登 録 番 号	-
		한자 漢 字	(성 氏) / (명 名)		
	등록기준지 登 録 基 準 地				
	주 소 住 所				
정정사항 訂 正 事 項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 家族関係登録事項別証明書の交付等の申請書					
신청 대상자 ¹ 申請対象者	성명 氏名	(한자漢字 :)			
	등록기준지 ² 登録基準地	※ 뒷면 작성방법 5.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기준지의 기재 없이 주민등록번호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裏面の作成方法5.に該当する場合は登録基準地を記入することなく住民登録番号でも申請できます。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신청내용 申請内容	1.가족관계 증명서 家族関係証明書	①일반 一般 ()통통	②특정 特定()통통 □부 父 □모 母 □배우자 配偶者 □자녀 子(성명氏名:)		③상세 詳細 ()통통
	2.기본증명서 基本証明書	①일반 一般 ()통통	②특정 特定 ①출생사망실종 出生・死亡・失踪 ()통통 ①인자·친생자관계정정 認知・嫡出子関係訂正 ()통통 ③친권·미성년후견 親権・未成年後見 (□전부 全部 □현재 現在) ()통통 ④개명·성본변경 改名・姓・本貫変更 ()통통 ⑤국적취득·상실 国籍取得・喪失 ()통통 ⑥성별정정 性別訂正 ()통통		③상세 詳細 ()통통
	3.혼인관계 증명서 婚姻関係証明書	①일반 一般 ()통통	②특정 特定()통통 전(前)배우자성명 以前の配偶者氏名: _____		③상세 詳細 ()통통
	4.입양관계 증명서 養子縁組関係 証明書	①일반 一般 ()통통 ②상세 詳細 ()통통	5.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特別養子縁組関係証明書	①일반 一般 ()통통 ②상세 詳細 ()통통	
	6.신고서류기재사항증명 ()건件 申告書類記載事項証明		7.수리·불수리증명 ()건件 受理・不受理の証明		
	8.열람(신고서류) _____년 年 _____월 月 _____일 日 접수 受付 _____신고 申告 閱覽(申告書類)				
	9.종전「호적법」에 따른 제적 ①등본 謄本()통통 ②초본 抄本()통통 ③열람 閱覽()건件 従前の「戸籍法」による除籍 본적 本籍: _____ 호주 戸主: _____ 대상자 対象者: _____의 的				
	특정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선택하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지 포함 □본(本) 포함] 特定証明書交付申請をする場合のみ選択してください。 登録基準地を含む 本貫を含む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 (뒷부분6자리) 住民登録番号 (下6桁の)公開 申請有無	□전부공개 全部公開 □신청대상자 本人만 공개 申請対象 者本人の み公開	공개 신청 사유 公開 申請 事由	☐ 1.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한 경우 申請対象者の住民登録番号を正確に記入した場合 ☐ 2. 신청인이 신청대상자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 및 그 대리인인 경우 申請人が申請対象者本人又は本人の父母、養父母、配偶者、子及びその代理 人の場合 ☐ 3. 가족관계등록관서 출석 신청인이 재판상 필요를 소명 家族関係登録官署に出席した申請人が裁判上の必要を疎明する場合 ☐ 4. 공무원 등이 공용목적임을 소명한 경우 公務員などが公的な目的であることを疎明した場合	
	청구사유 請求事由				

소명자료 疎明資料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한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에 관한 동의 여부 ³ アポスティーユ申請のための証明書発給情報転送に関する同意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에 동의합니다 □ 証明書発給情報の転送に同意します	
신 청 인 申 請 人	성명 氏名	서명 ⑩ 또는 ⑪又は署名	주민등록번호 ⁴ 住民登録番号
	주소 住所	신청인 자격 申請人の資格	
		의 의	
위 임 인 代 理 人	성명 氏名	주민등록번호 ⁴ 住民登録番号	-
	위임을 받은 경우 위임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위임장은 별도 첨부) 委任を受ける場合は代理人の氏名及び住民登録番号を記入してください。(委任状は別途添付)		
20 년(年) 월(月) 일(日)			
○○시(区)·읍·면장 귀하 ○○市(区)・邑・面長 殿			
* 수수료 * 手数料	①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 등본 1통당 1,000원, 제적초본 1통당 500원 ① 登録事項別の証明書又は除籍謄本1通あたり1,000ウォン、除籍抄本1通あたり500ウォン ② 신고서류 열람·증명(신고서류기재사항증명, 수리·불수리 증명 등), 제적부 열람 1건당 200원 ② 申告書類の閲覧・証明(申告書類記載事項証明、受理・不受理の証明など)、除籍簿の閲覧 1件あたり200ウォン ③ 수수료 면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뒷면 참조) ③ 手数料免除対象者に該当する場合は手数料なし		
1. 공동상속처럼 신청대상이 수인일 때 신청 대상자란에 “별지와 같음”이라고 기재한 후 별지 서식을 이용하여 기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와 별지를 간인(서명)하여야 합니다. 1. 共同相続のように申請対象が数人である場合は申請対象欄に「別紙と同様」と記載した後、別紙書式を利用して記載することができ、この場合、申請書と別紙に割印(署名)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2.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과 그 대리인의 경우와 뒷면 작성방법 5.의 경우에는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도 청구할 수 있으나, 우편으로 청구할 때에는 등록기준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申請書を作成する場合には対象者の氏名と登録基準地を正確に記載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但、本人、配偶者、直系血族とその代理人の場合と下記5の場合は対象者の氏名と住民登録番号でも請求することができますが、郵便で請求するときは登録基準地を必ず記載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3. 아포스티유란 국내에서 발급한 문서를 다른 국가에 제출하여 증명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국제협약으로서, 주한 공사나 영사의 확인 없이 협약국가에서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3. アポスティーユとは、国内で発給された文書を他の国に提出して証明書として機能させる国際協約で、駐韓公使や領事の確認がなくても協約国家で公文書として効力が認められます。 4. 신청인 또는 위임인이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4. 申請人又は代理人が外国人の場合は外国人登録番号(国内居所申告番号または生年月日)を記入してください。 ※ 법 제117조: 제14조제1항·제2항·제7항, 제14조의2, 제14조의3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등록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제42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고서류를 열람하거나 신고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法第117条: 第14条第1項・第2項・第7項、第14条の2、第14条の3に違反して虚偽又はその他の不正な方法で他人の登録簿等の記録事項を閲覧又は証明書の交付を受けた人、第42条に違反して虚偽やその他の不正な方法で他人の申告書類を閲覧又は申告書類に記載されている事項に関する証明書の交付を受けた人は、3年以下の懲役又は1千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せられます。			

작성 방법

作成方法

(뒤 쪽)

-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신청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본인 등의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본인 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국제운전면허증, 외국국가기관 명의의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항에 해당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 등의 위임 없이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本人が請求する場合は申請書を作成しなくてもいいが、本人などの代理人が委任を受け請求する場合には申請書に本人などの署名又は捺印した委任状と身分証明書(住民登録証、運転免許証、パスポート、外国人登録証、国内居所申告証、国際運転免許証、外国国家機関名義の身分証明書、住民登録番号及び住所が記載された障害者登録証など)の写しを提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但し下記の各項に該当する疎明資料を提出する場合は、本人でない場合も本人などの委任なしで証明書の交付を申請することができます。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 및 법령상 근거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① 国家、地方自治体が職務上、必要及び法令上の根拠に基づいて文書で申請する場合
- ② 소송, 비송, 민사집행, 보전 등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 ② 訴訟、非訟、民事執行、保全などの各手続において必要な場合
- ③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 ③ 他の法令により本人などに関する証明書の提出を求められる場合
- ④ 민법상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 ④ 民法上の法定代理人(後見人、遺言執行者、相続財産管理人、不在者財産管理人)
- ⑤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⑤ 債権・債務など、財産権の相続と関連して相続人の範囲を確認するための場合
- ⑥ 보험금 또는 연금의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⑥ 保険金又は年金の受給権者を決めるために必要なとき
- ⑦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⑦ 「公益事業のための土地などの取得及び補償に関する法律」により土地などの所有者の相続人を確認する必要がある場合

- * 청구사유란 및 신청인의 자격란은 구체적으로 아래 예와 같이 기재하며, 신청인란의 기재는 하지 않거나, 청구사유를 기재하여야 할 사람이 청구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신청인이나 청구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 또는 제적부의 열람 및 등·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 *請求事由欄及び申請人の資格欄は具体的に下記の例のように記載し、申請人欄の記載をしなかったり、請求事由を記載すべき人が請求事由を記載しない場合又は申請人や請求事由を虚偽記載した場合は登録事項別の証明書又は除籍簿の閲覧及び謄本・抄本を発給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

예) 청구사유 : 가사소송관련(○○○의 ○○사건)법원제출용, 신청인의 자격 : 본인의 부, ○○○의 대리인

例)請求事由:家事訴訟関連(○○○の○○事件)法院提出用、申請人の資格:本人の父、○○○の代理人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신고서류의 열람 포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 特別養子縁組関係証明書(申告書類の閲覧を含む)は下記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限って交付の請求が可能です。

- ① 성년자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 ① 成年者が本人の特別養子縁組関係証明書を申請する場合
- ②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가 본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친양자가 성년자임을 소명한 때
- ② 特別養子の実父母・養父母が本人の特別養子縁組関係証明書を申請する場合は特別養子が成年者であることを疎明した場合
- ③ 혼인당사자가「민법」 제809조의 친족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경우
- ③ 婚姻当事者が「民法」第809条の親族関係を把握しようとする場合
- ④ 법원의 사실조회 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규칙 제23조 제5항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④ 法院から事実照会の嘱託を受けたり、捜査機関が規則第23条第5項に基づいて書面で申請する場合
- ⑤ 「민법」 제908조의4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908조의5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
- ⑤ 「民法」第908条の4に基づき養子縁組を取り消したり、同法第908条の5に基づき養子離縁をする場合
- ⑥ 「입양특례법」제16조에 따라 입양취소를 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파양을 할 경우
- ⑥ 「養子縁組特例法」第16条に基づき養子縁組を取り消したり、同法第17条に基づき養子離縁をする場合
- ⑦ 친양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함을 친양자의 양부모가 구체적으로 소명할 때
- ⑦ 特別養子の福利のために必要であることを特別養子の養父母が具体的に疎明した場合
- ⑧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 ⑧ 特別養子縁組関係証明書が訴訟、非訟、民事執行・保全など各手続において必要である場合
- ⑨ 채권·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 ⑨ 債権・債務など、財産権の相続と関連して相続人の範囲を確認する場合
- ⑩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채로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 ⑩ 家族関係登録簿を作成しないまま死亡した人の相続人の特別養子縁組関係証明書が必要な場合
- ⑪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소명하기 위하여 친양자의 친생부모·양부모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그 해당법령과 구체적인 소명자료 및 필요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
- ⑪ 法律上の利害関係を疎明するため特別養子の実父母・養父母の特別養子縁組関係証明書を申請する場合、その該当法令と具体的な疎明資料及び必要とされる理由が示された場合

3.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여부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신청 여부와 그 사유를 선택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3. 住民登録番号の公開申請有無欄は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限って公開の申請有無とその事由を選択し、その他の場合は記載しません。

- ① 시(구)·읍·면 및 동의 사무소에 출석한 신청인이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해당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 ① 市(区)・邑・面・洞の事務所に出席した申請人が申請対象者の住民登録番号を正確に記載し、該当証明書の交付を請求する場合
- ②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신청인이 본인 또는 그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
- ② 申請書の申請人欄に記載された申請人が本人又はその父母、養父母、配偶者、子である場合
- ③ 시(구)·읍·면 및 동의 사무소에 출석한 신청인이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 등의 각 절차에서 필요함을 소명하는 자료(예 : 법원의 재판서, 보정명령서 등)를 첨부하여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 ③ 市(区)・邑・面・洞の事務所に出席した申請人が訴訟、非訟、民事執行、保全などの各手続において必要であることを疎明する資料(例:法院の裁判書、補正命令書など)を添付して証明書の交付を請求する場合
- ④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직원을 포함한다)이, 공용 목적임을 소명하는 자료(예 : 공문서, 재결서 등)를 첨부하여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 ④ 国・地方自治団体の公務員(「公益事業のための土地などの取得及び補償に関する法律」第8条による事業施行者の職員を含む)が公的な目的であることを疎明する資料(例:公文書、裁決書など)を添付して証明書の交付を請求する場合

※「주민등록법」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이 본인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특정인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신청한 경우에는 위 공개신청사유 제①,②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의 공개가 제한됩니다.

※「住民登録法」第7条の4に基づいて住民登録番号を変更した人が本人の変更された住民登録番号を特定人に公開しないように申請した場合は、上記の公開申請事由第①②号に該当する場合であっても住民登録番号下6桁の公開が制限されます。

4. 위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의 공개를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4. 上記の3の規定にも関わらず、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は住民登録番号の下6桁の公開を制限しません。

- ① 종전「호적법 시행규칙」부칙(2004. 10. 18) 제3조에 규정된 이미지 전산 제적부 등
- ① 従来の「戸籍法の施行規則」付則(2004.10.18)第3条に規定されたイメージ電算除籍簿など
- ② 종전「호적법」에 따른 호적용지로 작성된 제적부
- ② 従来の「戸籍法」による戸籍用紙で作成された除籍簿

5. 아래의 경우 시(구)·읍·면·동의 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제적 등의 열람 및 등·초본,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下記の場合、市(区)邑面洞の事務所に直接出席して申請対象者の氏名と住民登録番号を記載し、申請人の身分証明書の写しを添付すると除籍などの閲覧及び謄・抄本、登録事項別証明書の交付を請求することができます。

- 위 제1.의 ①,②,③,④,⑥,⑦ 및 제2의 ⑧,⑨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 등 법령으로 정한 소명자료를 제출한 때 및 상속인이 상속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청구하는 때

-上記の第1の①、②、③、④、⑥、⑦及び第2の⑧、⑨に基づいて請求する場合、法院の補正命令など法令として定めた疎明資料を提出した場合及び相続人が相続関係の確認のために請求する場合

※수수료 면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

※手数料免除(家族関係の登録などに関する規則第28条第4項)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 ① 国家や地方自治体の公務員が職務上の必要によって請求する場合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 ② 「국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③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③ 「独立有功者礼遇に関する法律」第6条によって登録された独立有功者とその遺族(先順位者のみ該当する)が請求する場合
-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④ 「国家有者など礼遇及び支援に関する法律」第6条によって登録された国家有功者とその遺族(先順位者のみ該当する)が請求する場合
- 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 ⑤ 「枯葉剤後遺疑症患者支援などに関する法律」第4条によって登録された枯葉剤後遺疑症患者などが請求する場合
- ⑥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
- ⑥ 「参戦有功者礼遇及び団体設立に関する法律」第5条によって登録された参戦軍人などが請求する場合
- ⑦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⑦ 「5・18民主有功者礼遇に関する法律」第7条によって登録決定された5・18民主有功者とその遺族(先順位者のみ該当する)が請求する場合
- ⑧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 ⑧ 「特殊任務遂行者支援及び団体設立に関する法律」第3条第3号によって登録された特殊任務功労者とその遺族(先順位者のみ該当する)が請求する場合
- ⑨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청구하는 경우
- ⑨ 「ひとり親家族支援法」第5条又は第5条の2に基き保護対象者が請求した場合
- ⑩ 재해의 발생 등 시·읍·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⑩ 「災害の発生など市・邑・面の長が必要だと認める場合
- ⑪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 ⑪ 出生届出人に記録日から2週間以内に出生事件本人の基本証明書を最初1回発給する場合
- ⑫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 ⑫ 他の法律に手数料を免除する規定がある場合

<별지 別紙>

신청 대상자 申請対象者	성명氏名		(한자漢字:)		
	등록기준지 登録基準地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신청내용 申請内容	1.가족관계증명서 家族関係証明書	①일반 一般 ()통통	②특정 特定()통통 □부 父 □모 母 □배우자 配偶者 □자녀 子(성명氏名:)		③상세 詳細 ()통통
	2.기본증명서 基本証明書	①일반 一般 ()통통	②특정 特定 ①출생사망실종 出生・死亡・失踪 ()통통 ①인자친생자관계정정 認知・嫡出子関係訂正 ()통통 ②친권 미성년후견 親権・未成年後見 (□전부 全部 □현재 現在) ()통통 ③개명·성본변경 改名・姓・本貫変更 ()통통 ④국적취득·상실 国籍取得・喪失 ()통통 ⑤성별정정 性別訂正 ()통통		③상세 詳細 ()통통
	3.혼인관계증명서 婚姻関係証明書	①일반 一般 ()통통	②특정 特定()통통 전(前)배우자성명 以前の配偶者氏名: _____		③상세 詳細 ()통통
	4.입양관계증명서 養子縁組関係証明書	①일반 一般 ()통통 ②상세 詳細 ()통통	5.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特別養子縁組関係証明書	①일반 一般 ()통통 ②상세 詳細 ()통통	
	6.신고서류기재사항증명 ()건件 申告書類記載事項証明		7.수리·불수리증명 ()건件 受理・不受理の証明		
	8.열람(신고서류) _____년 年 _____월 月 _____일 日 접수 受付 _____ 신고 申告 閱覽(申告書類)				
	9.종전「호적법」에 따른 제적 ①등본 謄本()통통 ②초본 抄本()통통 ③열람 閱覽()건件 従前の「戸籍法」による除籍 본적 本籍: _____ 호주 戸主: _____ 대상자 対象者: _____ 의 的				
	특정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선택하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지 포함 □본(本) 포함] 特定証明書交付申請をする場合のみ選択してください。 登録基準地を含む 本貫を含む				
	신청 대상자 申請対象者	성명氏名		(한자漢字:)	
		등록기준지 登録基準地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신청내용 申請内容	1.가족관계증명서 家族関係証明書	①일반 一般 ()통통	②특정 特定()통통 □부 父 □모 母 □배우자 配偶者 □자녀 子(성명氏名:)		③상세 詳細 ()통통
	2.기본증명서 基本証明書	①일반 一般 ()통통	②특정 特定 ①출생사망실종 出生・死亡・失踪 ()통통 ①인자친생자관계정정 認知・嫡出子関係訂正 ()통통 ②친권 미성년후견 親権・未成年後見 (□전부 全部 □현재 現在) ()통통 ③개명·성본변경 改名・姓・本貫変更 ()통통 ④국적취득·상실 国籍取得・喪失 ()통통 ⑤성별정정 性別訂正 ()통통		③상세 詳細 ()통통
	3.혼인관계증명서 婚姻関係証明書	①일반 一般 ()통통	②특정 特定()통통 전(前)배우자성명 以前の配偶者氏名: _____		③상세 詳細 ()통통
	4.입양관계증명서 養子縁組関係証明書	①일반 一般 ()통통 ②상세 詳細 ()통통	5.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特別養子縁組関係証明書	①일반 一般 ()통통 ②상세 詳細 ()통통	
	6.신고서류기재사항증명 ()건件 申告書類記載事項証明		7.수리·불수리증명 ()건件 受理・不受理の証明		
	8.열람(신고서류) _____년 年 _____월 月 _____일 日 접수 受付 _____ 신고 申告 閱覽(申告書類)				
	9.종전「호적법」에 따른 제적 ①등본 謄本()통통 ②초본 抄本()통통 ③열람 閱覽()건件 従前の「戸籍法」による除籍 본적 本籍: _____ 호주 戸主: _____ 대상자 対象者: _____ 의 的				
	특정증명서 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선택하기 바랍니다. [□등록기준지 포함 □본(本) 포함] 特定証明書交付申請をする場合のみ選択してください。 登録基準地を含む 本貫を含む				

기본증명서

基本証明書

등록기준지 登録基準地					
구분 区分	상세내용 詳細内容				
작성 作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일 家族関係登録簿作成日] [작성사유 作成事由]				
변경 変更	[변경일 変更日] [전 등록기준지 前登録基準地] [처리관서 処理官署]				
구분 区分	성명 氏名	출생연월일 生年月日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성별 性別	본 本貫
본인 本人					

일반등록사항 一般登録事項

구분 区分	상세내용 詳細内容
출생 出生	[출생장소 出生場所] [신고일 届出日] [신고인 届出人]
국적회복 国籍回復	[국적회복허가일 国籍回復許可日] [국적회복전국적 国籍回復前の国籍] [신고일 届出日] [신고인 届出人] [송부일 送付日] [송부자 送付人]
개명 改名	[개명허가일 改名許可日] [허가법원 許可法院] [신고일 届出日] [신고인 届出人] [개명전이름 改名前の名前] [개명후이름 改名後の名前]
정정 訂正	[직권정정서작성일 職権訂正書作成日] [정정일 訂正日] [정정전 주민등록번호 訂正前の住民登録番号] [정정후 주민등록번호 訂正後の住民登録番号] [처리관서 処理官署]

위 기본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上記の基本証明書は家族関係登録簿の記録事項と相違ないことを証明します。

년(年) 월(月) 일(日)

○○시(읍·면)장
○○市(邑・面)長

○ ○ ○
○ ○ ○

직인

혼 인 관 계 증 명 서

婚 姻 関 係 証 明 書

구분 区分	성 명 氏 名	출생연월일 生年月日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성별 性別	본 本貫
본인 本人					

혼인사항 婚姻事項

등록기준지 登録基準地	
----------------	--

구분 区分	성 명 氏 名	출생연월일 生年月日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성별 性別	본 本貫
배우자 配偶者					

구분 区分	상 세 내 용 詳 細 内 容
혼인 婚姻	[신고일 届出日] [배우자 配偶者]
이혼 離婚	[협의이혼신고일 協議離婚届出日] [배우자 配偶者]
혼인 婚姻	[신고일 届出日] [배우자 配偶者] [배우자의 주민등록번호 配偶者の住民登録番号] [처리관서 处理官署]

위 혼인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上記の婚姻関係証明書は家族関係登録簿の記録事項と相違ないことを証明します。

년(年) 월(月) 일(日)

○○시(읍·면)장 ○ ○ ○
○○市(邑・面)長 ○ ○ ○

직인

입양관계증명서

養子縁組関係証明書

등록기준지 登録基準地					
----------------	--	--	--	--	--

구분 区分	성명 氏名	출생연월일 生年月日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성별 性別	본 本貫
본인 本人					

입양사항 養子縁組事項	
----------------	--

구분 区分	성명 氏名	출생연월일 生年月日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성별 性別	본 本貫
친생부 実父					
친생모 実母					
양부 養父					
양모 養母					
양자 養子					
양자 養子					

구분 区分	상세내용 詳細内容
입양 養子縁組	[신고일 届出日] [양자 養子]
입양 養子縁組	[신고일 届出日] [양부 養父] [양모 養母]
입양 養子縁組	[신고일 届出日] [양자 養子] [양자의 주민등록번호 養子の住民登録番号] [처리관서 処理官署]

위 입양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단, 친양자입양관계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만 표시합니다.

上記の養子縁組関係証明書は家族関係登録簿の記録事項と相違ないことを証明します。

但、特別養子縁組関係は特別養子縁組関係証明書にのみ表示します。

년(年) 월(月) 일(日)

○○시(읍·면)장 ○ ○ ○
○○市(邑·面)長 ○ ○ ○

직인

친 양 자 입 양 관 계 증 명 서

特 別 養 子 緣 組 関 係 証 明 書

등록기준지 登録基準地					
구분 区分	성명 氏名	출생연월일 生年月日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성별 性別	본 本貫
본인 本人					
친양자입양사항 特別養子縁組事項					
구분 区分	성명 氏名	출생연월일 生年月日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성별 性別	본 本貫
친양자 特別養子					
구분 区分	상세내용 詳細内容				
입양 養子縁組	[친양자입양재판확정일 特別養子縁組裁判確定日] [결정법원 決定法院] [친양자 特別養子] [친양자의 주민등록번호 特別養子の住民登録番号] [신고일 届出日] [신고인 届出人] [처리관서 処理官署]				

위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上記の特別養子縁組関係証明書は家族関係登録簿の記録事項と相違ないことを証明します。

년(年) 월(月) 일(日)

○○시(읍·면)장 ○ ○ ○
 ○○市(邑・面)長 ○ ○ ○

직인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신청서

家族関係に関する英文証明書 発給申請書

외교부 여권정보(여권상 로마자성명) 활용에 관한 동의 여부 ¹ 外交部旅券情報(旅券上のローマ字氏名) 活用に関する同意				여권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 旅券情報活用に同意します	
신청 대상자 申請対象者	성명 氏名	한글 ハングル			
	등록기준지 ² 登録基準地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신청내용 申請内容	발급 통수()통 発給部数 部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旅券の発給を受けたことがない家族構成員がいる場合のみ記入してください。				
	담당자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성명을 표기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³ 担当者が「国語のローマ字表記法」により氏名を表記することに同意しますか。				동의합니다 ☐ 同意します
	위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맞게 로마자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外国人인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우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³ 上記の内容に同意されない場合は、「国語のローマ字表記法」に基づいてローマ字氏名を記入してください。 外国人である家族構成員がいる場合は外国旅券上のローマ字氏名を記入してください。				
			성 氏	명 名	
	☐ 부 ☐ 모 ☐ 배우자 父 母 配偶者				
	☐ 부 ☐ 모 ☐ 배우자 父 母 配偶者				
	☐ 부 ☐ 모 ☐ 배우자 父 母 配偶者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 여부 (뒷분6자리) 住民登録番号(下6 桁の)公開申請	☐ 전부공개 全部公開 ☐ 신청대상자만 공개 申請対象者のみ公開		공개신청 사유 公開申請事由	☐ 1.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한 경우 申請対象者の住民登録番号を正確に記載した場合 ☐ 2. 신청인이 신청대상자 또는 그의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 및 그 대리인인 경우 申請人が申請対象者本人又は本人の父母、養父母、配偶 者、子及びその代理人である場合	
청구사유 請求事由					
소명자료 疎明資料					
아포스티유 신청을 위한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에 관한 동의 여부 ⁴ アポスティユ申請のための証明書発給情報転送に関する同意				증명서 발급정보 전송에 동의합니다 ☐ 証明書交付情報転送に同意します	
신 청 인 申請人	성명 氏名	한글 ハングル	⑩ 또는 서명 ⑩または署名	주민등록번호 ⁵ 住民登録番号	-
	신청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申請人が旅券の発給を受けたことがない場合のみ記入してください。				
	담당자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성명을 표기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³ 担当者が「国語のローマ字表記法」により氏名を表記することに同意しますか。				동의합니다 ☐ 同意します
	위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맞게 로마자성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上記の内容に同意されない場合は、 「国語のローマ字表記法」に基づいてローマ字氏名を記入してください。				성 氏 명 名
	주소 住所			신청인 자격 申請人の資格 휴대전화번호 등 携帯番号など	의 の
위 임 인 代理人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代理で申請する場合のみ記入してください。				
	성명 氏名	한글 ハングル	⑩ 또는 서명 ⑩または署名	주민등록번호 ⁵ 住民登録番号	-
	위임을 받은 경우 위임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위임장은 별도 첨부) 委任された場合は代理人の氏名及び住民登録番号を記入してください。(委任状は別添付)				

20 년(年) 월(月) 일(日)

○○시(区)·읍·면장 귀하
○○市(区)·邑·面長 貴下

※ 수수료
手数料

- ①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1통당 1,000원
家族関係に関する英文証明書 1部当たり 1,000ウォン
② 수수료 면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뒷면 참조)
手数料免除対象者に該当する場合は手数料免除(裏面参照)

1. 외교부 여권정보를 활용하여 영문증명서상 본인(신청대상자), 부모, 배우자 및 신청인의 성명을 여권상 로마자성명으로 표기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말합니다.
外交部旅券情報を活用して英文証明書上の本人(申請対象者)、父母、配偶者及び申請人の氏名を旅券上のローマ字氏名で表記することに関する同意を意味します。
2.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과 그 대리인의 경우와 민법상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시(구)·읍·면·동의 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여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도 청구할 수 있으나, 우편으로 청구할 때에는 등록기준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申請書を作成する場合は、申請対象者の氏名と登録基準地を正確に記入してください。但、本人又は本人の配偶者、直系血族とその代理人の場合と、民法上の法定代理人(後見人、遺言執行者、相続財産管理人、不在者財産管理人)が市(区)、邑、面、洞の事務所に直接出席して身分証の写しを添付する場合は、申請対象者の氏名と住民登録番号でも請求できますが、郵便で請求する場合は必ず登録基準地を記入してください。
3. 신청대상자의 부모나 배우자가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로마자성명을 표기하는 것에 동의하면 로마자성명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로마자성명으로 표기됩니다. 그리고 신청대상자의 부모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관에서 그 사람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申請対象者の父母や配偶者が旅券の発給を受けたことがない場合、担当者が「国語のローマ字表記法」によってローマ字氏名を表記することに同意するのであれば、ローマ字氏名を記入しなくても構いません。その場合、最も多く使われるローマ字氏名で表記されます。申請対象者の父母や配偶者が外国人の場合は、家族関係登録官署でその人の外国旅券上のローマ字氏名を疎明してください。
4. 아포스티유란 국내에서 발급한 문서를 다른 국가에 제출하여 증명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국제협약으로서, 주한 공사나 영사의 확인 없이 협약국가에서 공문서의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アポスティューとは、国内で交付された文書を他の国家に提出して証明書として機能させる国際協約であり、駐韓公使や領事の確認がなくても協約国家において公文書として効力が認められます。
5.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外国人の場合は外国人登録番号(国内居所申告番号又は生年月日)を記入してください。

작 성 방 법
作成方法

(뒤 쪽)

1. 본인 등의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본인 등이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과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국제운전면허증, 외국국가기관 명의의 신분증,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민법상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도 본인 등의 위임 없이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本人などの代理人が委任されて請求する場合は、申請書に本人などが署名または捺印した委任状と身分証明書(住民登録証、運転免許証、旅券、外国人登録証、国内居所申告証、国際運転免許証、外国国家機関名義の身分証、住民登録番号及び住所が記載された障害者登録証など)の写しを提出してください。但、民法上の法定代理人(後見人、遺言執行者、相続財産管理人、不在者財産管理人)が疎明資料を提出する場合は、本人などではない場合も本人などの委任なく証明書の交付を申請することができます。
2.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영문증명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下記のどれかに該当事由がある場合は英文証明書交付が制限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
 - ① 본인이 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本人が旅券の発給を受けたことがない場合
 - ② 본인이 「혼인신고특별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한 경우
本人が「婚姻申告特例法」によって婚姻申告した場合
 - ③ 본인의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
本人の登録簿が閉鎖された場合
 - ④ 부, 모 또는 배우자의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다만, 사망(실종선고 및 부재선고를 포함한다)하거나 국적을 상실(이탈을 포함한다)하여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父、母または配偶者の登録簿が閉鎖された場合[但、死亡(失踪宣告及び不在宣告を含む)や国籍喪失(離脱を含む)で登録簿が閉鎖された場合は例外とする]
 - ⑤ 등록부에 부, 모 또는 배우자가 2명 이상 기록된 경우
登録簿に父、母または配偶者が2人以上記録された場合

⑥ **외국인인 부, 모 또는 배우자의 외국여권상 로마자성명이 소명되지 아니한 경우**

外国人の父、母または配偶者の外国旅券上のローマ字氏名が疎明されない場合

- ⑦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무효인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登録簿の記録が法律上無効、又は記録に錯誤又は漏れがある場合

3. 주민등록번호 공개신청여부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신청 여부와 그 사유를 선택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住民登録番号の公開申請有無欄は、次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に限り公開申請の有無とその事由を選択し、その他の場合は記入しません。

- ① 시(구)·읍·면 및 동의 사무소에 출석한 신청인이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해당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市(区)・邑・面・洞の事務所に出席した申請人が申請対象者の住民登録番号を正確に記入し、該当証明書の交付を請求する場合
② 신청서의 신청인란에 기재된 신청인이 본인 또는 그 부모, 양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
申請書の申請人欄に記載された申請人が本人又はその父母、養父母、配偶者、子である場合

※「주민등록법 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사람이 본인의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를 특정인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신청한 경우에는 위 공개 신청사유 제①,②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6자리 숫자의 공개가 제한됩니다.

「住民登録法」第7条の4に基づいて住民登録番号を変更した人が、本人の変更した住民登録番号を特定の人に公開しないように申請した場合は、公開申請事由の第①,②号に該当する場合でも住民登録番号の下6桁の公開が制限されます。

4. 여권정보 활용에 관한 동의를 받아 여권상 로마자성명을 표기하는 경우, 여권상 로마자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다른 경우에도 여권상 로마자성명으로 표기됩니다.

旅券情報活用に関する同意を受けて旅券上のローマ字氏名を表記する場合、旅券上のローマ字氏名がハングル氏名の発音と異なる場合でも旅券上のローマ字氏名で表記されます。

5. 등록부에 출생장소 기록은 있으나 국내인지 외국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미상이나 불상 등으로 기록된 경우, 그 밖에 출생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생장소가 “(Unspecified)”로 현출됩니다.

登録簿に出生場所の記録はあっても国内か外国か明確でない場合、未詳や不詳などで記録される場合、そのほか出生場所を特定するのが難しい場合は、出生場所が“(Unspecified)”と表示されます。

[예시] 제주도에서 일본국 대판항으로 항해 중 → (Unspecified)

[예] 濟州島から日本国大阪港へ航海中 → (Unspecified)

[예시] 미상 → (Unspecified)

[예] 未詳 → (Unspecified)

6. 배우자의 사망일을 연월일로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망일이 “(Unspecified)”로 현출됩니다.

配偶者の死亡日を年月日で明確に特定できない場合は死亡日が“(Unspecified)”と表示されます。

[예시] 2012년 05월 일 미상 → (Unspecified)

[예] 2012年 05月 日 未詳 → (Unspecified)

[예시] 2013년 10월 20일부터 23일 사이 → (Unspecified)

[예] 2013年 10月 20日から23日の間 → (Unspecified)

[예시] 2014년 11월 11일 추정 → (Unspecified)

[예] 2014年 11月 11日 推定 → (Unspecified)

[예시] 2015년 12월 15일 10시 경 → (Unspecified)

[예] 2015年 12月 15日 10時頃 → (Unspecified)

※ 법 제117조: 제14조제1항·제2항·제7항, 제14조의2, 제14조의3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등록 부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 제42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신고서류를 열람하거나 신고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法第117条: 第14条第1項・第2項・第7項、第14条の2、第14条の3に違反して虚偽やその他の不正な方法により他人の登録簿などの記録事項を閲覧又は証明書の交付を受けた人、第42条に違反して虚偽やその他の不正な方法で他人の申告書類を閲覧又は申告書類に記載されている事項に関する証明書の交付を受けた者は、3年以下の懲役又は1000万ウォン以下の罰金に処せられます。

※수수료 면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4항)

手数料免除(家族関係の登録などに関する規則第28条第4項)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경우
国家や地方自治体の公務員が職務上の必要によって請求する場合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가 청구하는 경우
「国民基礎生活保障法」第2条第2号の受給者が請求する場合
- ③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独立有功者礼遇に関する法律」第6条によって登録された独立有功者とその遺族(先順位者のみ該当する)が請求する場合
-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国家有功者など礼遇及び支援に関する法律」第6条によって登録された国家有功者とその遺族(先順位者のみ該当する)が請求する場合
- 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청구하는 경우
「枯葉剤後遺症症患者者支援などに関する法律」第4条によって登録された枯葉剤後遺症症患者などが請求する場合
- ⑥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
「参戦有功者礼遇及び団体設立に関する法律」第5条によって登録された参戦軍人などが請求する場合
- ⑦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5・18民主有功者礼遇に関する法律」第7条によって登録決定された5・18民主有功者とその遺族(先順位者のみ該当する)が請求する場合
- ⑧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特殊任務遂行者支援及び団体設立に関する法律」第3条第3号によって登録された特殊任務功労者とその遺族(先順位者のみ該当)が請求する場合
- ⑨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出生届出人に記録日から2週間以内に出生事件本人の基本証明書を初回1回発給する場合
- ⑩ 다른 법률에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他の法律に手数料を免除する規定がある場合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10. 13.>
住民登録法施行令 [別紙第9号書式] <改定 2020. 10. 13.>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 []訂正 []抹消 []居所不明 登録届(居住者用及び永住帰国者用)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裏面の留意事項を読んで作成し、[]には該当項目に√印をしてください。灰色の欄には記入しないでください。(앞쪽)

접수 번호 受付番号		신고일 届出日		관계 기관 통보 登録基準地通達		
		년(年) 월(月) 일(日)		(인)		
신고 사항 申告事項	신고 내용 申告内容	☐ 정정(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주와의 관계, 등록기준지, 재외국민→거주자) 訂正(氏名、住民登録番号、住所、世帯主との関係、登録基準地、在外国民→居住者) ☐ 세대주 변경 ☐ 세대 분가 ☐ 세대 합가 ☐ 말소 ☐ 거주불명 등록 世帯主変更 世帯分離 世帯合併 抹消 居所不明登録				
	신고 사유 申告事由	※ 거주불명 등록신고 시 작성 (예 : 실종, 가출 등) 居所不明登録時に作成(例:失踪、家出等)				
	대상자 인적 사항 対象者の人的事項	세대주와의 관계 世帯主との関係	성명 氏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정정 전 訂正前	정정 후 訂正後
세대주 확인 世帯主確認	변경 전 세대주 성명 変更前の世帯主氏名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변경 후 세대주 성명 変更後の世帯主氏名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주민등록법」 제8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 신고를 합니다.

「住民登録法」第8条及び第13条と同法施行令第13条第1項、第20条第1項及び第32条の2第2項により ([]訂正 []抹消 []居所不明登録) の申告をします。

		년(年)	월(月)	일(日)
신고인 届出人	성명 氏名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세대주와의 관계 世帯主との関係
	주소 住所 (시·도) (시·군·구) (市·道) (市·郡·区)	※ 시·도, 시·군·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市・道、市・郡・区まで記入 (詳細住所は記入しなくても構いません)		연락처 連絡先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邑・面・洞長 及び出張所長 殿

위임장 委任状

「주민등록법」 제11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 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住民登録法」第11条第1項但書と同法施行令第19条第1項により ([]訂正 []抹消 []居所不明 登録)の申告を上記の届出人に委任します。

년(年) 월(月) 일(日)

위임한 사람(세대주)
委任する人(世帯主)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첨부 서류 添付書類	영주귀국 확인서(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을 정정신청할 때에만 제출합니다.) 永住帰国確認書(永住帰国者の住民登録を訂正申請する場合のみ提出します。)
---------------	---

유의사항 留意事項

1. 신고인은 '신고인'의 '성명'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에 한글 서명을 할 수 있으며, 세대주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 전 세대주와 변경 후 세대주가 각각 '세대주 확인' 칸에 성명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합니다.
届出人は「届出人」の「氏名」欄に捺印する代わりにハングル署名をすることができ、世帯主を変更する場合は変更前の世帯主と変更後の世帯主がそれぞれ世帯主確認欄に氏名を記入し、署名又は捺印してください。
2.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사람이 영주귀국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정정신고할 수 있으며, 이민 출국 말소자 또는 현지이주 말소자가 거주자로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在外国民として登録された人が永住帰国する場合は居住者として訂正申告することができ、移民出国抹消者又は現地移住抹消者が居住者として住民登録をする場合は除きます。
3. 지번 정정 등 주소 정정을 할 때에는 신고인이 정정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성명·성별·등록기준지 등 가족관계 등록 사항 정정을 할 때에는 접수 기관이 정정·말소·거주불명 등록자의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르거나 등록기준지를 조회하여 처리합니다.
地番訂正等の住所訂正の場合は、届出人が訂正事由を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氏名・性別・登録基準地等の家族関係登録事項を訂正する場合は受付機関が訂正・抹消・居所不明登録者の家族関係記録事項に関する証明書に基づくか、登録基準地を照会して処理します。
4. '변경 전 세대주 성명' 칸은 세대주 변경, 말소, 거주불명 등록 또는 동일 거주지 내 세대 합가·분가 등으로 세대주를 변경할 때에만 적으며, 세대주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 전 세대주와 변경 후 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세대주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의 때에는 변경 전 세대주 성명만 작성) 다만, 변경 전 세대주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 및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変更前の世帯主氏名」欄には世帯主変更、抹消、居所不明登録又は同一居住地内の世帯合併・分離等によって世帯主を変更する場合のみ記入し、世帯主を変更する場合は変更前の世帯主と変更後の世帯主の確認(署名又は捺印)を受けてください(世帯主抹消又は居所不明登録の場合は変更前の世帯主氏名のみ記入)。但、変更前の世帯主の確認を受けられない場合は邑・面・洞及び出張所長の実事調査に代えることができます。
5.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世帯主の委任を受けて届出をする世帯主の配偶者、直系血族、配偶者の直系血族又は直系血族の配偶者は「委任状」欄に世帯主の委任を受け、世帯主の住民登録証・旅券等の身分証明書を提示してください。
(※ 委任状を虚偽で作成した場合は「刑法」によって罰せられます。)
6. 주민등록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住民登録届内容の事実は統長・里長が事後に確認し、虚偽で申告した場合は3年以下の懲役又は3千万ウォン以下の罰金刑に処せられます。('住民登録法' 第37条)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7. 11. 28.>
住民登録法施行令 [別紙第10号書式] <改定 2017. 11. 28.>

주민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
住民登録届(居住者用及び永住帰国者用)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裏面の留意事項を読んで作成し、灰色の欄には記入しないでください。

접수 번호 受付番号	신고일 受付日	년 월 일 年 月 日	등록기준지 통보 登録基準地通知	(인)
세대주 정보 世帯主 情報	성명 氏名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연락처 連絡先
	주소 住所			

* 주민등록신고 대상자 住民登録届の対象者

세대주와의 관계 世帯主との 関係	성명(한자) 氏名(漢字)	성별 性別	생년월일 生年月日	등록기준지 登録基準地	국내거소 신고번호 国内居所 申告番号	외국인 등록번호 外国人 登録番号
기타 その他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신고를 합니다.

「住民登録法」第6条第1項及び第10条第1項と同法施行令第14条第1項及び第32条の2第1項により住民登録申告をします。

년(年) 월(月) 일(日)

※ 세대주와 신고인이 같으면, '신고인' 칸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世帯主と届出人が同一の場合は「届出人」欄は作成しません。

신고인 届出人	성명 氏名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연락처 連絡先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邑・面・洞長 及び出張所長 殿

위임장 委任状

「주민등록법」 제11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신고를 위 신고인에게 위임합니다.

「住民登録法」第11条第1項但書と同法施行令第19条第2項により住民登録届を上記の届出人に委任します。

년(年) 월(月) 일(日)

위임한 사람(세대주)

委任する人(世帯主)

위임받은 사람(신고인)과의 관계

委任される人(届出人)との関係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첨부 서류 添付書類	영주귀국 확인서(영주귀국자의 주민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永住帰国確認書(永住帰国者の住民登録届の場合のみ提出します)
------------	---

주민등록신고 확인서 住民登録届確認書

* 확인서는 전산 교부를 원칙으로 하며, 전산으로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작성해 교부합니다.
 確認書は電算交付を原則とし、電算により交付できない場合は別途作成して交付します。

접수 번호 受付番号		신고일 届出日
신고인 届出人	성명 氏名 주소 住所	세대주 世帯主

위와 같이 주민등록 신고서를 접수하였습니다.
 上記のとおり住民登録届を受け付けました。

년(年) 월(月) 일(日)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직인
 邑・面・洞長 及び出張所長印



(뒤쪽)

유의사항 留意事項

- 신고인은 '신고인의 성명'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에 한글 서명을 해도 되며, '세대주 정보'의 '성명' 칸에 세대주의 확인(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届出人は「届出人の氏名」欄に捺印する代わりにハングル署名をすることができ、「世帯主情報」の「氏名」欄に世帯主の確認(世帯主の署名又は捺印)を受けてください。
-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자가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在外国民国内居所申告者が住民登録をする場合、必ず国内居所申告番号を記入してください。
- 재외동포나 외국인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在外同胞や外国人が大韓民国の国籍を取得して住民登録をする場合は、必ず外国人登録番号を記入してください。
- '기타' 칸에는 합숙하는 곳에 주민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관리 책임자를,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또는 가족관계 등록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유 등을 적습니다.
 「その他」の欄は合宿先に住民登録をする場合には管理責任者を、家族関係登録がされていない人又は家族関係登録の有無が定かでない人はその事由等を書きます。
- 17세 이상인 사람이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확인 및 신원 조사가 완료된 후에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17歳以上の人が新規登録をする場合は、家族関係記録事項に関する証明書の確認及び身元調査が完了した後に住民登録証が交付されます。
-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사람이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신고 접수 후 '주민등록신고 확인서'를 받아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家族関係登録簿がない人が新規登録する場合は、登録届の受付後「住民登録届確認書」を受けて登録手続きをしてください。
- 해외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이 영주귀국하여 신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영주귀국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海外に移住して住民登録がない人が永住帰国して新規登録する場合は、永住帰国確認書を添付してください。
- 가족관계등록부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이 교부되지 않습니다.
 家族関係登録簿が確認できない人には住民登録表謄本・抄本は交付されません。
-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위임장' 칸에 세대주의 위임을 받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증·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위임장을 거짓으로 작성할 때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世帯主の委任を受けて届出をする世帯主の配偶者、直系血族、配偶者の直系血族又は直系血族の配偶者は「委任状」欄に世帯主の委任を受け、世帯主の住民登録証・旅券等の身分証明書を一緒に提示してください。
 (※ 委任状を虚偽で作成する場合は「刑法」によって罰せられます)
- 주민등록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이장이 사후에 확인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住民登録届内容の真否は統長・里長が事後に確認し、虚偽の届出をした場合は3年以下の懲役又は3千万ウォン以下の罰金刑に処せられます。(「住民登録法」第37条)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0. 10. 13.>
住民登録法施行令 [別紙第30号書式] <改定 2020. 10. 13.>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서
住民登録証 発給申請書

※ 뒤쪽의 유의 사항과 작성 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裏面の留意事項と作成方法を読んで作成し、[]には該当項目に√印をつけます。(앞쪽)

접수번호 受付番号	접수일 受付日	처리기간 処理期間	즉시 即時	
사진(남자) 写真(男) (6개월 이내에 촬영한 3.5cm×4.5cm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6か月以内に撮影した 3.5cm×4.5cmの 帽子等をかぶっていない 上半身写真)	성명(한글) 氏名(ハングル)	성명(한자) 氏名(漢字)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혈액형 血液型		
	주소 住所			
	연락처 連絡先 ※ 주민등록증 수령 문자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번호를 적습니다. 住民登録証受領メッセージ案内サービスを申請する場合は携帯電話番号を記入します。			
신청 내용 申請内容	주민등록증 발급 구분 住民登録証発給区分	[] 거주자 居住者 [] 재외국민 在外国民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 住民登録証発給申請確認書	[] 신청 申請する [] 미신청 申請しない		
	주민등록증 수령 방법 住民登録証受領方法	[] 신청기관 방문 申請機関訪問 [] 주민등록기관 방문 住民登録機関訪問 [] 등기우편 書留郵便		
	주민등록증 수령 문자 안내 서비스 住民登録証受領メッセージ案内サービス	[] 신청 申請する [] 미신청 申請しない		
	점자 스티커 点字シール	[] 신청 申請する [] 미신청 申請しない		
	등기우편 수령 주소 書留郵便受領住所 [] 주민등록 주소와 같음 住民登録住所と同じ 주민등록 주소가 아닌 경우 住民登録住所でない場合: (우 투)			
주민등록증 발급 사실 문자통보서비스 住民登録証発給事実 SMS通知サービス	본인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신청되거나,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배송 또는 민원인에게 교부되었을 때 그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받는 서비스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本人の住民登録証(再)発給が申請された時、発給された住民登録証が邑・面事務所や洞住民センターに配送された時、又は民願人に交付された時、その事実を携帯電話メッセージに通知するサービスは別途申請してください。			
본인 확인 本人確認	담당 공무원 担当公務員	통장·이장 統長・里長	가족 家族	증명 가능 서류 証明可能書類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住民登録法」第24条及び第27条の2により住民登録証の発給を申請します。

년(年) 월(月) 일(日)

신청인 申請人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관계 공무원 원 방문 발급 신청인 關係公務員訪問発給申請人	성명(한글) 氏名(ハングル)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주소 住所 (시·도) (市・道) (시·군·구) (市・郡・区)	연락처 連絡先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邑・面・洞長 及び出張所長 殿

왼손 회전 지문 (각 빈칸의 크기: 가로 4cm × 세로 3cm) 左手回転指紋 (各空欄の大きさ: 横 4cm × 縦 3cm)				
둘째손가락 2番目の指	셋째 손가락 3番目の指	넷째 손가락 4番目の指	다섯째 손가락 5番目の指	첫째손가락 1番目の指

오른손 회전 지문 (각 빈칸의 크기: 가로 4cm × 세로 3cm) 右手回転指紋 (各空欄の大きさ: 横 4cm × 縦 3cm)				
둘째손가락 2番目の指	셋째 손가락 3番目の指	넷째 손가락 4番目の指	다섯째 손가락 5番目の指	첫째손가락 1番目の指

왼손 엄지 평면 左手親指平 面	왼손 네 손가락 평면 左手4本指平面 (빈칸 크기: 가로 7.1cm × 세로 5.5cm) (空欄の大きさ: 横 7.1cm × 縦 5.5cm)	오른손 네 손가락 평면 右手4本指平面 (빈칸 크기: 가로 7.1cm × 세로 5.5cm) (空欄の大きさ: 横 7.1cm × 縦 5.5cm)	오른손 엄지평 면 右手親指平 面

(뒤쪽)

첨부 서류 添付書類	1.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사진 1장: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3.5cm×4.5cm) 住民登録証発給対象者の写真1枚: 6か月以内に撮影した帽子などをかぶっていない上半身写真(3.5cm×4.5cm) 2.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의 신분증(사진이 부착된 학생증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住民登録証発給対象者の身分証(写真付の学生証や国家・地方自治体又は公共機関で発給した証明書) 3. 방문 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발급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訪問発給申請をする場合は発給対象者が重症障害者であることを疎明する資料と申請人の身分証(住民登録証、パスポート、運転免許証等)	수수료 手数料
		없음 なし

유의 사항 留意事項

- 주민등록증과 관련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住民登録証に関して虚偽の事実を届出又は申請した人や他人の住民登録証を不正に使用した人は、3年以下の懲役又は3千万ウォン以下の罰金刑に処せられます(「住民登録法」第37条).
- ‘주민등록기관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후 3년 이내에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주민등록증은 파기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신청 후 주민등록지가 변경되어 변경된 주민등록지에서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주민등록 기관에서 주민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住民登録機関訪問」受領を選択した場合は、申請後3年以内に住民登録証を受け取りに来てください。3年が経過しても受取に来

ない場合、住民登録証は破棄されます。また、住民登録証申請後に住民登録地が変更され、変更された住民登録地にて受取を希望する場合は変更された住民登録機関で住民登録証を受領することができます。

3. ‘등기우편’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할 때 등기우편료를 납부해야 하며, 최초 발송일부터 5일 이내 3회 발송을 했음에도 신청인의 사정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발급 신청 기관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야 합니다.

「書留郵便」受領を希望する方は申請時に書留郵便料を納付してください。最初の発送日から5日以内に3回発送しても申請人の事情で住民登録証を受け取れなかった場合は、申請人が発給申請機関に直接訪問して住民登録証を受け取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4.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주민등록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발급 신청 기관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書留郵便で発送した住民登録証を申請人でない他人が代理受領して発生した事故については、発給申請機関に責任がないことをお知らせします。

5.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통보를 신청한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증 신청이 접수되거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이 배송되었을 때,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교부되었을 때 본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해 드립니다.

「住民登録法施行規則」第41条の2による住民登録証の発給・再発給通知を申請した場合、本人の住民登録証申請が受付された時、邑・面事務所又は洞住民センターに住民登録証が配送された時、住民登録証が交付された時に本人の携帯電話メッセージ(SMS)にその事実を通知します。

6.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 신청은 해당 중증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중증장애인의 세대주,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가 할 수 있으며, 해당 발급 기일 내에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重症障害者に対する住民登録証訪問発給申請は、該当重症障害者や法定代理人又は保護者(重症障害者の世帯主、配偶者及び直系血族等)が行うことができ、該当発給期日以内に発給申請書を提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7. 제출하신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발급 기관은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提出した写真で本人確認が難しい場合、発給機関は申請人に補完を要求することができます。

8.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경우에는 공문서 위·변조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형법」 제225조).

住民登録証を偽造又は変造する場合は、公文書偽造・変造に該当し、10年以下の懲役刑に処せられます(「刑法」第225条)。

작성 방법 作成方法

1. 앞쪽 중 ‘담당 공무원’ 칸과 ‘증명 가능 서류’ 칸은 비워둔 채로 제출해야 합니다.

表面の「担当公務員」欄と「証明可能書類」欄は空白のまま提出してください。

2.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를 받으려면 반드시 ‘연락처’에 휴대전화 번호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書留郵便」受領を選択した場合にショートメッセージサービス(SMS)を受け取る際は必ず「連絡先」に携帯電話番号を記入してください。

3. ‘통장·이장’ 칸과 ‘가족’ 칸은 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증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합니다)를 제시할 수 없을 때에만 작성하는 칸입니다. ‘가족’ 칸은 17세 이상의 같은 세대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동행한 경우에 동행자와 신청인과의 관계를 작성합니다.

「統長・里長」欄と「家族」欄は申請人が本人であることを確認するために学生証や国家・地方自治体又は公共機関から発給した証明書(写真付のもの)を提示できない場合に作成する欄です。「家族」欄は17歳以上の同世帯世帯員、配偶者、直系血族又は兄弟姉妹が身分証明書を持参して同行する場合に同行者と申請人との関係を作成します。

■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20. 10. 13.>
住民登録法施行令 [別紙第32号書式] <改定 2020. 10. 13.>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서
住民登録証 再発給申請書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裏面の留意事項と作成方法を読んで作成し、[]には該当項目に√印をつけます。 (앞쪽)

접수 번호 受付番号	접수일 受付日	처리 기간: 즉시 処理期間:即時
신청인 申請人	성명(한글) 氏名(ハングル)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주소 住所 (시·도) (시·군·구) (市·道) (市·郡·区)	※ 시·도 및 시·군·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市・道及び市・郡・区まで作成 (詳細住所は作成しなくても構いません)
	연락처 連絡先	
	[] 수수료 면제를 신청함 手数料免除を申請する ※ 수수료 면제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군인,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및 관계 법령에서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한 규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手数料免除対象は「国民基礎生活保障法」による受給者、独立有功者、国家有功者、枯葉剤後遺症患者、参戦有功者、5・18民主有功者、特殊任務遂行者、ひとり親家族保護対象者及び関連法令で手数料を免除する規定がある場合に該当します。	
재발급 사유 再発給 事由	[] 분실 紛失 [] 훼손 毀損 [] 성명 변경 氏名変更	
	[] 주민등록번호 변경 住民登録番号変更	
	[] 주소 변경 칸 부족 住所変更欄不足	
	[] 용모(사진)변경 容貌(写真)変更	
	[] 지문 재등록 指紋再登録	
	[] 미수령으로 회수·파기 未受領による回収・破棄	
	[] 주민등록 말소자의 귀국 住民登録抹消者の帰国	
	[] 재외국민 주민등록 在外国民住民登録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문자통보 서비스 住民登録証 発給事実 SMS通知 サービス	[] 그 밖의 사유 その他の事由	
	본인의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신청되거나,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배송 또는 민원인에게 교부되었을 때 그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통보받는 서비스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本人の住民登録証(再)発給が申請された時、発給された住民登録証が邑・面事務所や洞住民センターに配達された時、又は民願人に交付された時にその事実を携帯電話のショートメッセージサービス(SMS)で通知するサービスは別途申請してください。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住民登録証 発給申請確認書	[] 신청 申請する [] 미신청 申請しない	
주민등록증 수령 방법 住民登録証の受領方法	[] 신청기관 방문 申請機関訪問 [] 주민등록기관 방문 住民登録機関訪問 [] 등기우편 書留郵便	
주민등록증 수령 문자 안내 서비스 住民登録証受領SMS案内サービス	[] 신청 申請する [] 미신청 申請しない	
점자 스티커 点字シール	[] 신청 申請する [] 미신청 申請しない	
등기우편 수령 주소 書留郵便受領住所 ※ 주민등록 주소가 아닌 경우 住民登録住所ではない場合: (우 丁:)	[] 주민등록 주소와 같음 住民登録住所と同じ	
「주민등록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住民登録法」第27条及び第27条の2により住民登録証の再発給を申請します。		
년(年) 월(月) 일(日) 신청인 申請人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관계 공무원 방문 재발급	성명(한글) 氏名(ハングル)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신청인 公務員訪問再発給 申請人	주소 住所 (시·도) (시·군·구) (市·道) (市·郡·区)	연락처 連絡先
------------------------	---	---------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邑・面・洞長 及び出張所長 殿

첨부 서류 添付書類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신청인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3.5cm×4.5cm) 1장 6か月以内に撮影した帽子などをかぶっていない上半身写真(3.5cm×4.5cm) 1枚 2. 종전의 주민등록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従前の住民登録証 但、次の各項目のどれかに該当する場合は添付しません。 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住民登録証を紛失した場合 ※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은 후에 분실했던 주민등록증을 찾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분실했던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住民登録証が再発給された後に紛失した住民登録証を見つけた場合は、遅れることなく邑・面事務所又は洞住民センターに紛失していた住民登録証を返納してください。 나.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永住)하기 위해 귀국한 경우로서 국외로 이주하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国外に移住した人が永住するために帰国した場合で、国外に移住する前に住民登録証を返納した場合 다.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경우로서 국외로 이주하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반납한 경우 在外国民が国内に30日以上居住する目的で帰国した場合で、国外に移住する前に住民登録証を返納した場合 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였으나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해당 행정기관이 파기한 경우 住民登録証を発給したが3年が経過しても受取に來ないため該当行政機関が破棄した場合 마. 습득한 주민등록증의 수령을 안내하였으나 1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아 해당 행정기관이 파기한 경우 拾得した住民登録証の受領を案内したが1年が経過しても受取に來ないため該当行政機関が破棄した場合 3. 관계 공무원에게 중증장애인을 방문하여 재발급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関係公務員に重症障害者を訪問して再発給を申請する場合は次のどれかの資料 가. 발급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発給対象者が重症障害者であることを証明する資料 나. 중증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증명하는 자료 重症障害者ではない人が申請する場合には申請資格を証明する資料	수수료 5,000원 手数料 5,000ウォン
------------------	--	--------------------------------------

(뒤쪽)(Back page)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担当公務員確認事項	전산시스템 電算システム
수급자 정보, 독립유공자 정보, 국가유공자 정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정보, 참전군인 정보, 5·18민주유공자정보, 특수임무수행자 정보,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정보 受給者情報、独立有功者情報、国家有功者情報、枯葉剤後遺症疑症患者情報、参戦軍人情報、5・18民主有功者情報、特殊任務遂行者情報、ひとり親家族保護対象者情報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行政情報共同利用システム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行政情報共同利用等に関する同意	
신청인은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신청과 관련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공무원이 수수료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데 동의합니다. 申請人は住民登録証の再発給申請と関連し、行政情報共同利用システムを利用して担当公務員が手数料免除対象かどうかを確認することに同意します。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担当公務員の確認に同意しない場合は該当情報を確認できる証明資料を申請人が直接提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신청인 申請人	년(年) 월(月) 일(日)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유의사항 留意事項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철회는 신청한 날의 근무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이 끝난 후에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住民登録証再発給申請の撤回は、申請した日の勤務時間内に行ってください。勤務時間終了後は撤回できません。
2. 중증 장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방문 발급 신청은 해당 중증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중증장애인의 세대주, 배우자 및 직계혈족)가 할 수 있습니다.
重症障害者に対する住民登録証訪問発給申請は、該当重症障害者や法定代理人又は保護者(重症障害者の世帯主、配偶者及び直系血族など)が行うことができます。
3.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는 국외이주신고자가 출국 전에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으며,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은 재외국민으로 등록이 완료된 출국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住民登録証発給申請確認書は、国外移住申告者が出国前に在外国民用住民登録証を申請する場合には発給せず、在外国民住民登録証は在外国民として登録が完了した出国翌日から使用することができます。
4.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은 외교부의 해외이주신고를 통보받은 이후에 교부할 수 있습니다.
在外国民用住民登録証は外交部の海外移住申告の通知を受けた後に交付することができます。
5.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1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통보를 신청한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증 신청이 접수되거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이 배송되었을 때,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교부되었을 때 본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그 사실을 통보해 드립니다.
「住民登録法施行規則」第41条の2による住民登録証の発給・再発給通知を申請した場合、本人の住民登録証申請が受付された時、邑・面事務所又は洞住民センターに住民登録証が配送された時、住民登録証が交付された時に携帯電話メッセージでその事実を本人に通知します。
6. 주민등록증 수령 방법
住民登録証の受領方法
 - 가. ‘방문 수령’을 선택한 경우에는 신청 후 3년 내에 주민등록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3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은 주민등록증은 파기됩니다. 발급 신청 기관이 주민등록지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 후 6개월까지는 발급 신청 기관에서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시고, 6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주민등록지인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신청 후 주민등록지가 변경되어 변경된 주민등록지에서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주민등록 기관에서 주민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訪問受領」を選択した場合は、申請後3年以内に住民登録証を受け取りに来てください。3年が経過しても受取に来ない住民登録証は破棄されます。発給申請機関が住民登録地ではない場合は、申請後6か月までは発給申請機関で住民登録証を受け取り、6か月が経過した後からは住民登録地の邑・面事務所又は洞住民センターで住民登録証を受け取ってください。また、住民登録証申請後に住民登録地が変更され、変更された住民登録地での受け取りを希望する場合は変更された住民登録機関で住民登録証を受領することができます。
 - 나. ‘등기우편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신청할 때 등기우편료를 납부해야 하며, 주민등록증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을 때 단문 메시지(SMS) 안내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휴대전화 번호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書留郵便」受領を希望する人は、申請時に書留郵便料を納付しなければならず、住民登録証を書留郵便で発送した際にショートメッセージ(SMS)案内を受け取りたい場合は、必ず携帯電話番号を記入してください。
 - 다. ‘등기우편 수령’을 선택한 경우, ‘등기우편 수령 주소’ 칸에 작성된 주소로 발송한 주민등록증을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수령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발급 신청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 드리며, 최초 발송일부터 5일 안에 3회 발송했음에도 신청인의 사정으로 주민등록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직접 발급 신청 기관을 방문해 찾아가셔야 합니다.
「書留郵便受領」を選択した場合、「書留郵便受領住所」欄に作成された住所に発送した住民登録証を申請人ではない他人が代理受領して発生した事故については、発給申請機関は責任を負いません。最初の発送日から5日以内に3回発送をしても申請人の事情で住民登録証を受け取れなかった場合は、申請人が発給申請機関に直接訪問して住民登録証を受け取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7. 수수료를 내는 경우
手数料を払う場合
 - 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자연적인 훼손은 제외)해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住民登録証の紛失又は毀損(自然的な毀損は除く)により再発給を申請する場合
 - 나. 외과적 시술(재해·재난으로 인한 경우 제외)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外科的施術(災害・災難による場合を除く)等により容貌が変わり、再発給を申請する場合
 - 다. 발급 및 습득된 주민등록증의 미수령으로 인한 파기로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発給及び拾得した住民登録証の未受領による破棄によって再発給を申請する場合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신고 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民願24(www.minwon.go.kr)でも届出又は申請できます。

주민등록증 住民登録証
[] 분실신고서 紛失届
[] 분실신고 철회 신청서 紛失届撤回申請書

접수번호 受付番号	접수일 受付日
--------------	------------

분실자 紛失者	성명(한글) 氏名(ハングル)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주소 住所	연락처 連絡先

신고(철회) 내용 届出(撤回) 内容	분실일 紛失日 분실(철회) 사유 紛失(撤回)事由
------------------------------	-----------------------------------

주민등록증의 습득(담당 공무원 작성 칸) 住民登録証の拾得(担当公務員作成欄)
년 월 일

「주민등록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주민등록증의 분실신고 [] 분실신고 철회를 신청합니다.

「住民登録法」第27条第1項及び同法施行令第42条第1項により上記の通り[]住民登録証の紛失届 []紛失届撤回を申請します。

년(年) 월(月) 일(日)

※ 분실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 ‘신고(철회)인’ 칸은 성명과 확인(서명 또는 인)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紛失者が直接届出する場合は、「届出(撤回)人」欄は氏名と確認(署名又は印)のみでも構いません。

신고(철회)인 届出(撤回)人	성명 氏名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연락처 連絡先	분실자와의 관계 紛失者との関係

첨부 서류 添付書類	없음 なし	수수료 手数料
		없음 なし

유의사항 留意事項

1. 이 신고서는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하려고 할 때만 사용하시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この届出書は住民登録証紛失を申告する場合に使用し、住民登録証の再発給を受ける場合は「住民登録証再発給申請書」を作成してください。
2. 분실신고를 하신 분은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자동응답시스템(ARS 국번 없이 ‘1382’)을 이용하여 신고 사항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紛失届を提出した方は、住民登録証真偽確認自動応答システム(ARS局番なし「1382」)を利用して届出事項の処理有無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ます。
3.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되찾았을 때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철회 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紛失した住民登録証を見つけた場合は、邑・面事務所又は洞住民センターに撤回申請をしてください。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3. 20.>
住民登録法施行規則 [別紙第7号書式] <改定 2018. 3. 20.>

본인인 경우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本人の場合は政府24(www.gov.kr)でも申請できます。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住民登録表閲覧又は謄・抄本交付申請書

※ 뒤쪽의 유의 사항을 읽고 작성하기 바라며, 해당하는 내용 앞의 []에 √ 표를 합니다.

裏面の留意事項を読んで作成し、[]には該当項目に√印をつけます

(앞쪽)

신청인 申請人 (개인) (個人)	성명 氏名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주소 住所	(시·도) (시·군·구) (市・道) (市・郡・区)	※ 시·도, 시·군·구까지만 작성 (상세 주소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市・道及び市・郡・区まで作成 (詳細住所は作成しなくても構いません)	
	대상자와의 관계 対象者との関係	연락처 連絡先		
	[] 수수료 면제 대상에 해당하여 수수료 면제를 신청함 手数料免除対象に該当し、手数料免除を申請する			
신청인 申請人 (법인) (法人)	기관명 機関名	사업자등록번호 事業者登録番号		
	대표자 代表者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연락처 連絡先	
	소재지 所在地			
	방문자 성명 訪問者氏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연락처 連絡先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대상자 閲覧又は 謄・抄本の 交付対象者	※ 신청인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申請人が本人の住民登録表を閲覧、又は謄・抄本交付を申請する場合は記入しません。			
	성명 氏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신청 내용 申請内容	열람 閲覧	[] 등본 사항 謄本事項 [] 초본 사항 抄本事項		
	※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의 등·초본 사항 중 필요한 사항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個人情報保護のため以下の謄・抄本事項から必要事項を選択して申請することができます。			
	등본 교부 [] 통	1.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過去の住所変動事項 [] 전체 포함 全体を含む [] 최근 5년 포함 最近5年を含む [] 미포함 含まない		
		2. 세대 구성 사유 世帯構成事由	[] 포함 含む [] 미포함 含まない	
		3. 세대 구성 일자 世帯構成日	[] 포함 含む [] 미포함 含まない	
		4. 발생일 発生日 / 신고일 届出日	[] 포함 含む [] 미포함 含まない	
		5. 변동 사유 変動事由 [] 포함 含む (□세대 世帯 □세대원 世帯員)	[] 미포함 含まない	
		6. 교부 대상자 외 세대주·세대원·외국인등의 이름 交付対象者以外の世帯主・世帯員・外国人等の名前	[] 포함 含む [] 미포함 含まない	
		7.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住民登録番号の下7桁 [] 포함 含む (□본인 本人 □세대원 世帯員)	[] 미포함 含まない	
		8.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世帯員の世帯主との関係	[] 포함 含む [] 미포함 含まない	
		9. 동거인 同居人	[] 포함 含む [] 미포함 含まない	
	초본 교부 [] 통 抄本交付 [] 부	1. 개인 인적 사항 변경 내용 個人の人的事項変更内容	[] 포함 含む [] 미포함 含まない	
		2.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過去の住所変動事項 [] 전체 포함 全体を含む [] 최근 5년 포함 最近5年を含む [] 미포함 含まない		
		3.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過去の住所変動事項中の世帯主の氏名と世帯主との関係	[] 포함 含む [] 미포함 含まない	
		4.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住民登録番号下7桁	[] 포함 含む [] 미포함 含まない	

	5. 발생일 発生日 / 신고일 届出日 []포함 含む []미포함 含まない
	6. 변동 사유 変動事由 []포함 含む []미포함 含まない
	7. 병역 사항 兵役事項 []포함 含む (□기본 基本(입영/전역일자 入隊/除隊日), □전체 全体) []미포함 含まない
	8. 국내거소신고번호 国内居所申告番号 / 외국인등록번호 外国人登録番号 []포함 含む []미포함 含まない
용도 및 목적 用途及び目的	
증명 자료 証明資料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라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신청합니다.
「住民登録法施行令」第47条及び第48条により住民登録表の閲覧又は謄・抄本の交付を申請します。

년(年) 월(月) 일(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 귀하
市長・郡守・区長 又は 邑・面・洞長 及び出張所長 殿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担当公務員 確認事項	신청인이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수수료 면제 대상 인지 여부 申請人が「住民登録法施行規則」第18条第1項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手数料免除対象になるか確認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行政情報共同利用同意書

본인은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수수료 면제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本人は住民登録表の閲覧又は謄・抄本の交付手数料免除と関連し、担当公務員が「電子政府法」第36条第1項による行政情報の共同利用を通して上記の担当公務員確認事項を確認することに同意します。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担当公務員の確認に同意しない場合は申請人が関連書類を提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신청인 申請人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유의 사항 留意事項

-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 방문자인 경우에는 방문자의 신분증명서와 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住民登録表の閲覧または謄・抄本交付申請人は住民登録証等の身分証明書を提示しなければならず、申請人が「出入国管理法」第31条により登録した外国人又は「在外同胞の出入国と法的地位に関する法律」第6条により国内居所申告をした外国国籍同胞の場合は、外国人登録証または国内居所申告証を提示してください。また、法人訪問者の場合は訪問者の身分証明書と社員証、または在職証明書を提示してください。
- 본인・세대원이 본인・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만을 제시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 이미지 서명 입력기”에 자필 한글 성명으로 서명하여야 열람 또는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本人・世帯員が本人・世帯員の住民登録表を閲覧または謄・抄本交付を住民登録証等の身分証明書の提示のみで申請する場合は、「電子イメージ署名入力機」に自筆のハングル氏名で署名すれば閲覧又は交付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
- 신청인은 “신청 내용” 칸의 각 항목에서 “포함”, “미포함”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申請人は「委任内容」(申請内容)欄の各項目から「含む」「含まない」を選択して申請することができます。
- 상속 등기 대위 신청을 위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相続登記代位申請のために債務者の住民登録抄本交付を申請する場合は、過去の住所変動事項を含んで閲覧又は交付を受けることができます。

5. 초본 교부를 신청할 때 “3.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항목은 대상자가 성년인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직계존속,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을 선택할 수 있고, “7. 병역사항” 항목은 본인이나 세대원(그 위임을 받은 사람 포함),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抄本交付を申請する際に「3. 過去の住所変動事項」の中で世帯主の氏名と世帯主との関係項目は、対象者が成年の場合は本人又は本人の委任を受けた人、対象者が未成年者の場合は世帯主又は直系尊属、国家や地方自治体が公務上必要な場合のみ「含む」を選択でき、「7. 兵役事項」項目は本人や世帯員(その委任を受けた人を含む)、「住民登録法」第29条第2項第5号による家族、国家や地方自治団体が公務上必要な場合のみ「含む」を選択することができます。

6.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닌 사람이 교부받는 등·초본에는 작성하신 용도 및 목적이 표시되니 반드시 “용도 및 목적” 칸을 작성하여야 하며, 등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本人や世帯員ではない人が交付される謄・抄本には作成した用途及び目的が表示されるため、必ず「用途及び目的」欄を作成してください。謄本を申請する場合は別途の証明資料を提出してください。

7. 「주민등록법」 제37조제5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住民登録法」第37条第5号により虚偽やその他の不正な方法で他人の住民登録表を閲覧又は謄・抄本の交付を受けた場合は3年以下の懲役刑もしくは3千万ウォン以下の罰金刑に処せられます。

8. 한 신청자가 하나의 증명 자료를 가지고 같은 목적으로 여러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을 함께 사용하여 일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 사이에는 신청인의 간인(서명 포함)이 있어야 합니다.

一人の申請者が一つの証明資料をもって同じ目的で複数の人の住民登録表を閲覧又は謄・抄本の交付を申請する場合は、別紙第7号書式と別紙第8号書式を使って一括申請することができます。その場合、別紙第7号書式と別紙第8号書式には申請人の割印(署名を含む)が必要です。

9. 신청인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칸에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申請人が「出入国管理法」第31条により登録した外国人又は「在外同胞の出入国及び法的地位に関する法律」第6条により国内居所申告をした外国国籍同胞の場合は、住民登録番号欄に外国人登録番号又は国内居所申告番号を記入してください。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3서식] <개정 2020. 2. 18.>
印鑑証明法施行令 [別紙第15号の3書式] <改正 2020. 2. 18.>

[] 인감보호 신청 印鑑保護申請
[] 인감보호 해지신청 印鑑保護解除申請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裏面の留意事項を読んで作成し、[]には該当項目に √印をつけます。

접수번호 受付番号	접수일 受付日	처리기간 処理期間	즉시 即時
신청인 申請人	성명 氏名 (한자 漢字)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	국적 国籍
	주소 住所	우무인 右拇印	
	인감보호(보호해지) 신청내용 印鑑保護(保護解除)申請内容		
미성년자의 법정 정대리인, 한정 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 등의 未成年者の法定 代理人、限定後 見人及び成年後 見人の同意	성명 氏名	신청인과의 관계 申請人との関係	인감 [㉠] 또는 서명 印鑑 [㉡] または署名
	생년월일 生年月日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첨부 署名時、本人署名事 実確認書を添付
	주소 住所		

재외공관(영사관) · 수감기관(교도관) · 관계공무원 확인
在外公館(領事館) · 収監機関(刑務官) · 関係公務員 確認

위 신청인의 上記申請人の	[] 인감보호 신청 印鑑保護申請	사실을 확인합니다. 事実を確認します。
	[] 인감보호 해지신청 印鑑保護解除申請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 한정후견인 · 성년후견인 동의 未成年者の法定代理人、限定後見人・成年後見人の同意	
년(年) 월(月) 일(日)		
[] 재외공관(영사관) 在外公館(領事館)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 수감기관(교도관) 収監機関(刑務官)	_____(직인 職印), _____(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 읍면동 관계공무원 邑面洞関係公務員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인감보호 또는 인감보호 해지를 신청합니다.
「印鑑証明法施行令」第17条の2により上記の通りに印鑑保護又は印鑑保護解除を申請し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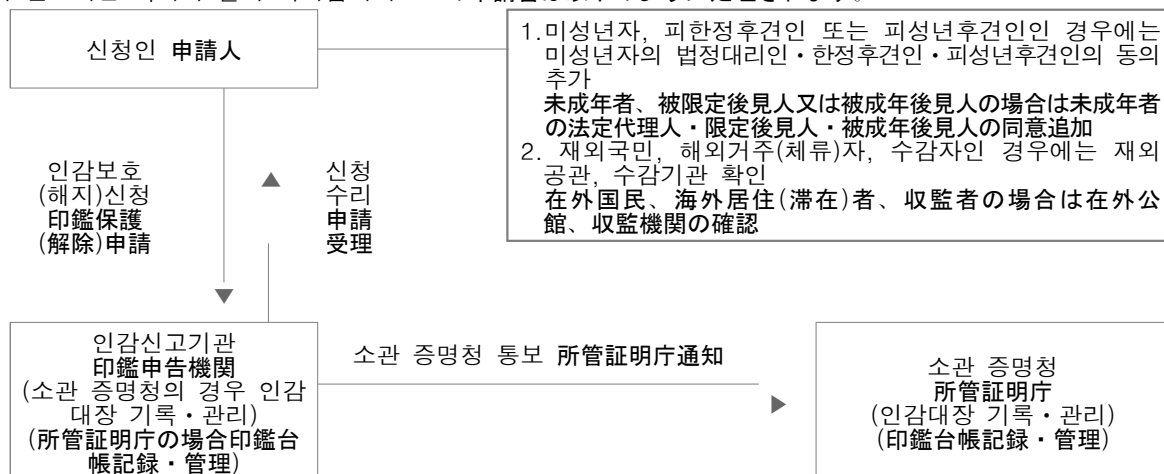
년(年) 월(月) 일(日)	
신청인 申請人: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대리인 代理人: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주소 住所:	
〇〇시·군·구·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〇〇市・郡・区・邑・面・洞長 及び出張所長	귀하 殿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留意事項及び作成方法

-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또는 수감자의 인감보호(보호해지)를 신청하기 위하여 증명청을 방문하는 대리인은 반드시 주민등록증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在外国民、海外居住(滞在)者又は収監者の印鑑保護(保護解除)を申請するために証明庁を訪問する代理人は必ず住民登録証を提示してください。
- 주민등록번호란에는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住民登録番号欄に未住民登録在外国民は旅券番号を、外国人は外国人登録番号を、国内居所申告者は国内居所申告番号を記入します。
- 인감보호(보호해지) 신청은 본인의 인감을 보호(보호해지)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의 발급대상을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제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하는 내용을 아래 예시와 같이 인감보호(보호해지) 신청내용란에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印鑑保護(保護解除)申請は本人の印鑑を保護(保護解除)するために印鑑証明の発給対象を本人又は本人が指定する人に制限する制度です。希望する内容を以下の例のように印鑑保護(保護解除)申請内容欄に書いて提出してください。
[기재 예시 記載例]
① 본인 외 발급 금지
本人以外発給禁止
② 본인, 처(○○○: 주민등록번호) 외 발급 금지
本人、妻(○○○: 住民登録番号)以外発給禁止
③ 본인, 처(○○○: 주민등록번호), 모(○○○: 주민등록번호) 외 발급 금지
本人、妻(○○○: 住民登録番号)、母(○○○: 住民登録番号)以外発給禁止
④ 주소지 시·군·구(읍·면·동)에서만 발급하고 그 외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는 발급 금지
住所地 市・郡・区(邑・面・洞)でのみ発給し、それ以外の印鑑証明書発給機関では発給禁止
⑤ 그 밖에 인감보호나 인감의 보호해지에 필요한 내용
その他に印鑑保護や印鑑保護解除に必要な内容
- 엄지손가락지문을 날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손가락지문을 날인하며, 지문은 선명하고 깨끗하게 날인해야 합니다.
親指の指紋を捺印するのが難しい場合は、他の指の指紋を捺印し、指紋は鮮明に押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수감자가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외공관 또는 수감기관 해당사항란에 [√]표시를 하고,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在外国民、海外居住(滞在)者、収監者が委任して申請する場合は、在外公館又は収監機関の該当項目欄に[√]印をつけ、次の区分によって該当機関の確認を受けて提出してください。
가.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재외공관(영사관)
在外国民、海外居住(滞在)者: 在外公館(領事館)
나. 수감자: 수감기관(교도관)
収監者: 収監機関(刑務官)
- 인감의 보호신청이나 보호해지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사항란에 [√]표시를 한 후 제출합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성년후견인 동의란에 [√]표시를 함께 해야 합니다.
印鑑の保護申請又は保護解除申請をする場合は、該当項目欄に[√]印をしてから提出します。この場合、未成年者、被限定後見人又は被成年後見人の場合は未成年者の法定代理人・限定後見人・被成年後見人の同意追加
在外国民、海外居住(滞在)者、収監者の場合は在外公館、収監機関の確認
- 읍면동 관계공무원 확인란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邑面洞関係公務員確認欄は担当公務員が直接訪問した場合のみ記入します。

처리절차 処理手順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この申請書は以下のように処理されます。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0. 2. 18.>
印鑑証明法施行令 [別紙第9号書式] <改正 2020. 2. 18.>

인감(변경)신고서(서면신고용)
印鑑(変更)届(書面申告用)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裏面の留意事項を読んで作成し、[]には該当項目に √印をつけます。

(앞쪽)

접수번호 受付番号	접수일 受付日	처리기간 処理期間	즉시 即時	
인감 신고인 印鑑 届出人	성명 氏名 (한자 漢字)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국적(등록기준지) 国籍(登録基準地)	
	주소 住所		신고 인감 届出印鑑	
	서면신고 사유 書面申告事由		보존용 保存用	인감지 붙임 印鑑紙 貼付
	증명자료(첨부) 証明資料(添付)			
보증인 保証人	성명 氏名	인감 ① 또는 서명 印鑑 ② 又は署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신고인과의 관계 届出人との関係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署名時、本人署名事実確認書を添付		
	주소 住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 등의 未成年者の法定代理人、 限定後見人及び 成年後見人の同意	성명 氏名	신고인과의 관계 申請人との関係	인감 ① 또는 서명 印鑑 ② 又は署名	
	생년월일 生年月日			
	주소 住所	※서명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署名時、本人署名事実確認書を添付		

위 신고인의 인감 [] 서면신고(변경) 書面申告(変更)
上記申請人の印鑑の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성년후견인 등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未成年者の法定代理人・限定後見人・成年後見人の同意 事実を確認します。

[] 재외공관(영사관) 在外公館(領事館)
[] 수감기관(교도관) 収監機関(刑務官)
년(年) 월(月) 일(日)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직인 職印)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인감증명법」 제3조·제7조·제13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보증인(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또는 성년후견인)과 연서하여 서면신고합니다. 「印鑑証明法」第3条・第7条・第13条及び「印鑑証明法施行令」第8条第2項から第4項までの規定により上記の通りに保証人(未成年者の法定代理人、限定後見人又は成年後見人)と連署して書面申告します。	수수료 手数料	
	신고 届出	없음 なし
	변경 変更	600원 600 ウォン
년(年) 월(月) 일(日)		

인감신고인 印鑑届出人:
대리인 代理人: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주소 住所: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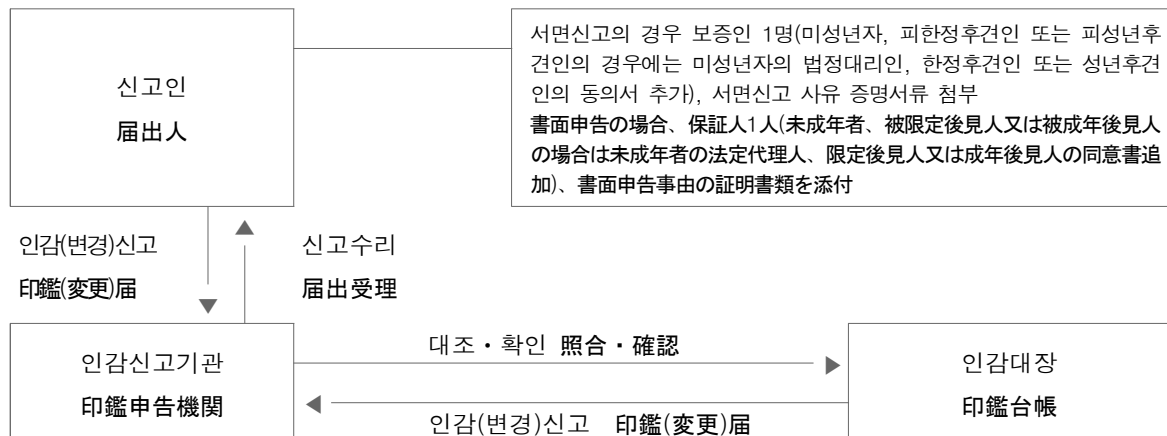
○○ 시·구·읍·면·동 장 또는 출장소 장 귀하
○○ 市・郡・邑・面・洞 長 及び出張所 長 殿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留意事項及び作成方法

- 이 서식은 인감을 처음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한 사람이 증명청을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 본인이 증명청을 방문하지 않고 서면으로 인감신고 또는 인감변경신고를 할 때 사용합니다.
この書式は印鑑を初めて届出する場合、又はすでに届出した人が証明庁に直接訪問できない場合に本人が証明庁を訪問せずに書面で印鑑届又は印鑑変更届をする際に使用します。
- 보증인은 인감이 신고된 성년자여야 하며, 신고인의 진의(眞意)를 확인하고 보증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날인한 인감은 반드시 신고된 것이어야 하며, 증명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인감의 확인이 어려울 경우 보증인 인감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保証人は印鑑が届出された成年でなければならず、届出人の真意を確認して保証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保証人が捺印した印鑑は必ず届出されたものでなければならず、証明庁は電算情報処理組織を通して印鑑の確認が難しい場合は、保証人の印鑑の提出を要求することができます。
- 서면신고를 위하여 증명청을 방문하는 대리인은 보증인과 다른 사람이어야 하며,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書面申告のために証明庁を訪問する代理人は保証人とは別の人でなければならず、代理人本人の身分証を提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 인감신고의 경우는 신고 인감의 보존용란에 인감을 찍고, "인감지 1장"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감도장을 동봉한 때에는 인감지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印鑑届の場合は届出印鑑の保存用欄に印鑑を押し、「印鑑紙1枚」を添付してください。但、印鑑を同封した場合には印鑑紙の添付を省略することができます。
- 관계 공무원은 인감대장의 인감란에 인감지를 첨부한 후 인감대장과 인감지가 겹치는 부분에 직인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합니다.
関係公務員は印鑑台帳の印鑑欄に印鑑紙を添付した後、印鑑台帳と印鑑紙が重なる部分に職印で割印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신고인의 국적란에 등록기준지를 적습니다.
未住民登録在外国民の場合は届出人の国籍欄に登録基準地を記入します。
- 서면신고 사유란에는 신고인이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적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출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그 사유 확인일부터 3개월(재외공관의 확인은 확인일부터 6개월)까지입니다.
書面申告事由欄には届出人が訪問できない事由を書き、その事実を証明できる書類を提出してください。この場合、提出する書類の有効期間は、その事由確認日から3か月(在外公館の確認は確認日から6か月)です。
- 주민등록번호란에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의 여백에 ()를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괄호 안에 함께 적습니다.
住民登録番号欄には未住民登録在外国民は旅券番号を、外国人は外国人登録番号を、国内居所申告者は国内居所申告番号を書き、住民登録番号がある場合はその下の余白に()をして住民登録番号を括弧内に記入します。
- 서면신고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성년후견인 동의에 대하여 해당사항란에 [√]표시를 합니다.
書面申告又は未成年者の法定代理人、限定後見人・成年後見人の同意について該当項目欄に[√]印をつけます。
-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수감자가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在外国民、海外居住(滞在)者、収監者が委任して届出する場合は、次の区分によって該当機関の確認を受けて提出してください。この場合、在外国民は海外に滞在する場合に限ります。
가.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재외공관(영사관)
在外国民、海外居住(滞在)者: 在外公館(領事館)
나. 수감자: 수감기관(교도관)
収監者: 収監機関(刑務官)

처리 절차 処理手順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この届出書は以下のように処理されます。



[]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印鑑証明委任状又は法定代理人同意書

[] 재외공관(영사관) 및 수감기관(교도관) 확인서 在外公館(領事館) 及び収監機関(刑務官) 確認書

[]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 税務署(税務署長) 確認書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자필로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위임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시점부터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 신청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裏面の留意事項を読んで自筆で作成し、[]には該当項目に √印をつけます。

委任者が死亡した場合、死亡時点から印鑑証明を代理発給申請すると捜査機関に告発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 印鑑証明書発給委任状】

위임자 委任者	성명 氏名	(서명 또는 날인) (署名又は捺印)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국적 国籍		주소 住所			
	신분증 종류 身分証の種類		사용용도 使用用途	발급통수 発給部数		
대리인 代理人	성명 氏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신분증 종류 身分証の種類	
	주소 住所				관계 関係	
본인은 (사유:) 인감증명서 발급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本人は(事由:)の印鑑証明書発給を上記の代理人に委任します。 년(年) 월(月) 일(日)						

【법정대리인 동의서 法定代理人同意書】

법정 대리인 法廷 代理人	성명 氏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주소 住所					
	관계 関係		발급통수 発給部数		인감 印鑑	인
(성명:) 에 대한 인감증명서 발급을 동의합니다. (氏名:) に対する印鑑証明書の発給に同意します。 년(年) 월(月) 일(日)						

위의 위임 사실을 확인합니다.
上記の委任(同意)事実を確認します。

년(年) 월(月) 일(日)

[] 재외공관 (영사관) 在外公館(領事館) (서명 또는 인署名又は印)
[] 수감기관 (교도관) 収監機関(刑務官) (서명 또는 인署名又は印)

세무서장 확인 税務署長確認	부동산 종류 不動産の種類	
	부동산 소재지 不動産の所在地	

위의 사항에 대하여 확인합니다.
上記の事項について確認します。

년(年) 월(月) 일(日)

세무서장 税務署長

인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留意事項及び作成方法

1.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에는 위임한 연월일을 적습니다.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입니다.
委任状又は法定代理人の同意書には委任した年月日を記入します。委任状の有効期間は委任又は同意日から6か月です。
2. 인감증명서를 2부 이상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위임장 또는 동의서의 발급 통수란에 필요한 수량을 적어야 하며,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1부가 발급됩니다.
2部以上の印鑑証明書の発給を受ける場合は、委任状又は同意書の発給部数欄に必要な部数を記入し、記入されていない場合は1部発給されます。
3. 위임장의 사용용도란은 인감증명을 제출할 곳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예시: 부동산 매매용, 근저당 설정용, 자동차 매매용 등)을 적고, 서명은 본인의 성명을 적어야 합니다.
※ 용도란에 “부동산 매매에 관한 모든 권한 위임” 등과 같은 내용으로 적지 않아야 합니다.
委任状の使用用途欄は印鑑証明書を提出する場所で必要とする内容(例：不動産売買用、根抵当設定用、自動車売買用等)を書き、署名は本人の氏名を書いてください。
※ 用途欄に「不動産売買に関する全権限を委任」等の内容では書かないでください。
4.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인감증명을 위임받아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未成年者又は限定治産者の印鑑証明書を委任されて発給される場合は、委任状と法定代理人の同意書をすべて作成してください。
5. 주민등록 말소자 또는 거주불명 등록자에게는 위임을 할 수 없으며, 위임장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수임자 및 위임자가 제출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는 제외합니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
住民登録抹消者又は居住不明登録者には委任することができず、委任状の記載内容を確認するために委任者の身分証を持参してください。代理人及び委任者が提出する身分証は住民登録証、自動車運転免許証、旅券、障害者登録証[(福祉カード)、住民登録番号と住所が記載されていない障害者登録証・福祉カードは除く]の一つを選択して提出します。
6. 주민등록번호란에 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住民登録番号欄には未住民登録在外国民は旅券番号を、国内居所申告者は国内居所申告番号を、外国人は外国人登録番号を記入します。
7.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복역자가 인감증명 발급을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재외국민은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재외국민의 부동산 권리 이전용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적어 소관 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在外国民、海外居住(滞在)者、服役者が印鑑証明書の発給を委任して申請する場合は、次の区分によって該当機関の確認を受けて提出してください。この場合、在外国民は海外に滞在する場合に限定し、在外国民の不動産権利移転用の場合は、不動産の種類と所在地を書いて所管証明庁の所在地又は不動産所在地を管轄する税務署長の確認を受けてください。
가.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재외공관(영사관)
在外国民、海外居住(滞在)者：在外公館(領事館)
나. 복역자: 수감기관(교도관)
服役者：収監機関(刑務官)
8. 다른 사람의 도장이나 서명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예: 다른 사람이나 사망한 사람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 자 등)는 「형법」 제231조부터 제24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他人の印鑑や署名を偽造又は不正に使用した者(例：他人や死亡した人の委任状を虚偽に作成して印鑑証明書を申請又は発給を受けた者等)は「刑法」第231条から第240条までの規定に基づいて処罰されます。

사실증명 발급·열람 신청서 事実証明発給・閲覧申請書

※ 본인이 직접 증명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신청 시에는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本人が直接証明発給を申請する場合は政府24(www.gov.kr)で無料で行うことができ、
訪問申請の場合は、申請書を作成せず身分証のみの提示でも構いません。

※ 뒤쪽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기 바랍니다. 裏面の留意事項を参考にして作成してください。

접수번호 受付番号	접수일 受付日	발급일 発給日	처리기간 処理期間	즉시 即時
발급대상자 (위임한 사람) 発給対象者 (委任する人)	성명 氏名	연락처 連絡先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外国人登録番号)			
증명종류 証明種類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出入国に関する事実証明 ()통(部)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外国人登録事実証明 ()통(部) ☐ 외국인등록 열람 外国人登録閲覧 ()건(件)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영문 성명 병기 신청 여부 (국민만 해당) 出入国に関する事実証明の英文氏名の併記申請(国民のみ該当)		☐ 포함 함む ☐ 미포함 含まない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경우, 과거 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성명, 체류지 및 체류자격 변경 이력 포함 여부 外国人登録事実証明の場合、過去の登録番号(外国人登録・国内居所申告番号)、氏名、在留地及び在留資格変更履歴の記載		- 과거 등록번호 過去の登録番号 ☐ 포함 함む ☐ 미포함 含まない - 과거 성명 변경 사항 過去の氏名変更事項 ☐ 포함 함む ☐ 미포함 含まない - 과거 체류지 변동 사항 過去の在留地変動事項 ☐ 포함 함む ☐ 미포함 含まない - 과거 체류자격 변동 사항 在留資格変更事項 ☐ 포함 함む ☐ 미포함 含まない		
출입국 조회기간 出入国照会期間 . . . 부터(から) . . . 까지(まで)				
용도 (用途)				
신청인 (위임받은 사람) 申請人 (委任される人)	성명 氏名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住民登録番号(外国人登録番号・国内居所申告番号)		
	연락처 連絡先	발급대상자와의 관계 発給対象者との関係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합니다.
「出入国管理法」第88条及び同法施行規則第75条により上記の通りに事実証明の発給・閲覧を申請します。

년(年) 월(月) 일(日)

신청인 (申請人)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의 장 / 재외공관장 귀하
○○出入国・外国人庁(事務所・出張所)長 / ○○ 市長・郡守・区長又は邑・面・洞の長 / 在外公館長 殿

위임장委任状

위 발급대상자(위임한 사람)는 위와 같은 사실증명의 발급·열람 신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위 신청인(위임받은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上記の発給対象者(委任する人)は上記の事実証明の発給・閲覧申請及び受領に関する事項を上記の申請人(委任される人)に委任します。

년(年) 월(月) 일(日)

발급·열람 대상자(위임한 사람)
発給・閲覧対象者(委任する人)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유의사항 留意事項

1.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점검표(V)'로 표시합니다.

灰色欄には記入せず、[]には該当項目に V 印をつけてください。

2. 법인 신청인의 경우 앞쪽 신청인 성명란에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란에 법인 등록번호, 전화번호란에 연락가능한 담당자 및 전화번호를 적기 바랍니다.

法人申請人の場合、表面の申請人氏名欄に法人名および代表者氏名、住民登録番号欄に法人登録番号、電話番号欄に連絡可能な担当者及び電話番号を記入してください。

3. 사실증명의 발급 신청 및 외국인등록 열람은 본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그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事実証明の発給申請及び外国人登録の閲覧申請は、本人やその法定代理人又はその人から委任された人に限ります。

4. 다음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다음의 사람이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의 발급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下記の場合は「出入国管理法施行規則」第75条第3項及び第4項により、次の人が出入国に関する事実証明の発給や外国人登録事実証明の発給(閲覧)を申請できます。

-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명백하게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行方不明、死亡等により本人又は法定代理人が意思表示できない状態、もしくは明らかに本人の利益のために使用されると認められる場合

-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本人の配偶者、本人の直系尊・卑属又は兄弟・姉妹

-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本人の配偶者の直系尊・卑属又は兄弟・姉妹(本人の配偶者が死亡した場合)

- 본인인 외국인이 완전 출국한 경우: 본인인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또는 그 대리인
本人である外国人が完全出国した場合: 本人である外国人を雇用した者又はその代理人

-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재판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연체채권 회수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과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경우(기한 경과나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한정하며, 채무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려는 채권자
債権・債務関係に関する裁判で勝訴判決が確定した場合、「住民登録法施行令」別表2第3号各号のどれかに該当する金融会社等が延滞債権回収のために必要とする場合、該当外国人と債権・債務関係にある場合(期限経過や期限の利益喪失等により返済期が到来した場合に限定し、債務金額が100万ウォン以下の場合は除く): 外国人登録事実証明を発給もしくは閲覧しようとする債権者

※ 채권·채무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차용증, 어음 등은 송금 영수증, 공증, 확정일자 등의 공적 증거를 담보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합니다.

債権・債務関係を立証できる契約書、借用証、手形等は、送金領収書、公証、確定日等の公的証拠を保證できる書類と一緒に添付してください。

-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その他、法務部長官が公益上必要と認める人

5.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사본)을 첨부하고 신청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委任を受ける場合は、委任状と委任した人の身分証(写し)を添付し、申請人の身分証を提示してください。

※ 다른 사람의 서명 또는 인장의 도용 등으로 허위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증명서를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他人の署名又は印章の盗用により虚偽の委任状を作成して証明書を申請又は受領した場合、関連法律に基づいて処罰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

6. 위임은 작성한 날부터 6개월까지만 유효합니다.

委任は作成日から6か月有効です。

7. 국민은 1961.1.1.부터, 외국인은 1979.1.1.부터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 가능합니다.

国民は 1961. 1. 1. から、外国人は 1979. 1. 1. から出入国に関する事実証明が可能です。

통합신청서(신고서) 通合申請書(申告書)

※ 신청서는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申請書は韓国語又は英語で記載してください。)

□ 신청/신고 선택 申請/申告の種類

☐ 외국인등록 外国人登録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희망 자격 :) 在留資格外活動許可 (希望の在留資格 :)	寫 真 여권용 사진(3.5cm × 4.5cm) * 촬영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함 6ヶ月以内に撮影されたもの * 외국인 등록 및 등록증 재발급 시에만 사진 부착 外国人登録/再発行のみ写真貼付
☐ 등록증재발급 登録証再発行	☐ 근무처 변경·추가허가 / 신고 勤務先変更・追加許可 / 届	
☐ 체류기간 연장허가 在留期間更新許可	☐ 재입국허가(단수, 복수) 再入国許可(単数、複数)	
☐ 체류자격 변경허가 (희망 자격 :) 在留資格変更許可 (希望の在留資格 :)	☐ 체류지 변경신고 在留地変更届	
☐ 체류자격 부여 (희망 자격 :) 在留資格付与 (希望の在留資格 :)	☐ 등록사항 변경신고 登録事項変更届	

성명 姓名	성 姓	명 名	漢字姓名
생년월일 生年月日	년 年	월 月	일 日
		성 別 性 別	☐ 남 男 ☐ 여 女
외국인등록번호 外国人登録番号			국적 国籍
여권번호 旅券番号		여권발급일자 旅券発行日	여권유효기간 旅券有効期限
대한민국 내 주소 韓国内の住所			
전화번호 電話番号	휴대전화번호 携帯電話番号		
본국 주소 本国の住所			전화번호 電話番号
재학 여부 (在学中の学校)	미취학], 취], 중], 고] 未就学], 小学校], 中学校], 高校]	학교 이름 学校名	전화번호, 電話番号
	학교 종류 学校の分類	교육청 인가[], 教育庁認可[],	교육청 비인가, 대안학교[] 教育庁無認可[]
근무처 勤務先	원 근무처 以前の勤務先	사업자등록번호 事業者登録番号	전화번호 電話番号
	예정 근무처 予定の勤務先	사업자등록번호 事業者登録番号	전화번호 電話番号
연 소득금액 年間の所得金額	만원(万ウオン)		직업 職業
재입국신청기간 再入国申請期間	전자우편 電子メール		
반환용 계좌번호(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신청 시에만 기재) 払戻用の口座番号 (外国人登録及び外国人登録証再発行の時のみ記載)			
신청일 申請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申請人の署名又は捺印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申請人提出書類 (担当公務員の確認事項)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2의 체류자격별·신청구분별 첨부서류 「出入国管理法の施行規則」[別表5の2]の在留資格別・申請区分別の添付書類参考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行政情報の共同利用への同意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本人は、この件の業務処理に関連して担当公務員が「電子政府法」第36条による行政情報の共同利用を通して担当公務員が確認事項を確認することに同意します。 * 同意しない場合には、関連書類を申請人本人が提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신청인 申請人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捺印	신청인의 배우자 申請人の配偶者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捺印	신청인의 부 또는 모 申請人の父又は母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捺印
------------	-------------------	---------------------	-------------------	-------------------------	-------------------

공 용 란 官用欄					
기본 사항	최초입국일		체류자격		체류기간
접수 사항	접수일자		접수번호		
허가(신고) 사항	허가(신고) 일자		허가번호		체류자격 체류기간
결 재	담 당			청장·소장 가 / 부	

수입인지는 뒷면에 첨부 収入印紙を裏側に貼付/수수료면제 手数料免除[] (면제사유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社会保障給与申請(変更)書

처리기간
 処理期間
 별도안내
 別途案内

신청인 申請人	성명 氏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외국인등록번호) (外国人登録番号)	세대주와의 관계 世帯主との 関係	전화번호 電話番号
	주소 住所	(실거주지 주소 ¹⁾ : (實際の居住地住所 :)		
				휴대전화 携帯番号
				전자우편 Eメール

가족사항 家族事項	세대주와의 관계 世帯主との 関係	성명 氏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외국인등록번호 등) (外国人登録番号等)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同居有無 (未同居事由)	학력·재학여부 (학교명/학년반) 學歷・在學有無 (學校名/學年)	건강상태 (장애/질병) 健康狀態 (障害/病氣)	취업상태 就業狀態		전화번호 (집/직장) 電話番号 (家/会社)
							직업 職業	직장명 職場名	

1. 배우자 관계 配偶者關係²⁾ ([] 법률혼 法律婚 [] 사실혼 事實婚 [] 사실상 이혼 事實上離婚)
 2. 외국여권 소지자명 外國旅券所持者名³⁾: _____, _____
 3. 국외출생자명 國外出生者名⁴⁾: _____, _____
 4. 복수국적자명 多重國籍者名⁵⁾: _____, _____

부양의무자 扶養義務者 ⁶⁾	수급자와의 관계 受給者との 關係	성명 氏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외국인등록번호 등) (外国人登録番号等)	주소 住所	가구원수 世帯人数	전화번호 電話番号
	of の					
	of の					
	of の					
	of の					

급여계좌 給与口座	신청인과의 관계 申請人との 關係	성명 氏名	금융기관명 金融機関名	계좌번호 口座番号	비고(사유) 備考(事由) ⁷⁾

통지방법
 通知方法

[] 서면 書面 [] 전자우편 Eメール [] 문자메시지서비스 SMS
 [] 기타 その他 ()

- 1)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주소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의 주소 기재(주거급여 신청자 중 임차가구에 한함)
住民登録上の住所と実際の居住地の住所が異なる場合は、実際の居住地住所を記入(住居給与申請人のうち賃借世帯に限る)
- 2),3) 해당자에 한함 該当者のみ
- 4),5) 아동수당, 양육수당 신청대상에 한함 児童手当、養育手当の申請対象に限る
- 6) 부양의무자 조사 사업 해당자에 한함(부양의무자 : ①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②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扶養義務者調査事業の該当者に限る(扶養義務者 : ①受給権者の1親等の直系血族、②受給権者の1親等の直系血族の配偶者、但、死亡した1親等の直系血族の配偶者は除く)
- 7) 동일보장가구의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 디딤씨앗통장(CDA) 또는 압류방지통장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
同一保障世帯員の口座ではない場合は事由を必ず記入し、ディディムシアッコ座(CDA) 又は差押防止通帳がある場合も必ず記入

(3 면)

안 내 사 항 案内事項

처리기간 処理期間	- 14 일(日) : 유아학비 幼児学費 - 30 일(日) : 기초생활보장(연장시 60일), 아이돌봄서비스지원(연장시 60일), 기초연금(연장시 60일), 장애인연금(연장시 60일), 청소년특별지원, 아동수당(연장시 60일), 한부모가족(연장시 60일) 基礎生活保障(延長時60日)、子どもケアサービス支援(延長時60日)、基礎年金(延長時60日)、障害者年金(延長時60日)、青少年特別支援、児童手当(延長時60日)、ひとり親家族(延長時60日) - 60 일(日)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연장시 90일) 小・中・高校生 教育費支援(延長時90日)	
관계법률 関連法律	보장구분 保障区分	해당 법률 該当法律
	기초생활보장 基礎生活保障	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초·중등교육법, 주거급여법 基礎生活保障法、医療給与法、小・中等教育法、住居給与法
	영유아 乳幼児	영유아보육법, 아이돌봄지원법 乳幼児保育法、子どもケア支援法
	아동 · 청소년 児童・青少年	초·중등교육법, 학교 밖 청소년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아동수당법 小中等教育法、学校外青少年法、青少年福祉支援法、児童手当法
	노인 老人	기초연금법 基礎年金法
	장애인 障害者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障害者年金法、障害者福祉法、障害児童福祉支援法
	한부모가족 ひとり親家族	한부모가족지원법 ひとり親家族支援法
	기타 その他	기초생활보장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 개발제한구역법 基礎生活保障法、国民健康保険法、医療給与法、開発制限区域法
신청시 구비서류 申請時の具備書式		추가 제출서류 追加提出書類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초·중·고 학생 교육비, 장애인,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 기타(타법의료급여 ¹²⁾ ,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차상위계층 확인) 基礎生活保障、基礎年金、小中高学生教育費、障害者、障害者年金、ひとり親家族、その他(他法医療給与、開発制限区域生活費用補助、次上位階層確認)	소득·재산신고서 所得・財産申告書 (별지 제1호의2서식) (別紙第1号の2書式)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金融情報等提供同意書 (별지 제1호의3서식) (別紙第1号の3書式)	1.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하며,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申請人(代理申請人)の身分を確認できる書類(該当者に限り、代理申請の場合は委任状及び代理申請人、申請人の身分を確認できる書類) 2.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除籍謄本(家族関係証明書で扶養義務者を確認できない場合に限る) 3. 소득·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임대차 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所得財産等の確認に必要な書類(賃貸借契約書、給与明細書等) 4. 건강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健康診断書(該当者に限る) 5.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通帳口座番号の写し 1部(該当者に限る) 6. 수업료 등 납입고지서(학비지원 신청자의 경우에 한함) 授業料等納入通知書(学費支援申請者に限る) - 1/4분기 : 수업료납입고지서 (신입생인 경우 입학금고지서) 1/4分期 : 授業料納入通知書(新入生の場合は入学金通知書) - 2/4분기 이후 : 해당학교 재학조회 또는 당해 분기 납입고지서(신규신청) 2/4分期以後 : 該当学校在学照会又は当年分期納入通知書(新規申請) - 학원 학습비 및 직원훈련비 등 납입고지서 学習塾学習費及び職員訓練費等の納入通知書 7. 특별청소년지원 신청의 경우,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 (보호자 부재·연락 두절, 학업 중단 등) 特別青少年支援申請の場合、選定対象であることを証明する書類又はその他の資料(保護者不在・音信不通、学業中断等) 8.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대상자 중 자립촉진수당 신청자 青少年ひとり親自立支援対象者のうち自立促進手当申請人 - 취업훈련확인서, 취업확인서, 검정고시학원등록증빙자료, 재학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서류 중 하나이상 제출
노인, 아동 · 청소년, 기타(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산형성) 老人、児童、青少年、その他(次上位本人負担金軽減、次上位資産形成)	소득·재산신고서 所得・財産申告書 (별지 제1호의2서식) (別紙第1号の2書式)	

	就業訓練確認書、就業確認書、検定試験学院登録証拠資料、在学証明書又はこれと同等の効力を持つ書類の中で一つ以上提出 9. 노숙인 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ホームレス確認書等(該当者に限る) 10.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의 경우 취업증빙 서류 子どもケアサービス申請の場合は就業証明書類 11. 농어촌양육수당 신청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확인서 農漁村養育手当申請の場合は農漁業経営体登録確認書又は農業人確認書 12. 차상위 자산형성 신청의 경우 별지 제13호서식 희망·네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次上位資産形成申請の場合は別紙第13号書式の希望・ネイルキウム通帳参加(変更)申請書 13.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임차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주거급여 임차수급자에 한함) 賃貸借契約書、使用貸借確認書等賃借世帯であることを証明できる書類(住居給与賃借受給者に限る) 14.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여권 사본1부(외국여권소지자), 국내여권 사본 1부(국내여권소지자) 단, 외국여권 및 국내여권이 모두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多重国籍者の場合、基本証明書詳細、家族関係証明書の写し各1部、外国旅券の写し1部(外国旅券所持者)、国内旅券の写し1部(国内旅券所持者) 但、外国旅券及び国内旅券がすべてない場合、旅行証明書の写し又は出入国事実証明書 15.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출생자의 경우, 국내여권 사본 1부 단, 국내여권이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 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多重国籍者でない国外出生者の場合、国内旅券の写し1部 但、国内旅券がない場合、旅行証明書の写し又は出入国事実証明書
제출하는 곳 提出先	관할 시·군·구청(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 단, 기초연금 지급 신청자는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가능 管轄の市・郡・区長(邑・面事務所または洞住民センター) 但、基礎年金支給申請者は国民年金公団に提出可能

12)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제9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医療給与法」第3条第1項第5号から第7号、第9号に該当して医療給与を受けようとする受給権者

(2 면)

보장구분 保障区分	사회보장급여 내용 社会保障給与の内容	
기초생활보장 基礎生活保障	☐ 생계급여 生計給与 ☐ 의료급여 医療給与 ☐ 주거급여 住居給与 (☐ 자가 持家 ☐ 임차 賃貸 ⁸⁾ ☐ 기타 その他 ⁹⁾ ☐ 교육급여 教育給与	
영유아 乳幼児	☐ 양육수당 養育手当 (대상자 이름 対象者氏名:) ☐ 가정양육수당 家庭養育手当 ☐ 장애아동양육수당 障害児童養育手当 ☐ 농어촌양육수당 農漁村養育手当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終日制子どもケアサービス (대상자 이름 対象者氏名:) ☐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時間制子どもケアサービス (대상자 이름 対象者氏名:)	
아동수당 児童手当	☐ 지급대상아동이름 支給対象児童氏名: ① ② ③	
아동 · 청소년 児童 · 青少年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小・中・高校生 教育費支援	①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放課後学校自由受講券 ② 급식(중식)비 給食(昼食)費 ③ 고교학비지원 高校学費支援 ④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유해차단서비스) 教育情報化支援(PC、インターネット通信費+有害遮断サービス) [PC 신청 여부 PC申請有無: ☐ 신청 申請 ☐ 미신청 未申請] [통신사 通信会社 ☐ KT ☐ SK브로드밴드 SKブロードバンド ☐ LG U+ ☐ SK 텔레콤 SKテレコム ☐ 기타 その他()] [인터넷 가입(예정)자 성명 インターネット加入(予定)者氏名: , 주민번호住民登録番号:] * (필수) 본인 관련 정보를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지정 기관(PC 설치업체, 인터넷 통신회사)에 제공 동의[☐] (必須)本人関連情報を政府、地方自治団体及び指定機関(PC設置業者、インターネット通信会社)に提供同意 [☐]
	☐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少年・少女家庭保護費 ☐ 청소년특별지원 青少年特別支援 (☐ 연장신청 延長申請)	
노인 老人	☐ 기초연금 基礎年金 (☐ 배우자 동시신청 配偶者同時申請)	

장 애 인 障 害 者	☐ 장애인연금 障害者年金 (☐ 배우자 동시신청 配偶者同時申請 ☐ 차상위 부가급여 次上位付加給与) ☐ 장애수당 障害者手当 ☐ 장애아가족양육지원 障害児家族養育支援 ☐ 장애아동수당 障害児童手当 ☐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障害者自立資金貸付
한부모 가족 ひとり親家族	☐ 한부모 가족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ひとり親家族支援(給与支給、証明書発給)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급여지급, 증명서 발급) 青少年ひとり親自立支援(給与支給、証明書発給)
기 타 その他	☐ 차상위계층 확인 次上位階層確認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次上位本人負担金軽減 ☐ 차상위 자활급여 次上位自活給与 ☐ 시설이용·입소 施設利用・入所 ☐ 차상위 자산형성 次上位資産形成 ☐ 타법 의료급여 他法医療給与 ¹⁰⁾ () ☐ 개발제한구역 거주민 생활비용보조 開発制限区域居住民の生活費用補助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 의뢰 및 연계 社会福祉共同募金会等のサービス依頼及び連携 ☐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자녀생활서비스 多文化家族訪問教育サービス - 子ども生活サービス

복지대상자 요금 감면 (대행)신청

福祉対象者料金減免(代行)申請

자격구분 資格区分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基礎生活保障受給者 (☐ 생계 生計 ☐ 의료 医療 ☐ 주거 住居 ☐ 교육 教育) ☐ 차상위계층 次上位階層 ☐ 장애인 障害者 ☐ 한부모가족 ひとり親 ☐ 기초연금 基礎年金			
감면 서비스 減免サービス	전체 신청 全体申請	☐ ※ 전체서비스 (대행)신청 시 체크 全体サービス(代行)申請時にチェック		
	선택 신청 選択申請	☐ 전기요금 電気料金	☐ TV수신료 면제 TV受信料免除	☐ 휴대전화요금 携帯電話料金
		☐ 지역난방요금 地域暖房料金	☐ 도시가스요금 都市ガス料金	

※ 아래항목 작성 시 신속·정확하게 요금감면대상 확인이 가능하며,
미 작성 및 부정확한 정보를 작성 시 감면서비스 (대행)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下記の項目に記入すれば迅速・正確に料金減免対象確認が可能になり、
未記入及び不正確な情報を記入した場合は減免サービス(代行)申請が制限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

- 전기 고객번호 電気顧客番号：

◦ 지역난방 열사용자번호 地域暖房熱使用者番号：
- 이동통신사 移動通信社 ☐KT ☐SK 텔레콤 SKテレコム ☐LG 유플러스 LGユープラス

◦ 도시가스 都市ガス (사용계약자명 使用契約者名： 사업자명 事業者名： 고객번호 顧客番号：)

가구원 추가 기재 (휴대전화 요금할인 신청시) 世帯員追加記載(携帯電話料金の割引申請時)					
가족 사항 家族 事項	신청인과의 관계 申請人との 関係	성 명 氏 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외국인등록번호 등) (外国人登録番号等)	휴대전화 번호 携帯電話	이동통신사 移動通信社
					☐ KT ☐ SK 텔레콤 SKテレコム
					☐ LG 유플러스 LGユープラス
					☐ KT ☐ SK 텔레콤 SKテレコム
					☐ LG 유플러스 LGユープラス
					☐ KT ☐ SK 텔레콤 SKテレコム
					☐ LG 유플러스 LGユープラス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個人情報収集及び活用同意	확인 確認(√)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収集・利用に関する事項 ☐ 개인정보 활용 목적 個人情報の活用目的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本申請書を受け付けた保障機関の長が「社会保障給与の利用・提供及び受給権者発掘に関する法律」第7条及び第19条に基づいて支援対象者の選定及び確認調査等のために個人情報を活用します。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活用する個人情報と同意要請範囲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에 관한 정보,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기초생활보장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영유아 및 한부모 가족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 노인 및 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	[]

협·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人的事項及び家族関係確認に関する情報、所得・財産・勤労能力・職業状態に関する情報、社会保障給与の受益履歴に関する情報、そのほか受給権者を選定するために必要な情報として住民登録電算情報・家族関係登録電算情報(基礎生活保障は本人、配偶者、直系尊・卑属及びその配偶者情報、乳幼児及びひとり親家族は本人、配偶者及び直系卑属情報、老人及び障害者は本人及び配偶者情報)、金融・国税・地方税、土地・建物・健康保険・国民年金・雇用保険・産業災害保障保険・出入国・兵務・報勲給与・矯正等の資料又は情報に対して定期的に関係機関に要請、または関連情報通信網(行政情報共同利用を含む)により照会及び適用することに同意します。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個人情報の保有及び破棄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同法第34条により5年間保有し(支援対象者保護に必要な社会保障情報は5年を超過して保有できる)、その期間が経過すれば破棄することを通知します。		
2.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第三者提供に関する事項 ☐ 제공받는 자: 한국방송공사, 한국전력공사, 이동통신사,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공사 提供を受ける者: 韓国放送公社、韓国電力公社、移動通信社、韓国ガス公社、都市ガス事業者、地域暖房公社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요금감면 (대행)신청 및 요금감면 대상 자격변동 여부 확인 提供を受ける者の利用目的: 料金減免(代行)申請及び料金減免対象資格変動有無の確認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고객번호 提供する個人情報の範囲: 氏名、住民登録番号(外国人登録番号)、住所、連絡先、資格情報、顧客番号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요금감면대상 자격상실 후 5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 提供を受ける者の個人情報保有・利用期間: 料金減免対象の資格喪失後5年が経過すれば破棄することを通知します。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시 요금감면 (대행)신청이 제한됩니다. 同意を拒否する権利及び同意を拒否する場合の不利益: 上記の個人情報の提供同意を拒否する権利があり、同意を拒否する場合、料金減免(代行)申請が制限されます。		[]
선택적 동의 選択同意		동의 同意 (√ 체크 チェック)
1. 장애인연금의 차상위 부가급여를 신청하여 차상위 자격이 확인되었으나, 위탁 심사결과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등록장애인일 경우, 장애인연금 신청일을 장애수당 신청일로 처리하는데 동의합니다. 障害者年金の次上位付加給与を申請し、次上位資格が確認されたが、委託審査結果、障害者年金法施行令第2条に該当しない登録障害者の場合、障害者年金申請日を障害者手当申請日として処理することに同意します。		[]
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서비스연계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을 대행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정보 등)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社会福祉共同募金会等のサービス連携を申請する場合、申請を代行して必要な場合は関連情報(氏名、住所、連絡先、資格情報等)を提供することに同意します。		[]
3. 교육급여를 신청한 경우,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教育給与を申請する場合、小・中・高校生の教育費支援を申請したものとして処理することに同意します。		[]
4.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한 경우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차상위계층 확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급여)을 신청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가 전부 중지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신청하는것에 동의합니다. 基礎生活保障給与を申請した場合、次上位階層支援事業(次上位階層確認、次上位本人負担金軽減、次上位自活給与)を申請したものとして処理することに同意します。 基礎生活保障給与が全部中止された場合、関連個人情報を活用して次上位階層支援事業を申請することに同意します。		[]
5.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수급 중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변동된 경우 관련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의 제2항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次上位階層支援事業受給中に所得や財産等が変動した場合、関連個人情報を活用して「国民基礎生活保障法」第21条の第2項に基づいて基礎生活保障給与を申請することに同意します。		[]
유의사항 留意事項		확인 check (√)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급여 지급 사유가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社会保障給与の利用・提供及び受給権者発掘に関する法律」及び関連法律に基づいて虚偽又はその他の不正な方法で受給したり、他人が受給できるようにした場合、給与支給事由が遡及して消滅した場合等には保障費用を支給した保障機関がその費用の全部または一部をその給与を受けた人又は給与を受けるようにした人から還収することができ、該当法律の定めに基づいて懲役、罰金、拘留、過料等の処分を受けることがあります。		[]

2.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社会保障給与の提供可否決定に必要な調査を拒否、妨害、又は忌避する場合、関係法律に基づいて申請が却下、もしくは決定が取り消され、給与が停止又は中止されたり、過料等が賦課される場合があります。	
3.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 세대원, 소득·재산상태, 근로능력, 수급이력, 복수국적발생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本申請に基づいて社会保障給与を提供されれば、居住地、世帯員、所得・財産状態、勤労能力、受給履歴、多重国籍発生等が変動した場合に変動事由を申告しない、もしくは、虚偽の申告をする場合は、該当給与は還収されることがあり、関係法律によって刑事処罰又は過料等の処分を受けることがあります。	
4.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社会保障給与申請のために作成・提出した書類は返却しません。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6 제2항 제3호에 따른 부양의무자 기준 미 적용 요건이 향후 변경되는 경우(부양의무자 또는 그 가구원의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권 소멸·상실 또는 지급 정지, 장애정도 하향조정 등)에는 같은 법에 따른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 조사를 위한 서류(「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国民基礎生活保障法」第8条の2第1項第3号、同法施行令第5条の6第2項第3号により扶養義務者基準未適用要件が今後変更される場合(扶養義務者又はその家族の基礎年金・障害者年金受給権消滅・喪失又は支給停止、障害レベル下降調整等)は、同法による給与が停止又は中止されることがあり、扶養義務者調査のための書類(「金融情報等提供同意書」等)の提出が必要な場合もあります。	
6. 요금감면 (대행)신청을 한 경우 관련한 결정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料金減免(代行)申請をした場合、関連する決定又はサービス提供については該当機関に直接問い合わせてください。 ※ TV 수신료 및 전기요금 : 한국전력공사, 휴대전화요금 : 이동통신사, 도시가스요금 : 도시가스사업자 지역난방비감면 : 지역난방공사 TV受信料及び電気料金 : 韓国電力公社、携帯電話料金 : 移動通信社、都市ガス料金 : 都市ガス事業者 地域暖房減免 : 地域暖房公社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와 선택적 동의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합니다.

本人(代理申請人を含む)は個人情報活用同意と選択同意及び留意事項について担当公務員から案内を受けたことを確認し、上記の通りに社会保障給与を申請します。

년(年) 월(月) 일(日)

신청인(대리 신청인)¹¹⁾ 성명 申請人(申請代理人)氏名 :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배우자 동시신청 시) 배우자 (配偶者同時申請時) 配偶者 :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長、郡守、区庁長、教育監 殿

- 민간·공공임차, 사용대차,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民間・公共賃借、使用貸借、共同生活家庭の居住者
- 가정위탁(입양대상), 보장시설, 타 법령 우선지원 주거시설, 공공운영 공동생활가정 등
家庭委託(養子対象)、保障施設、他法令の優先支援住居施設、公共運営の共同生活家庭等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에 해당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수급권자
「医療給与法」第3条第1項第2号から第10号に該当して医療給与を受けようとする受給権者
- 가족,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후견인) 등
家族、親族(8親等以内の血族、4親等以内の姻戚)、社会福祉担当公務員及びその他の関係者(後見人)等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金融情報等(金融・信用・保険情報)提供同意書

1.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支援対象者世帯 世帯主の人的事項

관 계 關 係	성 명 氏 名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外国人登録番号)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金融情報等の提供同意者(支援対象者又は扶養義務者)

※ 유의사항 :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포함)으로 대신합니다.

留意事項 : 印鑑で同意する場合は印鑑証明書の提出が必要です。同意者が未成年者の場合、親権者等の保護者の自筆ハングル正字氏名又は捺印(印鑑を含む)に代えます。

세대주와의 관 계 世帯主との 關係	동의자 성 명 同意者 氏 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 (외국인등록번호) (外国人登録番号等)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金融情報等の提 供を同意 ^{1),2)}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ハングル正字氏名又 は捺印・印鑑)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에 동의함 金融情報等の提供事実 を同意者に通知しない ことに同意 ³⁾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ハングル正字氏名又は捺印・ 印鑑)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교육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교육감·광역시교육감·특별자치시교육감·도교육감·특별자치도교육감(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 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支援対象者選定及び確認調査に必要な金融財産調査のために金融機関等が支援対象者又は扶養義務者の金融情報等を保健福祉部長官、国土交通部長官、教育部長官、女性家族部長官、特別自治市長、特別自治道知事、市長、郡守、区庁長、特別市教育監、広域市教育監、特別自治市教育監、道教育監、特別自治道教育監(関連法による委託業務遂行機関長を含む、以下「保健福祉部長官等」と称する)に提供することに同意します。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保健福祉部長官等が別紙第1号書式具備書類として提出した通帳口座番号の真偽確認を要請する場合、金融機関等が口座名義人の氏名、住民登録番号、口座番号を提供することに同意します。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金融機関が金融情報等を保健福祉部長官等に提供した事実を同意者に通知しないことに同意します。(もし同意しない場合は、金融機関等が金融情報等の提供事実を情報提供同意者個人に郵送で送付します。但、基礎年金の場合は別添書式「金融情報等の提供事実通知要求書」を追加で提出した場合に通知されます。)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金融情報等の提供範囲、対象金融機関等の名称 : 裏面参照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 전(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는 이력관리 신청서의 유효기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 까지

金融情報等の提供同意の有効期間 : 同意書提出後、申請サービス資格決定前(基礎年金及び障害者年金、障害者手当及び障害児童手当の受給希望履歴管理申請者は、履歴管理申請書の有効期限)まで、資格取得した場合は資格喪失前まで

5. 정보제공 목적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아이돌봄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확인조사 지원 및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情報提供の目的 : 「社会保障給与の利用・提供及び受給権者発掘に関する法律」, 「国民基礎生活保障法」, 「基礎年金法」, 「障害者年金法」, 「緊急福祉支援法」, 「青少年福祉支援法」, 「ひとり親家族支援法」, 「障害者福祉法」, 「開発制限区域の指定及び管理に関する特別措置法」, 「子どもケア支援法」, 「障害児童福祉支援法」, 「小・中等教育法」, 「医療給与法」, 「住居給与法」による福祉対象者選定・確認調査支援及び別紙第1号書式具備書類として提出された通帳口座番号の真偽確認

년(年) 월(月) 일(日)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金融機関長・信用情報集中機関長 殿

(뒤 쪽)

금융기관 등의 명칭 金融機関等の名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金融実名取引及び秘密保障に関する法律」 第2条第1号による金融会社等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銀行法」に基づく銀行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中小企業銀行法」に基づく中小企業銀行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韓国産業銀行法」に基づく韓国産業銀行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韓国輸出輸入銀行法」に基づく韓国輸出輸入銀行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韓国銀行法」に基づく韓国銀行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資本市場と金融投資業に関する法律」に基づく投資売買業者・投資仲介業者・集合投資業者・信託業者・証券金融会社・総合金融会社及び名義書き換え代行会社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相互貯蓄銀行法」に基づく相互貯蓄銀行及び相互貯蓄銀行中央会
8)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農業協同組合法」に基づく組合とその中央会及び農協銀行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水産業協同組合法」に基づく組合及びその中央会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信用協同組合法」に基づく信用協同組合及び信用協同組合中央会
1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セマウル金庫法」に基づく金庫及び中央会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保険業法」に基づく保険会社
1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郵便局預金・保険に関する法律」に基づく通信官署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金融実名取引及び秘密保障に関する法律施行令第2条に基づく機関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信用情報の利用及び保護に関する法律」 第25条に基づく信用情報集中機関 : 全国銀行連合会等

금융정보 등의 범위 金融情報等の範囲

1. 금융정보 金融情報

-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3개월 입금액 총액*

*기초생활보장제도만 해당

普通預金、貯蓄預金、自由貯蓄預金、外貨預金等の要求払預金 : 3か月以内の平均残額、3か月入金総額*

*基礎生活保障制度のみ該当

-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定期預金、定期積立、定期貯蓄等の貯蓄性預金 : 預金の残額又は総納入額

-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株式、収益証券、出資金、出資持分、不動産(年金)信託 : 最終相場額

-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債権、手形、小切手、債務証券、新株引受権証券、譲渡性預金証券 : 額面金額

-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年金貯蓄 : 定期的に支給された金額又は最終残額

-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1)から5)までに該当する金融財産に発生する利子、配当又は割引額

2. 신용정보 信用情報

-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貸出状況及び延滞内容

-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クレジットカード未決済金額

3. 보험정보 保険情報

- 1)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현금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保険証券 : 解約する場合に支給される還付金又は最近1年以内に支給された保険金

- 2) 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현금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年金保険 : 解約する場合に支給される還付金又は定期的に支給される金額

유의사항 留意事項

-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기초연금법」 제11조제4항,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 제14조, 「아이를돌봄지원법」 제24조제3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4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支給対象者又は扶養義務者がこの同意書提出を2回以上拒否・忌避する場合、「国民基礎生活保障法」第22条第8項、「基礎年金法」第11条第4項、「障害者年金法」第9条第8項、「医療給与法」第3条の3第3項、「住居給与法」第14条、「子どもケア支援法」第24条第3項、「ひとり親家族支援法」第12条の4に基づく社会保障給与の申請が却下されることがあります。

- 이 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연금법」 제10조, 「장애인연금법」 제8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2항, 「주거급여법」 제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 「기초연금법」 제11조제2항, 「장애인연금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本同意書は「社会保障給与の利用・提供及び受給権者発掘に関する法律」第5条、「国民基礎生活保障法」第21条、「基礎年金法」第10条、「障害者年金法」第8条及び「ひとり親家族支援法」第11条、「障害者福祉法」第50条の2、「小・中等教育法」第60条の5、「医療給与法」第3条の3第2項、「住居給与法」第9条に基づいて社会保障給与を申請する際に1回だけ提出してください。

今後「社会保障給与の利用・提供及び受給権者発掘に関する法律」第19条及び「国民基礎生活保障法」第23条及び「基礎年金法」第11条第2項、「障害者年金法」第11条、「医療給与法」第3条の3第3項、「住居給与法」第11条に基づく確認調査の場合は同意書を追加で提出しなくても、保健福祉部長官等が金融情報等の提供を要請することができます。

-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기초연금법」 제12조제6항,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제6항,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15조제6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6, 「주거급여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 또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同意者(支援対象者又は扶養義務者)の金融情報等は「国民基礎生活保障法」第22条第6項及び第23条の2第6項、「基礎年金法」第12条第6項、「緊急福祉支援法」第13条第7項及び「障害者年金法」第9条第6項及び第12条第6項、「ひとり親家族支援法」第12条の3、「障害者福祉法」第50条の3第6項、「障害児童福祉支援法」第15条第6項、「医療給与法」第3条の3第3項、「小・中等教育法」第60条の6、「住居給与法」第15条第6項に基づき対象者選定及び給与支給口座の有効性確認のための金融財産等の調査目的のほかに別の用途で使用、もしくは他人又は機関に提供されず、これを違反した場合は「社会保障給与の利用・提供及び受給権者発掘に関する法律」第54条又は該当法律の罰則規定を適用して処罰を受けることがあります。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18. 12. 13.>
 5·18民主有功者礼遇に関する法律 施行規則 [別紙第5号の2書式] <改正 2018. 12. 13>

소득·재산 신고서 所得・財産申告書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하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には該当する箇所に√をつけ、灰色欄には記入しないでください。

성명氏名 ¹⁾						
소득 사항 所得 事項	보훈급여금 등 (간호·조정수당 제외) 報勲給与金等 (看護・調整手当は除く)	담당 공무원 기재 担当公務員記入				
	재산 소득 財産 所得	임대소득 賃貸所得	원ウォン	원ウォン	원ウォン	원ウォン
		이자소득 利子所得	자산 조회결과 적용 財産照会結果適用			
		연금소득 年金所得	금융재산 조회결과 적용 金融財産照会結果適用			
	근로 소득 勤勞 所得	상시근로 常時勤勞	원ウォン	원ウォン	원ウォン	원ウォン
		일용근로 日雇い勤勞	원ウォン	원ウォン	원ウォン	원ウォン
	사업 소득 事業 所得	농업소득 農業所得 (주재배작물명) (主栽培作物名)	(원ウォン)	(원ウォン)	(원ウォン)	(원ウォン)
		임업소득 林業所得	원ウォン	원ウォン	원ウォン	원ウォン
		어업소득 漁業所得	원ウォン	원ウォン	원ウォン	원ウォン
		기타(자영업) その他(自営業)	원ウォン	원ウォン	원ウォン	원ウォン
	기타 소득 その他 の所得	사적이전소득 私的移転所得 (무료임대) (無料賃貸)	원ウォン	원ウォン	원ウォン	원ウォン
		공적이전소득 公的移転所得 ²⁾	자산 조회결과 적용 財産照会結果適用			
기타 その他 (지방자치단체지원금 등) (地方自治団体支援金等)		원ウォン	원ウォン	원ウォン	원ウォン	

재산 사항 財産 事項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建築物 (住宅、建物、施設物)	자산 조회결과 적용 財産照会結果適用	토지 土地	자산 조회결과 적용 財産照会結果適用
	선 박 船舶	자산 조회결과 적용 財産照会結果適用	임목재산 林木財産	자산 조회결과 적용 財産照会結果適用
	항공기 航空機	자산 조회결과 적용 財産照会結果適用	어업권 漁業權	자산 조회결과 적용 財産照会結果適用
	자동차 自動車	차량명 車両名(), 용도 用途 [] 생업용 生業用 [] 보철용 補綴用 [] 자가용 自家用		
	임차보증금 賃貸保証金	전·월세보증금 家賃保証金 (백만원百万ウォン), 상가보증금 商店保証金(백만원百万ウォン), 기타 その他 (백만원百万ウォン)		
	금융재산 金融財産	금융재산 조회결과 적용 金融財産照会結果適用		
	동 산 動 産	소 牛 (마리頭, 원ウォン), 돼지 豚 (마리頭, 원ウォン)	분양권 分譲權	원ウォン
기타가축 その他の家畜(마리頭, 원ウォン), 종묘 種苗 (원ウォン)		조합원입주권 組合員入居權	원ウォン	
기계·기구류 機械・機器類 (원ウォン), 기타 その他(원ウォン)		회원권 會員權	자산 조회결과 적용 財産照会結果適用	

- 自動車管理法施行規則 [別紙第63号書式] <改正 2017. 10. 26.>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 二輪自動車使用届

접수 번호 受付番号		접수 일시 受付日時	발급 일시 発給日時	처리 기간 処理期間	즉시 即時
소유자 所有者	성명(명칭) 氏名(名称)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法人登録番号)		
	주소 住所			(휴대)전화번호 (携帯)電話番号	
이륜자동차 二輪自動車	차명 (예시 : 데이스타 250) 車名(例：デイスター250)		총배기량 또는 최고정격출력 総排気量又は最高定格出力		
	사용 본거지 (주민등록지, 법인 등의 주 사무소 또는 지점) 使用本拠地(住民登録地、法人又は主事務所又は支店)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自動車管理法」第48条第1項及び同法施行規則第99条第1項により上記の通りに申告します。

년 월 일
 年 月 日

신청인 성명
申請人 氏名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생년월일
生年月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출장소장 귀하
市長・郡守・区長又は邑・面・洞・出張所長 殿

첨부 서류 添付書類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로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1부 1. 所有権を証明する書類(第2号から第4号までの書類で所有権を証明できる場合は提出しなくても構いません) 1部 2. 이륜자동차제작증(신규로 제작·조립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2. 二輪自動車制作証(新規で制作・組み立てた二輪自動車の場合にのみ添付します) 1部 3. 「관세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필증 또는 이를 대신할 세관의 증명서(수입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関税法施行令」第116条第2項による輸入申告済証又はこれに代わる税関の証明書(輸入した二輪自動車の場合にのみ添付します) 4.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증명서(사용폐지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二輪自動車使用廃止証明書(使用廃止した二輪自動車を再度申告する場合にのみ添付します) 5. 실측확인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5. 実測確認書(該当する場合にのみ添付します)	수수료 手数料
		없음 なし

유의 사항 留意事項

1. 이륜자동차는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운행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1. 二輪自動車は使用の届出をして二輪自動車番号の指定を受けなければ運行できません。(「自動車管理法」第48条第1項)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18호)
 - 上記の事項を違反した場合は、関連規定により過料が課せられます(「自動車管理法」第84条第2項第18号)
2. (휴대)전화번호는 귀하의 이륜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신고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2. (携帯)電話番号は貴下の二輪自動車管理に必要な事項を案内し助ける目的で利用されるためご記入ください。変更がある場合は管轄申告官庁にお知らせください。但、本人が希望しない場合は記入しなくても構いません。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17. 10. 26.>
■ 自動車管理法施行規則 [別紙第68号書式] <改正 2017. 10. 26.>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二輪自動車使用廃止届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には該当項目に√印をつけます。

접수 번호 受付番号	접수 일시 受付日時	발급 일시 発給日時	처리기간 処理期間	즉시 即時
소유자 所有者	성명(명칭) 氏名(名称)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法人登録番号)		
	주소 住所	(휴대)전화번호 (携帯)電話番号		
신고내용 届出内容	이륜자동차번호 二輪自動車番号			
	신고사유 届出事由			
[] 옹도폐지 [] 분실·멸실 [] 도난 [] 기타 用途廃止 紛失・滅失 盗難 その他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自動車管理法」第48条第2項及び同法施行規則第103条第1項により上記の通りに申告します。

신청인 성명
申請人 氏名
생년월일
生年月日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출장소장 귀하
市長・郡守・区長又は邑・面・洞・出張所長 殿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行政情報共同利用同意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출장소장이 아래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本人はこの件の業務処理に関連し、電算情報処理組織及び「電子政府法」第36条第1項による行政情報の共同利用を通して市長・郡守・区長又は邑・面・洞・出張所長が以下の確認事項を確認することに同意します。
※ 신청인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출장소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申請人が市長・郡守・区長又は邑・面・洞・出張所長の確認に同意せず、電算情報処理組織及び「電子政府法」第36条第1項による行政情報の共同利用を通して確認できない場合は、該当書類(法人登記簿謄本は除く)を申請人が直接提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신청인(대표자)
申請人(代表者)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担当公務員 確認事項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二輪自動車使用届済証	수수료 없음 手数料 なし
첨부서류 添付書類	1. 이륜자동차번호판(멸실,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 二輪自動車ナンバープレート(滅失、紛失又は盗難された場合は除く) 2.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2. 警察官署で発給する紛失又は盗難届確認書(紛失又は盗難の場合にのみ添付します) 1部 3.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멸실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使用廃止事由を証明する書類(滅失やその他の事由による使用廃止の場合にのみ添付します) 1部	

유의사항
留意事項

1.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1. 二輪自動車の所有者は二輪自動車の使用を廃止しようとする場合、その事由が発生した日から15日以内に届出なければなりません。
(「自動車管理法」第48条第2項)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2호)
 - 上記の事項を違反した場合は関連規定により過料が課せられます (「自動車管理法」第84条第3項第2号)
2. (휴대)전화번호는 귀하의 이륜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신고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2. (携帯)電話番号は貴下の二輪自動車管理に必要な事項を案内し助ける目的で利用されるためご記入ください。変更がある場合は管轄申告官庁にお知らせください。但、本人が希望しない場合は記入しなくても構いません。

이륜자동차 신고사항변경신고서
二輪自動車 届出事項変更届

접수 번호 受付番号		접수 일시 受付日時		발급 일시 発給日時		처리 기간 즉시 処理期間 即時	
소유자 所有者	성명(명칭) 氏名(名称)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法人登録番号)			
	주소 住所				(휴대)전화번호 (携帯)電話番号		
이륜자동차번호 二輪自動車番号					총배기량 또는 최고정격출력 総排気量又は最高定格出力		
변경내용 変更内容	변경전 変更前						
	변경후 変更後						

「自動車管理法」第48条第2項及び同法施行規則第101条第1項により上記の通りに申告します。

년 월 일
 年 月 日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申請人 氏名 (署名又は印)
 생년월일
 生年月日

시장 · 군수 ·구청장 또는 읍 · 면 · 동 · 출장소장 귀하
市長 · 郡守 · 區長又は邑 · 面 · 洞 · 出張所長 殿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行政情報共同利用同意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선상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출장소장이 아래의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本人はこの件の業務処理に関連し、電算情報処理組織及び「電子政府法」第36条第1項による行政情報の共同利用を通して市長・郡守・区長又は邑・面・洞・出張所長が以下の確認事項を確認することに同意します。

※ 신청인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출장소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申請人が市長・郡守・区長又は邑・面・洞・出張所長の確認に同意しなかったり、電算情報処理組織及び「電子政府法」第36条第1項による行政情報の共同利用を通して確認できない場合は、該当書類(法人登記簿謄本は除く)を申請人が直接提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申請人(代表者) (署名又は印)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担当公務員 確認事項	※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二輪自動車使用届済証	수수료 없음 手数料 なし
첨부서류 添付書類	1. 변경신고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変更届事項を証明する書類 1部 2. 이륜자동차번호판(이륜자동차번호판에 표시된 관할 관청이 다르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2. 二輪自動車ナンバープレート(二輪自動車ナンバープレートに表示された管轄官庁が異なる場合にのみ該当します)。	

유의사항
留意事項

1.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다음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신고기간 안에 변경신고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2항)
1. 二輪自動車の所有者は次の項目に変更がある場合、その届出期間内に変更届を出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自動車管理法」第48条第2項)
 - 가. 사용본거지 또는 소유자성명(명칭) 변경 시 : 30일 이내
 - ア. 使用本拠地又は所有者氏名(名称)変更時 : 30日以内
 - 나. 매매 : 15일 이내, 증여 : 20일 이내,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타의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イ. 売買 : 15日以内、贈与 : 20日以内、相続 : 相続開始日が属する月の末日から6か月以内、その他の場合 : その事由が発生した日から15日以内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2호)
 - 上記の事項を違反した場合は関連規定により過料が課せられます (「自動車管理法」第84条第3項第2号)
2. (휴대)전화번호는 귀하의 이륜자동차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는 목적으로 이용되니 적어 주시고,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할신고 관청에 알려 주십시오. 다만,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2. (携帯)電話番号は貴下の二輪自動車管理に必要な事項を案内し助ける目的で利用されるためご記入ください。変更がある場合は管轄申告官庁にお知らせください。但、本人が希望しない場合は記入しなくても構いません。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양수인 직접 거래용)
自動車譲渡証明書(譲渡人・譲受人直接取引用)

접수번호 受付番号		접수일자 受付日時
갑 (양도인) 甲 (譲渡人)	성명(명칭) 氏名(名称)	주민(법인)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法人登録番号)
	전화번호 電話番号	
	주소 住所	
을 (양수인) 乙 (譲受人)	성명(명칭) 氏名(名称)	주민(법인)등록번호 住民登録番号(法人登録番号)
	전화번호 電話番号	
	주소 住所	
거래 내용 取引内容	자동차등록번호 自動車登録番号	차종 및 차명 車種及び車名
	차대번호 車体番号	매매일 売買日
	매매금액 売買金額	잔금지급일 残金支払日
	자동차인도일 自動車引渡日	주행거리 走行距離 km

제1조(당사자표시) 양도인을 “갑”이라 하고, 양수인을 “을”이라 한다.

第1条(当事者表示) 譲渡人を「甲」とし、譲受人を「乙」とする。

제2조(동시 이행 등) “갑”은 잔금 수령과 상환으로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인도한다.

第2条(同時履行等) 「甲」は残金受領と償還により自動車と所有権移転登録に必要な書類を「乙」に引き渡す。

제3조(공과금 부담) 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준일 다음 날부터의 분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제세공과금의 납부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第3条(公課金負担) この自動車に対する税制公課金は自動車引渡日を基準とし、その基準日までの分は「甲」が負担し、基準日翌日からの分は「乙」が負担する。但、関係法令に税制公課金の納付に関する特別な規定がある場合はそれに従う。

제4조(사고 책임) “을”은 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기를 위하여 운행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第4条(事故責任) 「乙」はこの自動車を引き受けた時から発生するすべての事故に対して自己のために運行する者としての責任を負う。

제5조(법률상의 하자 책임) 자동차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행정처분 또는 이전등록 요건의 불비, 그 밖에 행정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갑”이 그 책임을 진다.

第5条(法律上の瑕疵責任) 自動車引渡日以前に発生した行政処分又は移転登録要件の不備、その他に行政上の瑕疵については「甲」がその責任を負う。

제6조(등록 지체 책임) “을”이 매매목적물을 인수한 후 정해진 기간에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을”이 진다.

第6条(登録遅滞責任) 「乙」が売買目的物を引き受けた後に定められた期間に移転登録をしない場合は、これに対するすべての責任を「乙」が負う。

제7조(할부승계 특약) “갑”이 자동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할부금을 다 내지 않은 상태에서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할부금을 “을”이 승계하여 부담할 것인지의 여부를 특약사항란에 적어야 한다.

第7条(割賦承継特約) 「甲」が自動車を割賦で購入し、割賦金をすべて払っていない状態で「乙」に譲渡する場合は残りの割賦金を「乙」が承継して負担するかどうかについて特約事項欄に書かなければならない。

제8조(양도 증명서) 이 양도 증명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지니고 “을”은 이 증명서를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할 때(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第8条(讓渡証明書)この讓渡証明書は2通作成し、「甲」と「乙」がそれぞれ1通ずつ持ち、「乙」はこの証明書を所有権の移転登録申請をする時(残金支払日から15日以内)に登録官庁に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

특약사항:
特約事項:

수입인지 收入印紙
「인지세법」에 따름 (뒷면 여백에 붙임) 「印紙税法」による (裏面余白に貼付)

본인은 자동차매매사업자의 중개를 통하지 않고 양수인과 직접 거래로 소유자동차를 양도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하여 발급합니다.

本人は自動車売買事業者の仲介を通さず、譲受人と直接取引で所有自動車を譲渡し、その事実を証明するために「自動車登録規則」第33条第2項第1号によりこの讓渡証明書を作成して発給します。

년 월 일
年 月 日

양도인
讓渡人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양수인
譲受人

(서명 또는 인)
(署名又は印)

유의사항 留意事項

- 양도인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지 않으면 양수인의 무단전매 등으로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반드시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 讓渡人注意事項: この讓渡証明書を作成する際、譲受人の人的事項を記入しなければ譲受人の無断転売等により予測できない損害を被ることがあるため、必ず譲受人の人的事項を記入してください。
- 양수인 주의사항: 이 양도증명서를 작성할 때 이 차량에 대하여 부과된 자동차세 및 제세공과금 납부와 압류·저당권 등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譲受人の注意事項: この讓渡証明書を作成する際、この車両に対して課される自動車税及び税制公課金納付と差押・抵当権等の登録有無を確認し、意としていない損害を被らないようにしてください。
- 공통사항: 이 당사자거래용 양도증명서를 직접거래 당사자가 아닌 자(자동차매매업자 포함)가 사용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共通事項: この当事者取引用讓渡証明書を直接取引当事者ではない者(自動車売買業者を含む)が使用する場合は、自動車管理法令により処罰されます。
- 정당한 사유 없이 주행거리를 변경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71조제2항 및 제79조제5호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 正当な事由なく走行距離を変更した者は「自動車管理法」第71条第2項及び第79条第5号により懲役又は罰金に処せられます。
- 자동차정비, 검사, 주행거리 이력, 자동차세 납부여부 압류내역 등 자동차토털이력정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어플("마이카정보") 또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므로 확인 바랍니다.
- 自動車整備、検査、走行距離履歴、自動車税納付有無と差押内訳等、自動車トータル履歴情報は国土交通部で提供するスマートフォン用アプリ(「マイカー情報」)又は自動車民願大国民ポータル(www.ecar.go.kr)で照会可能ですので確認してください。
- 양도인이 서명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양도인이 날인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讓渡人が署名した場合は本人署名事実確認書又は電子本人署名確認書発給証を、讓渡人が捺印した場合は印鑑証明書を添付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제 호

※第 号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

二輪自動車使用届済証再交付申請書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欄には申請人は記入しないで下さい。

소유자 所有者	성명(명칭) 氏名(名称)	주민(사업자)등록번호 住民(事業者)登録番号
	주소 住所	(전화번호 :) (電話番号 :)

이륜자동차번호 二輪自動車番号	
--------------------	--

신 청 사 유	☐ 훼손	☐ 분실	☐ 기타()
申 請 事 由	☐ 毀損	☐ 紛失	☐ その他()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自動車管理法施行規則」第102条第1項の規定に基づいて上記の通りに申請します。

년 월 일
 年 月 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申請人 (署名又は印)

※구비서류 사용신고필증(식별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具備書類 使用届済証(識別が難しい場合に限ります)1部

※신청안내

※申請案内

신청하는 곳 申請する場所	읍·면·동 邑·面·洞	처 리 기 간 処 理 期 間	즉 시 即 時
수 수 료 手 数 料	없음 なし		